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권선국 · 정창모 · 박양신 · 김한나

발간사

2003년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조직인 ‘산학협력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이 산학협력 계약의 주체가 됨으로써 산학협력이 촉진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현재 특허·기술이전 등 대학의 연구성과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산촉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 회계는 대학에서 산학협력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되어 201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은 이전 규칙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자 간접비, 지원금 사업비 계정 과목을 신설하고,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의 개념을 변경하는 등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유도와 대학별 산학협력 및 연구활동에 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 재정업무담당자들이 개정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의 습득을 위해 이번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해설서가 대학 재정업무담당자 분들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산학협력 및 연구’에 관한 재무지표의 정확한 생성·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산학협력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산학협력단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 정부와 대학 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산학협력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본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집필하여 주신 경북대학교 권선국 교수님을 비롯한 참여 연구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산학협력 증진을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장 정 희 권

머리말

2003년에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초기 산학협력단의 중심 업무가 연구비 및 사업비 관리였다면 지금은 기술이전, 학교기업 관리, 창업보육센터 관리,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회계 정보는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결과 및 대학 재정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정보로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한 산학협력단의 성과를 보고하기에는 2004년에 제정되고, 2009년에 부분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어 금년에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 해설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 2012년 4월에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 2012년 4월에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간접비수익 및 간접비사업비를 별도 항목으로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간접비 보고를 위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였다.

셋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다르게 해석되어 적용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적용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위한 구체적인 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넷째, 산학협력단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산학협력단 재무성과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해설서는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첫째, 2012년 4월에 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적용시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적용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재무상태표 관련해서는 연구비관련 채권 및 채무에 관한 비교 가능한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비교 가능한 자산 회계처리를 설명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다.

넷째, 운영계산서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는 산학협력수익 정보 제공을 위한 회계처리를 설명하였고,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적용시 혼란이 있는 발생주의 수익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다. 또한 간접비수익 및 간접비사업비 보고를 위한 회계처리를 설명하였으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를 설명하였다.

다섯째, 현금흐름표 관련해서는 직접법에 따른 구체적인 현금흐름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산학협력단의 종합 결산 사례를 제시하였고, 예산 관련해서는 산학협력단의 예산의 특성을 고려한 변동예산시스템의 적용을 설명하였다.

일곱째, 산학협력단 재무제표 정보를 활용한 산학협력 재무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해설서의 작성을 추진하고 적극 지원해준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의 정희권 과장과 오정민 서기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팀의 박태식 연구원께 감사드린다.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산학협력단의 현 상황에 걸 맞는 회계처리규칙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오정민 서기관의 노력이 없었다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대폭적인 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최종 편집작업을 도와 준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장지영 초빙 교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거의 지난 1년간에 걸쳐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본 해설서를 작성하기 위해 저자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책에 관하여 개선할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경북대학교 권선국 교수(skwon@knu.ac.kr)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2012년 8월

권선국·정창모·박양신·김한나

목 차

제1장 산학협력단 회계의 이해	3
1. 산학협력단의 현황	3
2. 산학협력단 회계의 의의	7
제2장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17
1. 회계의 기초이론	17
2. 재무제표	19
제3장 재무상태표	23
1. 재무상태표의 개요 및 작성기준	23
2. 유동자산	29
3. 비유동자산	37
4. 유동부채	47
5. 비유동부채	50
6. 기본금	61
7. 자산·부채의 평가	62
제4장 운영계산서	71
1. 운영계산서의 개요 및 작성기준	71
2. 운영수익	80
3. 운영비용	107
제5장 현금흐름표	133
1. 현금흐름표의 개요 및 작성기준	133
2. 현금흐름표의 작성	136

제6장 산학협력단 결산 실무 169

1.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169
2.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70
3. 부속명세서 174
4. 감사 175
5. 결산 사례 175

제7장 산학협력단 예산 실무 199

1. 예산의 편성 199
2. 예산의 집행 213

제8장 산학협력 재무성과지표 217

1. 운영건전성 217
2. 연구·산학협력 수익성 219
3. 연구·산학협력 성과성 220
4. 공용장비 활용성 222
5. 교육운영 기여도 223

참고문헌 227

부 록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31
2.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290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355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제1장

산학협력단 회계의 이해

1. 산학협력단의 현황
2. 산학협력단 회계의 의의

제1장 산학협력단 회계의 이해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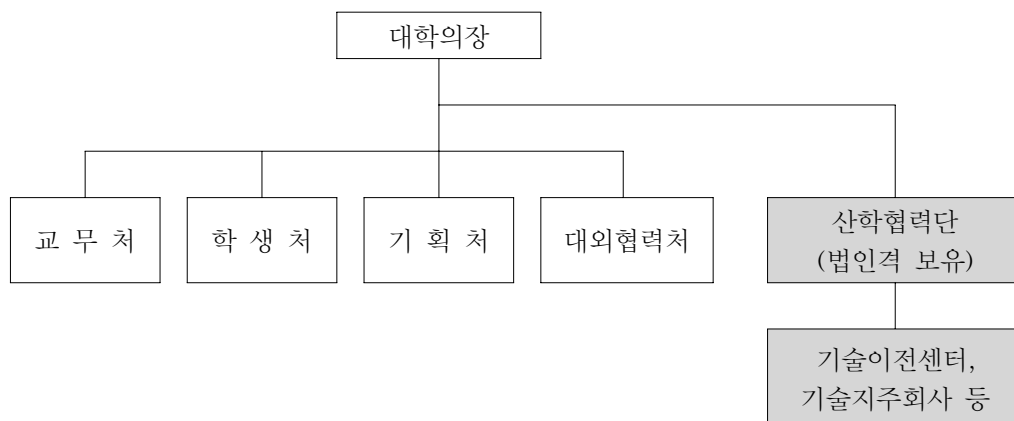
산학협력단의 현황

1. 산학협력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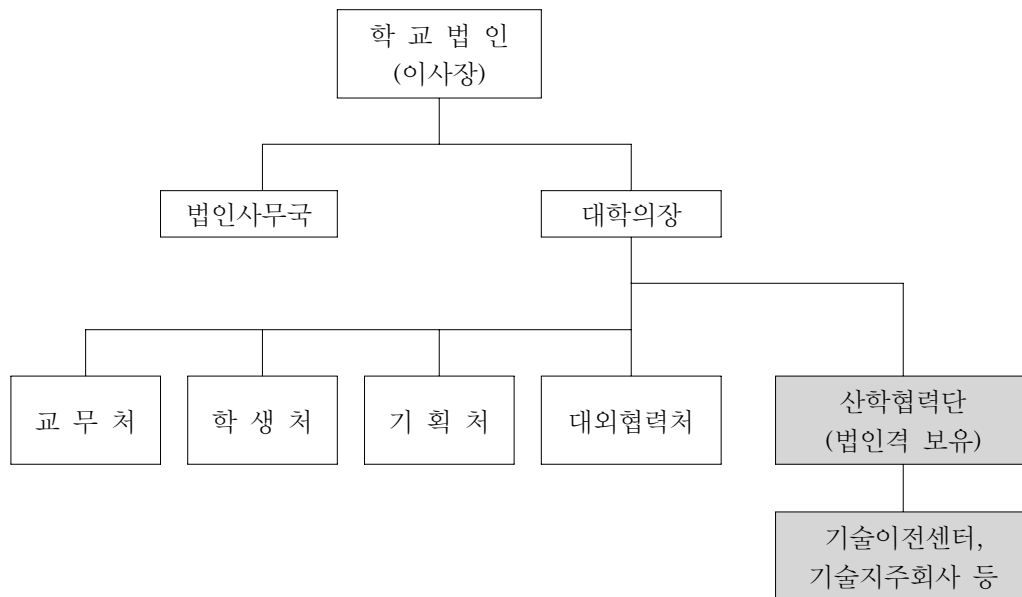
(1) 산학협력단의 성격

산학협력단이란 대학의 산학협력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2003년에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산학협력단을 통해 대학의 증가하는 산학협력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학협력단은 조직상으로는 대학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며, 법적인 성격으로는 학교법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이다.



[그림 1-1]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설립형태



[그림 1-2]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설립형태

(2) 산학협력단의 필요성

- ①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제 필요 : 대학과 정부, 산업체간의 증가하는 산학협력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체계가 미흡하여,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비효율을 막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였다.
- ② 산학협력 계약 및 성과 관리의 주체가 필요 : 대학은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 하에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명의로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성과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계약 주체가 될 수 있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을 위한 재원을 통합 관리할 조직이 필요 : 대학에서 산학협력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별도의 회계가 필요하였다. 국·공립대학의 회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에 속해 대학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므로, 외부 연구비를 기성회계

로 편입하거나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과 그 회계를 이용하면 대학의 독자적 회계운영이 가능해진다. 사립대학은 외부연구비나 정부 지원사업비를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계정과목 등이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산학협력단과 그 회계를 이용하면 산학협력재원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산학협력재정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④ 산학협력전담조직의 설치로 산학협력 참여 주체간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 : 일원화 된 산학협력 창구의 부재로 산학협력 참여 주체간 신뢰구축이 어려웠고, 산학협력 기여자에 대한 성과 보상이 부족하였다. 산학협력단 전담 지원조직의 설치로 주체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확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산학협력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다.

(3) 산학협력단의 업무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조직상으로는 총장의 통제하에 있는 대학산하의 하나의 조직으로 관리되나 법률상으로는 대학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산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산촉법 제27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산축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2.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제2절

산학협력단 회계의 의의

1. 산학협력단 회계관리규정

산촉법은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연도, 수입, 지출 및 회계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국고회계 사업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교비회계 사업연도와 같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이다.

법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산학협력단의 수입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해,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시행령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20조 각 호의 업무

산학협력단의 수입, 지출, 재산 등의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산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산축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로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또한 산축법 시행령에 나열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24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고,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8조(산학협력단의 결산)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사립대학과 입학정원이 2,000명 이상인 사립전문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회계연도 입학정원이 1천명 미만인 사립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미만인 사립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회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의 산학협력단도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제5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

학교기업이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회계처리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 아닌 학교기업회계처리기준(2004년 11월 17일 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학교기업회계로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산촉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규칙은 총칙, 예산, 회계, 결산 및 보고, 보칙의 5개 장 총 40조로 규정되어 있다. 총칙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예산은 산학협력단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회계는 회계원칙, 재무제표,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결산 및 보고는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감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보칙은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산학협력단에서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이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이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이 규칙에서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계정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중요한 회계방침과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012년 4월 2일자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개정하게 된 취지 및 배경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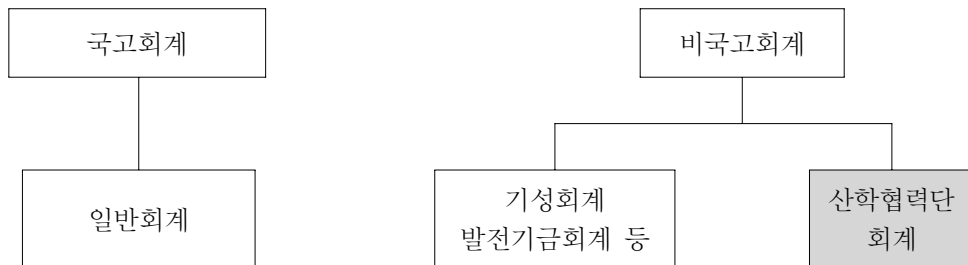
첫째, 개정 전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불완전성에 따른 회계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산업체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접비 수입 계정과목 부재로 연구간접비 총액이 재무제표에서 보고되지 않았고, 대가성여부에 따라 산학협력연구수입, 산업체지원금, 기부금수입으로 구분 처리되고 있어서 연구비 총액을 쉽게 알기가 어려웠다.

둘째, 연구간접비 제도 개선에 따른 간접비 원가 계산을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 전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회계정보와 간접비 원가계산을 위한 회계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간접비의 대학별 비율 계산에 따른 정부의 연구간접비지원정책 추진에 따라 간접비 원가 계산을 위한 보다 투명한 회계정보의 산출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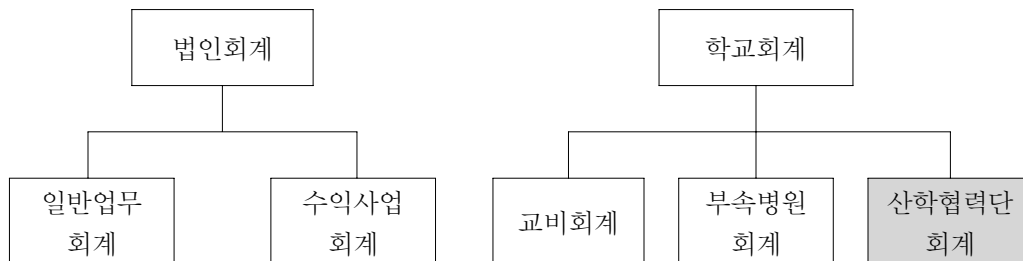
셋째, 대학의 연구비, 연구간접비, 지식재산권 수입 파악 등 산학협력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산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법령제정과 산학협력단 제도의 도입, 다양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의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산학협력 관련 기초 통계가 일관성 있게 산출되지 않고 있어 산학협력 관련 정책 수립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대학의 연구비, 연구간접비, 지식재산권 수입 등의 종합적인 통계 부재로 산학협력단의 운영실적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개선을 통해 대학의 연구비, 연구간접비, 지식재산권 수입 등의 종합적인 통계를 산출하여 산학협력단의 운영실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3. 대학회계와의 관계

산학협력단회계와 다른 대학회계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가 있는데, 산학협력단회계는 비국고회계 중의 한 회계이나 대학으로부터는 독립된 회계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회계는 내용상으로는 학교회계의 한 부분이나, 법률적으로는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회계이다.



[그림 1-3] 국립대학의 회계구조



[그림 1-4] 사립대학의 회계구조

사립대학의 경우 산촉법 제31조 및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산촉법 제31조(수입)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나 산학협력단의 설립시 1회에 한하여 기존의 연구비수입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는 교비회계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산학협력 계약과 관련된 재원을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에도 산학협력 계약과 관련된 재원이 교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이를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1회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산축법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4항에서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자금지원은 불가능하나 인력의 지원은 가능하다.

제2장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1. 회계의 기초이론
2. 재무제표

제2장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제1절

회계의 기초 이론

1.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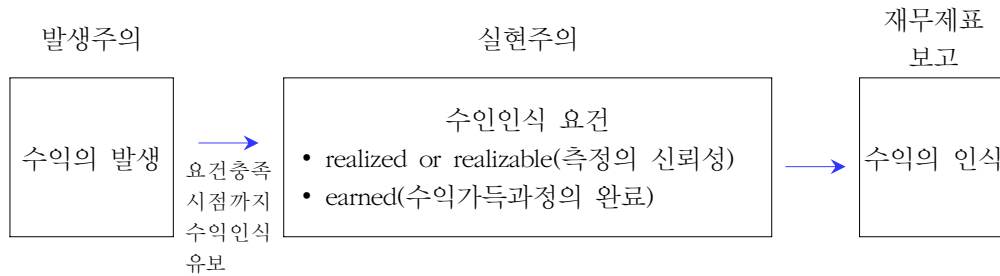
산학협력단 회계는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복식부기란 회계기록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양면성을 파악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상관관계를 통해 회계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복식부기에서는 단순히 현금의 수입, 지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기계기구를 구입한다”라는 거래를 단식부기 입장에서 보면 현금지출이 없으므로 기록대상이 되지 않고 외상대금을 지급할 때만 현금지출로 기록되나 복식부기에서는 현금지출이 없더라도 기계기구라는 자산의 증가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있으므로 기록(분개)의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와 대별되는 단식부기는 거래를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단식부기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총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으로 현금잔액만을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남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단식부기에서의 수입, 지출은 현금주의에 의해 기록되나 복식부기에서 수익과 비용은 현금흐름과는 차이가 있는 발생주의에 의해 기록된다.

2.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현금수취 및 현금지출거래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으로 현금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은 획득시점에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하에서는 현금은 아직 못 받았으나 기간의 경과로 수익의 획득과정이 완료된 미수이자 등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지출되었더라도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선급비용 등은 비용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그림 2-1] 발생주의 수익인식 과정

3. 거래의 개념과 거래의 8요소

복식부기에서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거래라 하는데, 거래란 재산의 증감 즉,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여 자산 구성요소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이런 사건은 회계상 거래가 된다.

회계상 거래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은 거래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원인) 현금을 받았다(결과)”와 같이 원인과 결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거래의 양면성이라 하는데 복식부기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의 두 얼굴인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 즉 상품의 구입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왼쪽), 현금의 지급은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오른쪽)에 기록한다.

거래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이들 거래의 변동요소는 각 거래마다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들 거래의 변동요소를 거래요소라고 하며, 거래요소는 증가감소의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거래의 8요소라 한다.

차변요소(4가지)	대변요소(4가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모든 거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변요소와 대변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즉 모든 거래는 차변요소 4가지와 대변요소 4가지가 상호 어우러져 발생한다.

4. 분개와 전기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를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분개”라 한다. 즉,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비품을 구입하다”라는 거래가 있다고 가정하자. 위 거래를 거래의 8요소로 분석하면, 비품의 증가(자산의 증가, 차변) 100,000원과 현금의 감소(자산의 감소, 대변) 100,000원의 두 가지 거래요소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분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차변) 비	품	100,000	(대변) 현	금	100,000
--------	---	---------	--------	---	---------

회계기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분개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분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내용을 ‘어떤 계정의’ ‘어느 변(차변 또는 대변)’에 얼마의 금액으로 기록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여야 한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를 분개한 후 각 계정과목별로 해당계정에 옮겨 기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기”라고 한다. 근래에는 회계처리가 대부분 산학협력단의 경우 전산화 되어 있으므로 분개만 정확히 이루어지면 장부에 기장하는 전기절차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2절

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종류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이다. 재무상태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기본금¹⁾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현금흐름표는 산학협력단 현금의 변동내역을 명

1) 일반적인 회계 요소인 자본을 산학협력단에서는 기본금이라 한다.

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2013년 회계연도에는 규칙 제16조 제2항의 직전 회계연도와의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부칙 제2012-5호, 2012.4.2).

재무제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명세서를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운영차익처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첫째, 신고조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와 둘째, 기금을 적립하고자 할 경우이다. 반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와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경우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적립금을 운영차익으로 이입하여야 하므로 이때에도 운영차익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산학협력단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규칙 별표 1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명세표, 규칙 별표 2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규칙 별표 3의 현금흐름표 계정과목명세표에 규정되어 있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제6호)”와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규칙 제15조 제7호)”는 회계원칙에 따라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는 예시 목적으로 해석하고,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규칙 제18조).

제3장

재무상태표

1. 재무상태표의 개요 및 작성기준
2. 유동자산
3. 비유동자산
4. 유동부채
5. 비유동부채
6. 기본금
7. 자산·부채의 평가

제3장 재무상태표

제1절

재무상태표의 개요 및 작성기준

1. 재무상태표의 개요

재무상태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9조). 여기서
재무상태표일이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는 기준일로 일반적으로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표일은 매년 12월 31일이 되고,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
무상태표일은 매년 2월 28일(윤년의 경우 2월 29일)이 된다.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산학협력단의 자산과 부채 및 기본금을 총괄적으
로 표시한 회계보고서이며, 운영계산서가 일정기간의 운영성과를 보고하는데 비하여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별표 1]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명세표

1. 자산

과목		해설
관	항목	
자 산		
I.유동자산		
1.당좌자산		
	1)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요구불예금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2)단기금융상품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
	3)단기매매금융자산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4)매출채권	학교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수취채권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5)미수금	산학연협력계약과 운영외 거래(자산매각 등)로부터 발생한 수취채권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6)미수수익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수취하지 않은 운영외수익
	7)선급금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
	8)선급비용	지급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의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
	9)선급법인세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선급한 법인세
	10)부가세대급금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
	11)기타당좌자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기타당좌자산

과목		해설
관	항목	
	2.재고자산	
	1)재고자산	학교기업 등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Ⅱ.비유동자산	
	1.투자자산	
	1)장기금융상품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상인 정기에 금 등의 금융상품
	2)장기투자금융자산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장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공·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기부받은 주식이 있을 경우 이 계정에 집계)
	3)출자금	학교기업 등 비상장된 수익사업체에 대한 출자액
	4)기타투자자산	기타의 투자자산
	2.유형자산	
	1)토지	대지, 임야, 전답 등
	2)건물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
	3)구축물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기계기구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5)집기비품	책상, 사무용 비품 및 인테리어 설비 등
	6)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7)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인 건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비, 설계비 등의 금액(완공 후 해당 유형자산 과목으로 대체)
	8)기타유형자산	기타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별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3.무형자산	
	1)지식재산권	산학협력단이 실시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과목		해설
관	항목	
	2)개발비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3)기타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1)연구기금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연구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건축기금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건축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장학기금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장학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4)기타기금	연구·건축·장학기금 이외의 특정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기타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5)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
	6)기타비유동자산	1) ~ 5)를 제외한 기타의 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2. 부채와 기본금

과목		해설
관	항목	
	부채	
	I.유동부채	
	1.유동부채	
	1)매입채무	학교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의 지급채무
	2)미지급금	산학연협력계약과 운영외 거래(자산취득 등)로부터 발생한 지급채무
	3)선수금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

과목		해설
관	항목	
	4)예수금	일시적 제예수액
	5)제세예수금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일시적 제세예수금
	6)부가세예수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
	7)미지급비용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8)선수수익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
	9)기타유동부채	기타의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1. 비유동부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는 부채
	1)임대보증금	장비 및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2)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연도말 현재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연금운용자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표시함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
	4)기타비유동부채	기타의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기 본 금		
Ⅰ. 출연기본금		
	1. 출연기본금	
	1)출연기본금	산학협력단의 기본금으로 출연된 금액
Ⅱ. 적립금		
	1. 적립금	
	1)연구적립금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연구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과목		해설
관	항 목	
	2)건축적립금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건축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3)장학적립금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장학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4)기타적립금	연구·건축·장학기금 이외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기타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계상한 준비금
Ⅲ.운영차익		
1.처분전운영차익		
	1)전기이월운영차익	전기로부터 이월된 운영차익으로서 전기말 현재의 차기이월운영차익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당기운영차익	운영계산서상 당기운영차익
기본금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3.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적립금 및 운영차익으로 각각 구분한다.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여기서 1년 기준이라 함은 자산의 경우 1년 안에 현금으로 회수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부채의 경우에는 1년 안에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이란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을 말하며, 현금성자산이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요구불예금 및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현금으로 분류되는 통화대용증권에는 필요할 경우에 통화로 즉시 바꿀 수 있는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타인발행수표 등이 있다. 그리고 현금성자산 중 요구불예금이란 필요시 즉시 인출 가능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을 의미하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이란 취득당시 또는 가입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을 의미한다.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시점에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였다가 재무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3-1...①



20X1. 5. 1 1년만기 정기예금 1억원을 가입하였다.

(차변) 단기금융상품	1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	-------------	---------------	-------------

20X2. 2. 28 재무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2개월 남아 있다.

단기금융상품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음

* 사립대학의 재무상태표일은 2월 28일(윤년의 경우는 29일)이고, 국공립대학의 재무상태표일은 12월 31일이나, 사례에서는 편의상 사립대학 재무상태표일을 사용한다.

20X2. 5. 1 정기예금을 만기일에 해약하였다(예금이자 0.1억 발생, 원천징수 무시).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0	(대변) 단기금융상품	100,000,000
		이자수익	10,000,000

또한 연도 중에 꼭 현금및현금성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개할 필요는 없으며, 연도 중에는 보통예금, 제예금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다가 결산시점에 공시용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여러 계정을 통합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2. 단기금융상품 및 미수수익

단기금융상품이란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가입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한이 1년 이내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단기금융상품에 속하는 기타 정형화된 상품이란 양도성 예금증서, 금전신탁, 신종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등을 들 수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결산시점에는 예금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자 외에도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수취하지 않은 운영외수익이 있으면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미수수익은 재무상태표일 기준으로 보면 1년 내에 현금으로 회수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항목에 속한다. 그리고 이자수익은 운영계산서의 운영외수익에 속한다.

사례 3-2...○



20X1. 9. 1 남부은행에 현금 2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금하였다(이자율 5%).

(차변) 단기금융상품	2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00
-------------	-------------	---------------	-------------

20X2. 2. 28 결산시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5,000,000원을 계상하였다.

(200,000,000원×5%×6개월÷12개월=5,000,000원)

(차변) 미 수 수 익	5,000,000	(대변) 이 자 수 익	5,000,000
--------------	-----------	--------------	-----------

사례 3-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무조정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수수익(이자부문)	150,000원
당해연도 운영계산서상 이자수익	2,700,000원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수수익	100,000원



$$150,000\text{원} + 2,700,000\text{원} - 100,000\text{원} = 2,750,000\text{원}$$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이자지급일에 소득을 귀속시킨다. 따라서 미수수익의 경우 전기말 금액은 당기 이자수익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당기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당기말 금액은 당기 이자수익에는 반영되었으나 실제 입금은 되지 않았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 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

3.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회사채)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유동자산인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1년 이상 장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비유동자산인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구분은 시장성(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필요시 특별한 추가 비용 없이 매각 가능한 정도, 예를 들면 상장회사주식은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므로 시장성이 있음)과 보유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은 단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유사시 즉시 매매가 어려우므로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시장성이 있는 상장회사주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또한 기부받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므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로 산학협력단이 일반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은 자금운용목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한 것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이 설립취지와 관계없는 일반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환금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금운용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산학협력단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투자라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설립취지와 관련하여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 실험실 공장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장기투자금융자산이 아닌 출자금 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은 결산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의 운영외손익으로 계상한다. 단,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국·공·사채 등

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기술지주회사에서 지배권을 목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한다(규칙 제29조).

사례 3-4...○



20X1. 5. 15 1년 이내 처분할 목적으로 1억원 상당의 상장회사주식을 매입하였다.

(차변) 단기매매금융자산	1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	-------------	---------------	-------------

20X2. 2. 28 결산일 현재 상기 주식의 시가가 8,000만원이 되었다.

(차변) 유가증권평가손실	20,000,000	(대변) 단기매매금융자산	20,000,000
---------------	------------	---------------	------------

20X2. 4. 21 위 주식을 9,000만원에 처분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90,000,000	(대변) 단기매매금융자산	80,00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10,000,000

20X2. 6. 10 기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기부 받았다.

(차변) 장기투자금융자산	50,000,000	(대변) 일반기부금	50,000,000
---------------	------------	------------	------------

※ 기부받은 주식은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4. 매출채권과 미수금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모두 미래에 현금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계정으로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의 분류에 따르면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수취채권을 매출채권으로 기록하고, 운영외 거래인 자산매각 등에서 발생한 수취채권은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여기서 일반적 운영거래란 법인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로 산학협력단의 경우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 및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수익이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따라서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 중 미회수액은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회계이론상 타당하나 산학협력단에서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연구비 미회수액 등을 미

수금으로 계상하여 왔으므로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정에 반영하여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과 관련된 수취채권은 미수금에 계상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교기업이 있는 경우 학교기업에서는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취채권을 종전과 같이 매출채권에 계상한다.

사례 3-5...○



기업체와 3,000만원의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완료하였으나 연구비 중 2,000만원만을 수취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0	(대변) 산학협력연구수익	30,000,000
미 수 금	10,000,000		

산학협력단에서 사용하던 실험실습장비(취득원가 5,0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만원)를 2,000만원에 매각하고 50%만을 우선 수취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대변) 기 계 기 구	50,000,000
미 수 금	1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5. 선급금과 가지급금

선급금은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기록한다. 선급금은 계약이 완성되면 원래의 계정으로 대체 처리한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등을 선급금에 계상할 수 있다(이에 대한 사례는 무형자산 참조).

한편 기중에는 액수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아니한 각종 비용의 선지급액(예를 들면 정산되지 않은 출장비 등)을 가지급금 계정에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임시계정으로 결산시점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 관련 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 공시용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 선급비용

선급비용이란 자금은 지급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의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주로 보험료, 지급이자, 임차료 등에서 발생한다.

사례 3-6...

20X1. 6. 1 실험장비의 1년간 임차료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리스임차료	1,2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
------------	-----------	---------------	-----------

20X2. 2. 28 결산시점에 차기분 임차료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차변) 선 급 비 용	300,000	(대변) 리스임차료	300,000
--------------	---------	------------	---------

7.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세는 이자수익의 수령시 원천납부한 법인세로 향후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게 된다.

사례 3-7...

20X1. 8. 10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1,000,000원에 대해 140,000원의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받았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860,000	(대변) 이 자 수 익	1,000,000
선급법인세	140,000		

20X2. 2. 28 위 이자수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다.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000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	-----------	----------------	-----------

20X2. 6. 30 전기의 선급법인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40,000	(대변) 선급법인세	140,000
---------------	---------	------------	---------

8.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은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부가세대급금은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관련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반면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이외의 일반용역이나 임대수입 등은 부가세 과세사업이므로 이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계상한 후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다.

부가세예수금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징수하는 매출부가세로 수입금액과 별도로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부가세 신고시 모아서 납부한다.

부가세 매출세액 →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계상 → 부가세 신고시 납부

부가세 매입세액 { 과세사업관련 → 부가세대급금 계정에 계상 → 부가세 신고시 공제
면세사업관련 → 관련자산이나 비용에 가산 →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사례 3-8...●

20X1. 4. 10 산학협력연구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부가세 포함하여 11,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차변) 기계장치	11,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
-----------	------------	---------------	------------

20X1. 5. 18 창업보육센터 임대사업에 사용할 청소도구를 부가세 포함하여 1,100,000에 구입하였다.

(차변) 집기비품	1,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20X1. 6. 30 창업보육센터 임대료로 부가세 포함하여 5,500,000원을 청구하였다.

(차변) 미 수 금	5,500,000	(대변) 임대료 수익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20X1. 7. 25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차변) 부가세예수금	500,000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으로 산학협력단의 경우 연구사업에서는 발생하기 어렵고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기업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여기에 속한다.

과거에는 양도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취득원가를 재고자산에 계상하였으나 개정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취득원가를 무형자산에 계상한다.

제3절

비유동자산

1.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은 자금운용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가 기간이 경과하여 결산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금융상품에서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 대체한다.

사례 3-9...●



20X1. 6. 1 남부은행에 현금 2억원을 18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금하였다.

(차변) 장기금융상품	2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00
-------------	-------------	---------------	-------------

20X2. 2. 28 결산시 정기예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옴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였다.

(차변) 단기금융상품	200,000,000	(대변) 장기금융상품	200,000,000
-------------	-------------	-------------	-------------

2. 출자금

출자금은 장기금융상품과 달리 자금운용목적이 아닌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한 출자액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예를 들어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나 협회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계정에 계상한다.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의 가액은 출자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이익으로 계상한다.

사례 3-10...●



20X1. 9. 4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주)한국대학기술지주회사에 특허권(평가액 1억원, 장부가액 5백만원)을 현물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주식 100주를 취득하였다.

(차변) 출자금	100,000,000	(대변) 지식재산권양도수익	100,000,000
미수금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화에 해당하며,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기술지주회사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부가가치세를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금 가액은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가산하여 110,000,000원이 된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장부가액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에 계상하여 결국 지식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에는 95,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차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5,000,000	(대변) 지식재산권	5,000,000
------------------	-----------	------------	-----------

또한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에 출자하는 경우나 산학협력단본부에서 산하의 학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에 계상할 수 있으나 이는 내부거래로 외부 공시용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에 출자하는 경우나 산학협력단 본부에서 학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이나 산학협력단 본부에서는 출자금계정에 계상하고, 수익사업이나 학교기업에서는 기본금계정에 계상하나 이는 내부거래로 공시용 재무상태표에서는 서로 상계하여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3.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유형자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정은 기계기구와 집기비품으로 기계기구는 주로 연구와 관련된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 및 기타의 부속설비를 계상하는 계정이며, 집기비품은 일반관리업무와 관련된 책상, 컴퓨터 등 사무용 비품 및 인테리어 설비 등을 계상하는 항목이다.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인 건물, 구축물 등의 건축시 설계비, 공사비 등의 지출금액을 일시적으로 계상하는 계정으로 이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완공 후 해당 유형자산 과목으로 대체한다.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취득원가를 각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취득원가에는 매입자금 외에 유형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까지 소요된 운반비, 설치비, 각종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이를 부대비용이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한다.

$$\text{취득원가} = \text{매입금액} + \text{부대비용}$$

사례 3-11...


20X1. 7. 25 실험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총구입대금 10,000,000원)

(차변) 선 급 금	3,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
------------	-----------	---------------	-----------

20X1. 8. 12 실험기구가 도착하여 검수 후 설치를 완료하다. 운송비 200,000원과 설치기
사비용 3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차변) 기 계 기 구	10,500,000	(대변) 선 급 금	3,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
		미 지 급 금	7,000,000

20X1. 8. 20 실험기구에 이상이 없어 잔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미 지 급 금	7,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7,000,000
--------------	-----------	---------------	-----------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누계액은 재무상태표 작성시 당해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간접법)으로 표시한다.

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유형자산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뿐만 아니라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도 허용하나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정액법만 허용된다. 정액법은 매기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1년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text{정액법에서의 1년간 감가상각비} = \frac{\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액}}{\text{내용연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잔존가액은 내용연수 경과 후 유형자산의 예정처분가액으로 이를 추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영(0)으로 본다. 내용연수는 자산마다 실제 사용가능연수를 추정하여야하나 일반적으로 세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건물구조에 따라 20년~40년으로 보고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5년 정도로 보므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도 건축물을 제외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보통 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월로부터 월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사례 3-12...



앞에서 취득한 기계기구의 20X1 사업연도(20X1. 3. 1 ~ 20X2. 2. 28)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가정한다.

(차변) 감가상각비	1,225,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225,000
------------	-----------	--------------	-----------

$$\text{기계기구의 감가상각비} = \frac{10,500,000\text{원} - 0\text{원}}{5\text{년}} \times \frac{7\text{개월}}{12\text{개월}} = 1,225,000\text{원}$$

 **부분 재무상태표 표시 :**

간접법으로 표시(기계장치에 당해자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

기계장치	10,5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225,000원)	9,275,000원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상의 편의만 생각하면 (감가상각비의 계상, 선수수익의 계산시 감가상각비의 고려 등)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곧바로 연구제경비나 일반관리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산취득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회계나 세법측면에서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세법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이 있다.

○ 소액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즉시상각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시 비용처리 가능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대량취득의 경우)

- ①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②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

위 이외에도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취득시 비용처리가 가능함

따라서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자산취득시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여 선수수익 계상이나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념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로 지식재산권, 개발비, 기타무형자산으로 나뉘어진다. 지식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말하는데 무형자산에는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지출한 금액을 기록한다.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원비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등록이 될 경우 무형자산으로 대체한다. 외부연구비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사업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특허가 인정되지 않아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출원비용이 대부분 간접비를 재원을 하므로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등록비를 간접비사업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처리한다.

지식재산권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속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세대급금으로 계상한다.

(2) 무형자산의 양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운영계산서에 표시할 때는 단순히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를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보다 실질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처분대금은 지식재산권수익 중 지식재산권양도수익 계정에 표시하고, 처분원가는 지식재산권비용 중 지식재산권실사·양도비 계정에 표시한다(〈사례 3-13〉 참조).

(3)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같이 정액법에 따라 상각을 한다. 따라서 앞의 유형자산에 서와 같이 취득연도에는 월할상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유형자산과 달리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직접법).

사례 3-13...○



20X1. 5. 15 연구에서 산출된 신기술을 특허출원하기 위하여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하고 출원비용 330,000원(부가가치세 30,000원)을 송금했다. 출원비용은 산학협력 단 자체예산에서 지원하였다.

(차변) 선금금	3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30,000
부가세대금금	30,000		

20X1. 9. 20 신기술의 특허가 인정되어 특허등록을 위해 특허사무소에 등록비용 990,000원(부가가치세 90,000원)을 송금하고 출원시 계상했던 선금금 300,000원을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였다.

(차변) 지식재산권	9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990,000
부가세대금금	90,000		
(차변) 지식재산권	300,000	(대변) 선금금	300,000

20X1. 10. 10 (주)서울과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을 실시대가로 수령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	(대변) 지식재산권실시수익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20X1. 10. 15 신기술을 개발한 김길동교수에게 보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산학협력보상금	5,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비과세 기타소득의 범위) 중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위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이 대여(실시)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일부를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0X1. 12. 20 (주)서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5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포함)을 받았다(지식재산권에 대한 상각비 계산은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5,000,000	(대변) 지식재산권양도수익	5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차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1,200,000	(대변) 지식재산권	1,200,000
------------------	-----------	------------	-----------

사례 3-14...○



20X1. 12. 10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다. 이 특허권의 소유권은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변리사비용 등으로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차변) 지식재산권	2,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
------------	-----------	---------------	-----------

20X2. 2. 28 위 특허권에 대하여 상각비를 계산하고 분개를 표시하여라. 지식재산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100,000	(대변) 지식재산권	100,000
(직접법으로 당해자산에서 차감)			

지식재산권 상각비 = 2,000,000원 ÷ 5년 × (3개월÷12개월) = 100,000원

5. 기타비유동자산

산학협력단은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립금에 대한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금은 기타비유동자산의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에서 자문을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특정기금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자산과 구별하고 특별히 관리하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기금이므로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예치기한이 1년 이상)이나 단기금융상품으로 예치하면 될 것이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특정기금은 기본금의 적립금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나 많은 실무자들이 대학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과 혼동하여 불일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특례규칙에서는 운영차익처분계산서가 없으며,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차변의 특정기금과 대변의 적립금을 일치시키고 있다.

(차) 연 구 기 금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제적립금대체액	×××	연구적립금	×××

즉, 적립금의 생성이 운영차익의 처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계산서에 ‘제적립금대체액’이라는 비용계정과목을 계상함으로써 적립금계정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동시에 예금을 특정기금에 별도예금으로 예치하면 차변의 기금과 대변의 적립금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의 적립금의 적립은 운영차익처분사항으로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확정을 통해 비로소 적립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계정의 특정기금과 자본계정의 적립금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사례 3-15>와 같이 운영차익의 적립금 처분이 확정되는 회계연도에 특정기금의 예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특정기금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수익을 운영차익의 처분절차 없이 특정기금에 재예치하면 특정기금과 적립금 금액이 불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에

도 이자수익을 모아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서 적립금의 증가로 처분한 후 특정기금에 재예치하여야 한다.

기금 외 기타비유동자산으로는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의 보증금이 있다.

사례 3-15...●



20X2년 본예산에서 기타기금인출과 연구기금적립지출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

현금예산서(20X2회계연도)	
(단위 : 원)	
I. 현금유입액	
기타기금인출	200,000,000
II. 현금유출액	
연구기금적립지출	400,000,000
III. 현금의증감	(200,000,000)
IV. 기초의현금	800,000,000
V. 기말의현금	600,000,000

20X1회계연도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20X1회계연도)			
(단위 : 원)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000		
기타비유동자산		적립금	
연구기금	—	연구적립금	—
기타기금	400,000,000	기타적립금	400,000,000
		운영차익	
		전기이월운영차익	200,000,000
		당기운영차익	600,000,000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채와기본금합계	1,200,000,000

20X1회계연도 운영차익을 다음과 같이 이입·처분하다.

운영차익처분계산서(20X1 회계연도)	
I. 처분전 운영차익	
1. 전기이월운영차익	200,000,000
2. 당기운영차익	600,000,000
II. 적립금 등 이입액	
1. 기타적립금 이입액	200,000,000
III. 합 계	1,000,000,000
IV. 운영차익처분액	
1. 연구적립금적립액	400,000,000
V. 차기이월운영차익	600,000,000

이러한 운영차익 처분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기타적립금	200,000,000	(대) 운 영 차 익	200,000,000
(차) 운 영 차 익	400,000,000	(대) 연 구 적 립 금	400,000,000

20X2. 5. 20 운영차익처분에 의한 기타기금 2억원을 인출하고 연구기금 4억원을 적립하였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00	(대) 기 타 기 금	200,000,000
(차) 연 구 기 금	40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0

이러한 회계처리 후 20X2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당기운영차익은 0으로 가정).

재무상태표(20X2회계연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0		
기타비유동자산		적립금	
연구기금	400,000,000	연구적립금	400,000,000
기타기금	200,000,000	기타적립금	200,000,000
		운영차익	
		전기이월운영차익	600,000,000
		당기운영차익	—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채와기본금합계	1,200,000,000

제4절

유동부채

1.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매입채무는 학교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의 지급채무를 기록한다. 미지급금은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과 관련된 지급채무와 운영외 거래로서 자산취득 등에서 발생한 지급채무를 기록한다. 이는 앞의 자산부분에서 설명한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관계와 유사하다.

사례 3-16...○



20X1. 6. 19 산학협력연구관련 조사비로 150,000원을 지출하고 연구비카드로 결제하였다.

(차변) 연구활동비	150,000	(대변) 미 지 급 금	150,000
------------	---------	--------------	---------

20X1. 7. 20 연구비카드 결제일에 카드사용액 150,000원을 은행계좌에서 결제하였다.

(차변) 미 지 급 금	15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
--------------	---------	---------------	---------

2. 선수금과 선수수익

선수금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을 표시하고 선수수익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은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을 표시한다.

기업체나 교과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산학협력수익이나 지원금수익으로 연구목적의 자금을 수취하였으나 연구 및 개발 등과 관련한 용역에 대해 진행률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차기 이후에 속하는 연구수익에 대하여 결산시점에 선수수익으로 계상한다. 기말결산에서 선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개시 시점에 이를 다시 산학협력수익이나 지원금수익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선수수익은 결산시점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계정과목이다.

연구수익에 대하여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계산서 편에서 설명하

기로 하고 여기서는 연구비 수취분 중 선수수익 해당액을 계산했다고 가정하고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방법만 다음 사례로 설명하기로 한다.

사례 3-17...



20X1. 9. 10 산학협력연구수입으로 30,000,000원을 수취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	(대변) 산학협력연구수익	30,000,000
---------------	------------	---------------	------------

20X2. 2. 28 결산시점에 진행률에 따라 계산해보니 선수수익 해당액이 10,000,000원이 되었다.

(차변) 산학협력연구수익	10,000,000	(대변) 선 수 수 익	10,000,000
---------------	------------	--------------	------------

20X2. 3. 1 전년도 결산시점 계상한 선수수익을 당해연도 수익에 계상하였다.

(차변) 선 수 수 익	10,000,000	(대변) 산학협력연구수익	10,000,000
--------------	------------	---------------	------------

3. 예수금과 제세예수금

예수금과 제세예수금은 일시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였다가 다시 지출되는 금액을 임시로 계상하는 계정과목이다. 예수금은 예를 들어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발주처로부터 대표기관 자격으로 우선 연구비를 수령한 후 이를 산학협력단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다시 협력기관에 연구비를 보내주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제세예수금의 대표적 사례로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일시 예수액을 들 수 있다.

사례 3-18...



20X1. 6. 20 타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를하기로 하고 기업체로부터 대표기관 자격으로 연구비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 중 타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급할 연구비는 20,000,000원이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대변) 산학협력연구수익	30,000,000
		예 수 금	20,000,000

20X1. 7. 10 타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급할 연구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차변) 예 수 금	2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0
------------	------------	---------------	------------

사례 3-19...●



20X1. 7. 25 직원에 대한 7월분 인건비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으로 3,000,000원을 차감하고 지급하였다.

(차변) 인 건 비	5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47,000,000
		제 세 예 수 금	3,000,000

20X1. 8. 10 7월분 소득세 등 예수금 3,000,000원을 세무서 등에 납부하다.

(차변) 제 세 예 수 금	3,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
----------------	-----------	---------------	-----------

4.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에는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을 기록한다. 예를 들면 미지급이자, 미지급임차료, 미지급보험료, 미지급세금 등이 미지급비용에 포함된다.

여기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미지급금은 비용의 발생이나 자산의 구입 등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 중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미지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주의에 따라 기말시점까지의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정산기일 등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급여의 경우 매달 1일로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고 하면 2월 28일 결산시점에서 2월분 급여는 기간경과로 발생은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비용에 해당한다.

제5절

비유동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를 ‘퇴직금 추계액’이라 한다)을 부채로 계상하여 놓는 계정과목이다. 산학협력단 직원 중 학교에서 파견된 직원은 연금대상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비용 및 부채로 계상하는 이유는 회계원칙 중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회계처리이다. 퇴직금 추계액은 각 산학협력단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하면 된다.

사례 3-20...●



20X1. 3. 1 기초 재무상태표의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에 65,000,000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20X1. 10. 30 직원 중 2명이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00
---------------	------------	---------------	------------

20X2. 2. 28 결산시점에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 보니 70,000,000원이다.

(차변) 퇴 직 금 여	20,000,000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
--------------	------------	---------------	------------

※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 계상액 :

$$70,000,000\text{원} - (65,000,000\text{원} - 15,000,000\text{원}) = 20,000,000\text{원}$$

2. 퇴직연금운용자산

산학협력단이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직원을 연금의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가 있다. 퇴직연금상품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과 사전에 퇴직급여의 수준 또는 내용을 확정하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으로 나눌 수 있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새로운 퇴직연

금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제도의 비교〉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적립장소	회사내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관리주체	회사	회사	근로자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급여액의 변동	변동없음	변동없음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보장성	기업도산시 우선변제	보장(도산위험 존재)	완전보장

산학협력단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은 납부할 때 비용계정인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이는 퇴직연금을 외부에 위탁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회사입장에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과 이자증가액은 퇴직연금운용 자산 계정에 계상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표시한다. 이는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부채에 충당할 금액의 일부를 외부에 예치시켜 놓은 것과 비슷하므로 회사의 부채 지급의무는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례 3-2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0X1. 12. 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50,000,000원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였다.

(차변) 퇴 직 금 여 5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20X2. 5. 30 직원 중 1명이 퇴직하였다.

⇒ 회계처리 없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사례 3-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0X1. 3. 1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50,000,000원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다.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	------------	---------------	------------

20X1년 중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수익 2,400,000원이 발생하여 원본에 가산되었다.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2,400,000	(대변) 이자수익	2,400,000
---------------	-----------	-----------	-----------

20X2. 2. 28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140,000,000원 이다.
이때 재무상태표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부채	140,000,000원
퇴직연금운용자산	(52,400,000원)
	87,600,000원

20X2. 5. 30 직원 중 1명이 퇴직하였다. 총 퇴직금은 10,000,000원이고, 이 중 회사 지급분은 3,000,000원이며 나머지는 퇴직연금에서 지급되었다.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7,000,00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9조). 산학협력단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서 소득(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다음의 ①과②의 합계가 된다.

- ① 세법으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 ② 기타수익사업소득의 50%. 단, 산학협력단과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

한법에 따라 기타수익사업소득의 100%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에는 결산조정방법과 신고조정방법이 있다.

① 결산조정방법

결산조정방법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손익계산서(운영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신고조정방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세무조정계산서에만 표시함으로써 손금산입되는 방식)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서 당해 준비금을 이익처분하여야 한다.

여기서 감사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2. 삭제(96.12.30)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

따라서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준비금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결산조정의 경우)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범위액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회계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수익사업회계〉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운영계산서 비용항목)	(재무상태표 부채항목)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를 구분경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①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를 구분경리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어느 항목에 사용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산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해당비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차) 고유목적사업비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학교회계전출금 등)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을 해당비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므로 세무상 미사용액으로 보지는 않는다.

②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를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수익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하고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한다.

〈수익사업회계〉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한편, 비수익사업에서는 이를 전입받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비수익회계〉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수익사업회계에서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수익사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비수익사업회계〉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
고유목적사업비	×××	현금및현금성자산	×××
(학교회계전출금 등)			

또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도 가능하다.

〈수익사업회계〉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비수익사업전출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비수익회계〉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수익사업전입금	×××

이 경우 비수익사업전출금과 수익사업전입금은 내부거래로 결산시 상계하여 최종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수익사업회계에서 전입 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수익사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비수익사업회계〉			
(차) 고유목적사업비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학교회계전출금 등)			

③ 산학협력단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 특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은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수익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시기에 대한 예규에 따르면 비수익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자금의 전출시점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법인, 법인46012-1542, 1998.6.12).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회계에서 비수익사업회계로 자금을 전출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한 자금이 다시 수익사업으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수익사업회계〉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비수익사업전출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비수익사업회계〉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수익사업전입금	×××
--------------	-----	-------------	-----

이 경우 비수익사업전출금과 수익사업전입금은 내부거래로 결산시 상계하여 최종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례 3-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하는 경우



20X1. 2. 28 결산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수익사업에서 145,600,000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상응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다.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45,000,000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45,000,000

20X1. 6. 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0,000,000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였다.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그러나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학교회계전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만일 결산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해당비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다.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0,000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50,000,000
학교회계전출금	5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을 해당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므로 세무상 미사용액으로 보지는 않는다.

〈구분경리하는 경우〉

- 수익사업회계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	------------	---------------	------------

- 비수익사업회계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0,000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0,000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50,000,000
학교회계전출금	5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또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도 가능하다.

- 수익사업회계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0,000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50,000,000
비수익사업전출금	5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 비수익사업회계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대변) 수익사업전입금	50,000,000
(차변) 학교회계전출금	5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신고조정의 경우)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결산시 회계처리

- 결산시 회계처리는 필요 없음 -

②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함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기타)

내 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를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다.

③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X1기 20X1년 3월 1일부터 20X2년 2월 28일까지

처분확정일 20X2년 4월 25일

(단위 : 원)

과 목	금	액
I. 처분전운영차익		× × ×
1. 전기이월운영차익	× × ×	
2. 당기운영차익	× × ×	
II. 적립금등이입액		—
III. 합계		× × ×
IV. 운영차익 처분액		× ×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V. 차기이월운영차익		× × ×

④ 운영차익 처분시 회계처리

(차) 운 영 차 익	× ×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재무상태표 자본항목)		(재무상태표 자본항목)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사용시 회계처리

(차) 고유목적사업비용	× ×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 ×
(인건비, 연구비, 학교회계전출금 등)			

②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

별지 제15호 서식에 다음과 같이 표시함

손금불산입 인건비, 연구비, 학교전출금 ××× (기타사외유출)

내 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를 인건비 등으로 처리하였기에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다(고유목적사업비를 비수익사업에서 처리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없음).

③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X2기 20X2년 3월 1일부터 20X3년 2월 28일까지

처분확정일 20X3년 4월 27일

(단위 : 원)

과 목	금	액
I. 처분전 운영차익		× × ×
1. 전기이월운영차익	× × ×	
2. 당기운영차익	× × ×	
II. 적립금등 이입액		× ×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III. 합계		× × ×
IV. 운영차익처분액		—
V. 차기이월운영차익		× × ×

④ 운영차익 이입시 회계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대) 운 영 차 익	× × ×
---------------	-------	-------------	-------

제6절

기본금

1. 출연기본금

출연기본금은 산학협력단의 기본금으로 출연된 금액으로 산학협력단은 설립시 1회에 한해 학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연기본금에는 산학협력단 설립시 학교로부터 출연 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2. 적립금

적립금은 운영차익을 처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적립목적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이 있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타비유동자산 중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적립금은 운영차익의 처분에 따라 증가하고 적립목적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운영차익으로 이입하면서 감소한다.

사례 3-24...●



운영차익 중 1억원을 연구적립금으로 처분하고 이를 연구기금에 적립하였다.

(차변) 운 영 차 익	100,000,000	(대변) 연 구 적 립 금	100,000,000
연 구 기 금	1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연구적립금 중 5천만원을 운영차익으로 이입하고 연구기금 중 5천만원을 인출하였다.

(차변) 연 구 적 립 금	50,000,000	(대변) 운 영 차 익	5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연 구 기 금	50,000,000

적립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의 처분에 의하여 계상된다. 적립금에 계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때에 운영차익의 이입에 의하여 감소한다.

3. 운영차익

처분전운영차익은 전기이월운영차익에 당기운영차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당기 운영차익은 운영계산서로부터 산출된다. 전기이월운영차익은 전기로부터 이월된 운영차익으로 전기말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운영차익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운영차익의 처분이나 이입이 없어 운영차익처분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이월운영차익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의 처분전운영차익과 일치한다.

제7절

자산·부채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기준(규칙 제28조)

자산의 평가기준은 규칙 제2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8조(자산의 평가기준)

-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③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평가의 일반원칙은 기업회계의 원칙과 유사하나 개별 평가방법이나 회계처리는 일부 기업회계와 차이가 나기도 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규칙 제29조)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의 운영외손익으로 한다. 단,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국·공·사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장기투자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자본계정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 회계에서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자금운용목적이 아닌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등 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금에 기록하고 이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지주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주식에 순자산가치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재고자산의 평가(규칙 제30조)

산학협력단의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4) 대손상각 등(규칙 제31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충당금 잔액초과분에 대해서 대손상각 할 수 있으며, 대손충당금의 표시는 당해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사례 3-25...●



이미 연구가 종료된 A기업에 대한 연구비 10,000,00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미수채권의 5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차변) 대손상각비	5,000,000	(대변) 대손충당금	5,000,000
------------	-----------	------------	-----------

A기업이 최종적으로 파산하여 미수채권 10,000,000원이 대손확정되었다.

(차변) 대손충당금	5,000,000	(대변) 미 수 금	10,000,000
대손상각비	5,000,000		

(5) 감가상각(규칙 제32조)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은 정액법 뿐만 아니라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도 허용하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는 정액법만 허용된다. 무형자산도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간접법),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직접법)한다.

2. 부채의 평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채는 통상적으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한편, 화폐성의 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사례 3-26...


20X1. 12. 20 실험기구를 외국에서 US\$10,000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구입시 환율은 US\$1당 1,100원이었다.

(차변) 기 계 기 구	11,000,000	(대변) 미 지 급 금	11,000,000
--------------	------------	--------------	------------

20X2. 2. 28 결산시점에 회폐성 외화부채인 미지급금을 평가하였다. 재무상태표일 현재 환율은 US\$1 당 1,300원이었다.

(차변) 외화환산손실	2,000,000	(대변) 미 지 급 금	2,000,000
-------------	-----------	--------------	-----------

20X2. 3. 30 외상대금 US\$10,000을 송금하였다. 송금시 환율은 US\$1 당 1,250원이었다.

(차변) 미 지 급 금	13,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2,500,000
		외 환 차 익	500,000

4.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회계변경

회계변경에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다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산학협력단이 종전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종전의 회계정책이나 변경된 회계정책이 모두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정책이나 산학협력단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의 예로는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수익인식방법의 변경 등이 있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재고자산평가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이 허용되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허용되며, 수익인식방법은 진행기준만 허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대체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이 없어 회계정책의 변경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 효과를 전기이월운영차익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한다(소급법). 다만, 회계정

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여 과거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경험의 축적 등에 따라 이전에 행한 회계적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의 예로는 감가상각내용연수의 변경,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추정률의 변경 등이 있다.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전진법).

○ 회계변경의 처리방법

회계정책의 변경 —————→ 소급법
회계추정의 변경 —————→ 전진법

사례 3-27...○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기계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기존의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러한 회계추정의 변경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계기구의 취득원가 및 기존의 상각액은 다음과 같다.

기계기구의 취득원가 10,000,000원
기존의 감가상각비 계상액 4,000,000원 (내용연수 5년, 2년간 감가상각함)

감가상각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종전의 재무제표나 감가상각비는 수정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부터 수정한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 6,000,000원 ÷ 2년(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상각기간)
= 3,000,000원

(차변) 감가상각비 3,0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2) 오류수정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운영계산서의 운영외수익 또는 운영외비용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운영차익이나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 오류수정의 처리방법

중대한 오류	—————→	소급법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	—————→	당기손익처리

사례 3-28...○



연구비에 대한 감사결과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드러나 부적정 집행금액 500,000원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였고, 부적정 집행사유가 연구자의 잘못에 있어 이를 연구자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차변) 미 수 금	5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
------------	---------	---------------	---------

위 연구비를 연구자에게서 회수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	(대변) 미 수 금	500,000
---------------	---------	------------	---------

사례 3-29...○



전기분 연구비 집행액 중 800,000원이 부적정 집행액으로 밝혀져 이를 발주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회수하였다(이를 연구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8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
---------------	---------	---------------	---------

※ 전기분 연구비에 대한 환급액이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다. 만약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된 연구비중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례와 같이 해당 연구수익에서 차감한다.

사례 3-30...○



당기에 산학협력연구수익으로 계상된 연구비 집행액 중 1,000,000원이 부적정 집행액으로 밝혀져 이를 발주기관에서 당해연도에 회수하였다(이를 연구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차변) 산학협력연구수익	1,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	-----------	---------------	-----------

연구비 중 미집행이 있어 반납하는 경우에도 위 사례와 같이 해당 연구수익에서 차감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3) 이자수익의 반납

연구비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동 이자수익을 발주기관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회계처리 관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자수익에서 차감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차) 이자수익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그러나 위와 같이 처리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인세 신고서식 별지 제10호(갑))상의 이자소득보다 운영계산서의 이자수익이 적게 나타나므로 차이나는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²⁾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회계원칙에는 다소 벗어나나 이자수익의 반납을 다음과 같이 기타운영외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차) 기타운영외비용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방식이란 이자소득을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선급법인세(원천납부세액)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분리과세방식이란 이자소득을 법인세 신고시 제외하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이다.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면 이자소득 지급시 공제한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제4장

운영계산서

1. 운영계산서의 개요 및 작성기준
2. 운영수익
3. 운영비용

제4장 운영계산서

제1절

운영계산서의 개요 및 작성기준

1. 운영계산서의 개요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23조).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계산을 운영계산이라고 하며, 이를 성과계산이라고도 한다. 운영계산서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활동의 결과로 얻는 운영수익에서 그 운영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요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운영차익을 계산한다.

운영수익은 수익의 원천에 따라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으로 구분되고, 운영비용은 운영수익과 대응하여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구분된다.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한 운영계산서의 계정은 다음과 같다.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운영수익

과 목		해 설
관 항	목	
I.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 대가성 판단기준 : 결과물의 소유권을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정부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1) 지식재산권실시수익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2) 지식재산권양도수익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 연구 및 실험실습시설·장비 등의 사용료
	2) 임대료수익	토지및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
	5. 기타산학협력수익	
	1)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II.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1) 정부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과 목		해 설
관 항	목	
	1)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1)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Ⅲ.간접비수익	
	1.산학협력수익	
	1)산학협력 연구수익	산학협력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기타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과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을 제외한 산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2.지원금수익	
	1)연구수익	지원금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교육운영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기타 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Ⅳ.전입및기부금수익	
	1.전입금수익	
	1)학교법인전입금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2)학교회계전입금	학교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단, 설립자금 1회에 한함)
	3)학교기업전입금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4)기타전입금	기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금액
	2.기부금수익	
	1)일반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2)지정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3)현물기부금	현물로 받은 기부금

과 목		해 설
관	항 목	
Ⅴ.운영외수익		
1.운영외수익		
	1)이자수익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2)배당금수익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 중 투자주식,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익
	3)유가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4)유가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5)외환차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6)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7)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8)대손충당환입	매출채권,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계상액으로 기 계상한 충당금의 환입액
	9)전기오류수정이익	과연도 과다집행 분이 회수 조치되는 등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환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환입하는 경우의 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	기타의 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운영비용³⁾

과 목		해 설
관 항	목	
I.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1) 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 연구활동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1) 인건비	산학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 교육과정개발비	산학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 장학금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 실험실습비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사·양도비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2) 산학협력보상금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
4. 학교시설사용료		

과 목		해 설
관 항	목	
	1) 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 기타산학협력비	
	1) 기타산학협력비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II. 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1. 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 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 교육과정개발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 장학금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 실험실습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III. 간접비사업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1. 인력지원비	

과 목		해 설
관 항	목	
	1)인건비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3)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4)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 등)
	5)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6)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7)대학 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8)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단, 지식재산권으로 자산화된 금액은 제외함)
	4. 기타지원비	
	1)기타지원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IV.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1)인건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2)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과 목		해 설
관 항	목	
	4)대손상각비	수취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추정 계상액
	5)일반제경비	간접비수의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기타의 일반관리비용
V.운영외비용		
	1.운영외비용	
	1)유가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2)유가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을 평가한 결과 발생한 평가손실액
	3)외환차손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4)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5)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6)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7)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시 계상하는 비용계정
	8)기타운영외비용	기타 운영외비용
VI.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국립대학은 기성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운영수익총계－운영비용합계
운영비용총계		

3) 음영처리된 부분은 2012년 5월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추가된 항목으로 이를 반영하여 규칙 [별표 2]를 수정하여 제시한다.

2. 운영계산서의 작성기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계산서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규칙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 및 기부금수익,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익(또는 당기운영차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발생주의가 수익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실현주의의 형태로 적용되는 것처럼 비용의 경우에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된다.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연구수익과 연구비처럼 수익인식시점에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처럼 특정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발생한 원가가 일정기간 동안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당기에 발생한 원가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미래 효익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도 있다.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산학협력수익과 산학협력비를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자수익과 이자비용도 각각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한 후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당기운영차익을 보고한다.

사례 4-1...○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20×1년 5월 08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LINC 사업비로 10억원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0 (대변) 지원금/교육운영수익 1,000,000,000

이 사업비는 교육비 7억원과 연구비 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수익과 교육운영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위 분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0 (대변) 지원금/정부연구수익 300,000,000
 지원금/교육운영수익 700,000,000

제2절

운영수익

1. 연구수익

운영계산서에서 운영수익은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간접비수익, 운영외수익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은 법인세법상 각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해당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은 법인세법상의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 면세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각각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수익사업여부, 과세사업 여부에 따라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표 4-1]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발행구분

구분	비영리법인의 사업구분			
	비수익사업		수익사업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과세사업	면세사업
법인설립신고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	○	○ 고유번호증	○	○ 사업자등록증
수익사업신고개시	×	×	○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

(김기열·변영선, 비영리법인회계와 세무실무, 삼일회계법인삼일인포마인)

(1) 산학협력연구수익과 지원금연구수익의 구분 원칙

산학협력연구수익과 지원금연구수익은 산학협력단의 주된 수익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정부연구수익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산업체연구수익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자는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후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된다. 법인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에서 수익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표 4-2]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① 축산업·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② 사회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 (계약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배당 또는 분배금	③ 교육서비스업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④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단,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제외	⑤ 국민연금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단체가 영위하는 연금 및 공제업
⑥ 제①호 내지 제⑤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⑥ 의료보험사업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⑦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 호에 규정한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⑧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 ⑨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⑩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등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 는 매매익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사회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외의 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구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 2호에 따라 연구 및 개발용역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느냐 아니면 대가관계 없이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대가관계란 산학협력단에서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연구발주처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즉 산학협력단이 연구발주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제공하고 발주처가 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수익사업의 범주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나 활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적 정책이나 공익 목적으로 연구 장려·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연구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학술연구용역의 수익사업여부 구분 기준(법인세법)

대가관계 있음 → 수익사업
대가관계 없음 → 비수익사업

이러한 세법상 구분을 기준으로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연구비는 산학협력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연구비는 지원금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의 구분(세법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과의 관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연구용역제공 → 산학협력수익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연구용역제공 → 지원금수익

따라서 용역 대가성을 파악하지 않고 연구의뢰자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의뢰한 연구용역은 산학협력연구수익, 국가기관이 의뢰한 연구용역은 지원금수익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즉, 기업체도 대가관계 없이 대응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도 필요에 의하여 연구용역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는 지원금수익, 후자는 산학협력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지원금수익 중 산업체연구수익은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산학협력단에 대응자금을 투자할 경우에만 사용한다. 만약 기업이 산학협력단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였다면 기부금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원금수익에 속하는 산업체연구수익은 기부금수익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사례 4-2...○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기술기반구축사업 연구비 1억원을 수주하였으며 (주)아이티솔루션으로부터 대응자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0	(대변) 지원금/정부연구수익	100,000,000
		지원금/산업체연구수익	10,000,000

(주)아이티솔루션은 한국대학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코스닥에 등록되면서 한국대학산학협력단에 연구활성화를 위해 써 달라며 기부금 1천만원을 기탁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대변) 지정기부금 10,000,000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및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은 결산서 작성시 각각 [별지 제4호의1서식]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지원금수익명세서를 교부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교부처가 산업체일 경우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교부처가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일 경우는 해당 기관이 속한 최상위기관명을 기재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대가관계의 파악

산학협력연구수입과 지원금수익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가관계여부의 파악이 중요한데 연구발주처와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중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등의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연구결과물이 지식재산권인 경우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는 고도의 전문 인력 및 지식을 활용하게 되므로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등 신지식재산권도 포함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기준으로 대가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이 연구용역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계약의 경우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은 연구성과물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사용되었고 연구 종료 후에도 다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적 결과물은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 연구결과물이 지식재산권인 경우 대가관계의 판단근거

유형적 결과물 (연구기자재 등) → 대가관계 판단근거가 되지 않음
무형적 결과물 (지식재산권 등) → 대가관계 판단근거가 됨

대가관계가 있는 계약서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 (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단,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그 외 제작비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위와 같은 계약은 갑(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연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물도 갑에게 귀속되므로 대가관계가 있는 연구용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은 산학협력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도 있다.

제××조 (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 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발주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가 없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지원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연구보고서라는 연구결과물을 발주처인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내용과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하나 이는 지원기관이 연구진행 및 결과를 감독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이를 가지고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연구결과물이 시작(제)품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인 경우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가 수준 높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면 이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연구용역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산학협력단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작(제)품 제작을 의뢰하였을 경우 결과물은 당연히 지원기관의 소유가 될 것이며 대가성이 있는 연구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연구 내용이 지표조사, 타당성조사, 성분분석 등이라면 연구보고서는 대가를 받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별로 수익을 구분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계약형태에 따른 지원금수익의 발생 사례

구분	사 례	수익구분	거래증빙 및 문제점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국가기관이 출연금 형태로 산학협력 단에 지원: 국가기관 → 산학	- 지원금수익으로 분류	- 산학협력단에서 계산서 발행의무 없음
	국가기관이 출연금 형태로 민간기업 (주관)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세부 또는 위탁)에 지원하는 경우 : 국가기관 → 기업 → 산학	- 재원의 원천이 출연금 성격이므로 지원금수 익으로 분류 - 기업이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를 요구하는 경 우 기업체 출연분은 산학협력수익으로 분류	- 산학협력단에서 계산서 발행의무 없음
	국가기관이 출연금 형태로 산학협력 단을 통하여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경우 : 국가기관 → 산학 → 기업	- 출연금 입금시: 지원금수익으로 분류 - 민간기업에 지출시: 민간기업으로부터 계 산서를 청구받아 지원금사업비로 지출 처 리함	- 민간기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기술, 신개발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가 있으나 국가기관(지원기관)에서는 지원 된 연구비가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원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연구비 지원 총액에 대 한 집행액을 보고하라고 함. 따라서 민간 기업과 마찰이 많음.
국가 기관과 민간 자본의 권소 사업 과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단독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 국가기관(또는 기업) → 산학	- 일반적으로 지원금 수익으로 분류 - 기업이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체 출연분은 산학협력수익으로 분류	- 지원금수익으로 보는 이유는 민간자본이 국가기관으로 보내져서 합산된 금액이 산 학협력단으로 지원되는 형태를 일부 생략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주관하고 참 여기업(민간자본 출연한 기업)이 세 부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 국가기관(또는 기업) → 산학 → 기업	- 입금시: 국가기관 출연금, 민간자본 모두 지원금 수익으로 분류 - 참여기업에 지출시: 참여기업으로부터 계산 서를 청구받아 지원금사업비로 지출 처리함 - 기업이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체 출연분은 산학협력수익으로 분류	- 참여기업이 산학협력단에 세부과제 연구 비 청구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기술, 신개발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음. 그러나, 연구비 지원 총액에 대한 집 행액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참여기업과 마 찰이 있음.

(3)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면세적용 범위

① 면제되는 연구용역 범위

연구계약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수익으로 분류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또는 면세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하여 특정 연구용역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산학협력단과 과세당국 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는 있는 연구의 정의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면세대상 연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업회계기준서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 “연구”는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 (중략)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이고,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23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03.11

결론적으로, 연구란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연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산학협력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산학협력단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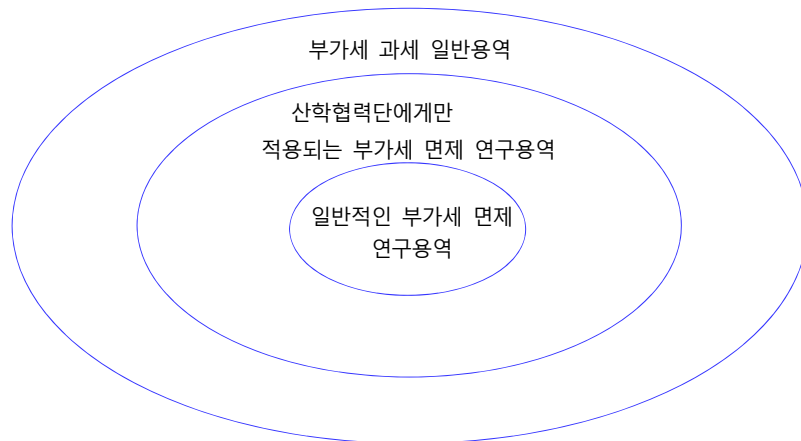
-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의2호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다. 시행령 제37조제1의2호의 입법 취지 상, 산학협력단에게 적용되는 면세대상 연구용역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의3에서 적용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용역에 폭넓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다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4-4], [그림 4-1]과 같다.

[표 4-4]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구분

구분	계정과목	부가가치세
1. 연구용역		
1) 산학협력단에만 적용되는 면세 연구용역	산학협력연구수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의2호에 의해 면세(계산서 발행)
2)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세 연구용역	산학협력연구수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해 면세(계산서 발행)
2. 일반용역	기타산학협력수익	과세(세금계산서 발행)



[그림 4-1]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용역 구분

2. 교육운영수익

(1)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과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의 차이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과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표 4-5]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과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의 차이점

구분	산학 교육운영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교육목적	요청기관의 필요에 의한 ⇒ 대가성 있음 〈예〉요청기관 인력 재교육, 특정 전문 인재 육성	고등교육 지원 ⇒ 대가성 없음
교육대상	대체로 외부인	기존 대학(원)생
교육 종료 후	교육수혜자는 요청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활동	교육 수혜자는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 없음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은 BK21, 국고특성화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특정 지원금에 연구와 교육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통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2) 계약학과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은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의뢰받고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재한다. 그런데 계약학과와 회계처리는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과학기술부, 2012. 3)’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에서 처리해야 한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장 회계관리

제17조(회계 관리)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학과와 운영주체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법상 처리는 [표 4-8]과 같이 달라진다.

[표 4-6] 계약학과와 운영주체에 따른 회계 및 세법 상 차이

구분	국·공 립대	국·공립대산학			사립대			사립대 산학
1.운영가능여부	×	○			○			×
2.발생수익	×	계정과목	수익사업 여부	부가세	계정과목	수익사업 여부	부가세	×
1)학생납입금	×	교육운영 수익	수익사업	면세(계산서)	등록금	고유목적 사업	×	×
2)기관납입금	×	교육운영 수익	수익사업	면세(계산서)	장학금	고유목적 사업	×	×

(3)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교육서비스업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나 제37조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만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지식재산권수익

지식재산권수익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실시 및 대여로 발생하는 실시수익과 양도 및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수익으로 구분된다.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식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규칙 제25조제4호).

지식재산권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고 노하우(know-how)⁴⁾ 형태로 기술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도 지식재산권수익으로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수익은 등록된 권리에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되나, 산학통계 지표 산출 시 노하우(know-how)에 대한 기술이전도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노하우에 따른 수익도 지식재산권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반면에 산업자문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한다.

4) 노하우는 특허화되지 않는 발명, 공식, 설계와 과정, 비법, 축적된 기술, 경험, 영업전략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례 4-3...


20×1. 5. 1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치매 예방 물질 개발과 관련된 특허를 (주)노인제약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노인제약은 10년간 매년 5월 1일에 한국대학산학협력단에 로열티로 12백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년 5월 1일에 첫 번째 로열티가 입금되었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3,200,000	(대변) 지식재산권실시수익	12,000,000
		부가세예수금	1,200,000

20×2. 2. 28 (결산분개)

(차변) 지식재산권실시수익	2,000,000	(대변) 선수수익	2,000,000*
----------------	-----------	-----------	------------

* 선수수익 = 12,000,000원 × 2개월/12개월 = 2,000,000원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산학협력단이 연구 및 실험실습시설·장비 등을 대여하고 수령한 사용료 및 토지·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각각 설비자산사용료수익과 임대료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사례 4-4...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주)맛나식품에서 식품성분분석기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로 1,000만원(부가세 별도)을 수령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	(대변)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5. 기타산학협력수익과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은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교육수익, 지식재산권수익, 설비자산사용료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수익으로 산업자문, 방송프로그램·영화·비디

오물 제작, 외국어 번역, 전시회·행사 진행 수익 등이 있으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기타지원금수익은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수익으로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인문주간 지원사업,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어린이급식센터 지원사업 및 건강가정센터 지원사업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간접비수익

연구비는 연구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와 연구개발을 위해 공동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간접비로 구분된다.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으로 집행되나,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수령 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통인건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집행된다.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이 발생할 경우 간접비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간접비 수익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종속되는 수익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도 주된 수익을 따른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의 적용을 받는 지원금 연구수익에서 발생한 간접비는 이 기준에 맞게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원금 연구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 및 산학협력수익에서 발생한 간접비수익은 산학협력단에서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또는 교부에 의해 지급되는 산학협력수익 또는 지원금 수익은 일반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선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마다 본 수익 및 간접비수익이 동일한 비율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금, 중도금은 본 수익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잔금이 입금될 때가 되어서야 간접비수익을 100% 인식한다면 두 회계연도 모두 적절한 간접비수익이 운영계산서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의 운영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간접비수익률’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산서 작성시 [별지 제4호의5서식] 간접비수익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교부처가 산업체일 경우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교부처가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일 경우는 해당 기관이 속한 최상위기관명을 기재한다.

사례 4-5


20X1. 7. 1 20×1년 7월 1일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K기업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였다.
 총연구비는 33백만원(간접비 3백만원 포함)이며 20×1년 7월 1일 선금 11백만원,
 20×1년 12월 1일 중도금 11백만원, 20×2년 5월 1일 잔금 11백만원이 지급된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	(대변) 산학협력연구수익	10,000,000
		간접비-산학협력연구수익	1,000,000

20X1. 12. 1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	(대변) 산학협력연구수익	10,000,000
		간접비-산학협력연구수익	1,000,000

20X2. 5. 1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	(대변) 산학협력연구수익	10,000,000
		간접비-산학협력연구수익	1,000,000

7. 전입및기부금수익

전입금수익은 전입기관에 따라 학교법인전입금, 학교회계전입금(산학협력단 설립 시 1회만 허용),⁵⁾ 학교기업전입금, 기타전입금으로 구분된다. 기부금수익은 현금기부금과 현물로 받은 현물기부금으로 구분되며, 현금기부금은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일반기부금과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다시 구분된다. 기부금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산학협력단 설립이후에도 산학협력계약과 관련되는 재원이 교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 조속히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1회에 한하여 진출하여야 한다”는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이다.

사례 4-6...



한국대학은 서울과 경기도에 캠퍼스를 갖고 있으며 한국대학 산학협력단 아래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경기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경기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독립시켜 새로이 법인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은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10억원을, 간접비외수익을 재원으로 5억원을 경기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지원하였다.

▶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

(차변) 간접비사업비-기타지원비 1,0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0,000
 운영외비용-기타 500,000,000

* 간접비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타지원비, 간접비외수익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타 운영외비용을 기재한다.

▶ 경기캠퍼스 산학협력단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0,000 (대변) 기타전입금 1,500,000,000

8. 운영외수익

(1)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통장에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한 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계 연도말 결산분개를 통해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례 4-7...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20×1년 2월 28일 정기에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분개에 반영하려고 한다. 정기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좌번호	구분	가입일	만기일	일수	정기에금액(원)	이자율	미수이자(원)
200-XXX-XX XXX1	이자수익 발생기간	20×1-07-18	20×2-07-18	365	700,000,000	4.20%	18,203,836
	미수이자 대상기간	20×1-07-18	20×2-02-28	226			
200-XXX-XX XXX2	이자수익 발생기간	20×1-10-06	20×2-10-06	365	300,000,000	4.05%	4,860,000
	미수이자 대상기간	20×1-10-06	20×2-02-28	146			
소계					1,000,000,000	-	23,063,836

(차변) 미수이자 23,063,836 (대변) 이자수익 23,063,836

사업비 관리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기관에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지출 할 때에는 이자수익을 계상하고 사업비 내 관련된 지출계정과목으로 기재한다.

사례 4-8...



한국대학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 관리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100만원을 연구재료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였다.

- 이자가 발생할 경우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대변) 이자수익	1,000,000
---------------	-----------	-----------	-----------

- 이자를 사용할 경우

(차변) 지원금사업비-연구비-연구장비·재료비	1,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	-----------	---------------	-----------

배당금수익은 단기매매금융자산·장기투자금융자산 중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식 발행 기업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분함으로써 발생한다.

사례 4-9...



20×1. 3. 10 (주)한국대학기술지주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다. 한국대학 산학협력단이 수령할 배당금은 1천만원이다.

(차변) 미수금(미수배당금)	10,000,000	(대변) 배당금수익	10,000,000
-----------------	------------	------------	------------

20×1. 4. 15 (주)한국대학기술지주로부터 배당금 1천만원이 입금되었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대변) 미수금	10,000,000
---------------	------------	----------	------------

배당금의 수익실현시기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이지만 위와 같이 동일회계연도에 배당결의 및 지급이 발생한다면 배당금 입금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다.

(2) 유가증권평가이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을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결과 발생한 평가이익을 기재하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기재한다. 사례는 운영외비용 중 유가증권처분손실 및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외환차익과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은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기재하고, 외화환산이익은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결산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기재한다. 사례는 운영외비용 중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실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기재한다. 반면에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지식재산권양도수익으로 기재한다. 사례는 운영외비용 중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참조하기 바란다.

(5) 기타 운영외수익

대손충당금환입은 매출채권,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계상액으로 기재상한 충당금의 환입액이다(회계처리는 일반관리비 중 대손상각비를 참조). 전기오류수정이익은 과년도 과다집행 분이 회수 조치되는 등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다(회계처리는 운영외비용 중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참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환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환입하는 경우의 환입액이다(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5절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참조). 위에서 열거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은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인식한다.

사례 4-10...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년 사용실적에 대한 실적포인트 1천만원이 20×2년 5월 입금되었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대변) 운영외수익-기타 10,000,000

운영수익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구분을 요약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운영수익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구분⁶⁾

관	항	목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산학협력수익	연구수익	정부연구수익	수익사업	면세(계산서)	
		산업체연구수익	수익사업	면세(계산서)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수익사업	면세(계산서)	
	지식재산권수익	지식재산권실시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지식재산권양도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임대료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지원금수익	연구수익	정부연구수익	비수익사업	×	
		산업체연구수익	비수익사업	×	기부금영수증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비수익사업	×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비수익사업	×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	연구수익	수익사업	면세(계산서)	
		교육운영수익	수익사업	면세(계산서)	
		기타산학협력수익	수익사업	과세(세금계산서)	
	지원금수익	연구수익	비수익사업	×	
		교육운영수익	비수익사업	×	
		기타지원금수익	비수익사업	×	
전입및기부금수익	전입금수익	전입금	비수익사업	×	
	기부금수익	기부금	비수익사업	×	기부금영수증
운영외수익	운영외수익	이자수익	수익사업	×	
		그외수익	*	**	

* 수익·비수익의 구분이 가능한 항목은 구분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비율로 안분한다.

**거래유형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판단한다.

6) 「00대 산학협력단 세무조사 사례」(조성인, 2010.10) 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9. 운영수익의 인식기준

산학협력단은 규칙 제25조에 따라 운영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규칙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산학협력단 회계의 운영수익 인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2.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3.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4.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식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5. 지원금수익은 연구·개발·교육 등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6. 기부금수익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인식한다.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과제별 진행률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금액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begin{aligned} \text{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금액} &= \text{용역계약금액} (= \text{순수사업비} + \text{간접비수익}) \\ &\times \text{진행률} (\text{총누적발생원가} \div \text{총예정원가}) - \text{전기까지 기인식된 수익의 누적액} \end{aligned}$$

여기서 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편의상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정한 후 진행률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도 있다.

$$\text{진행률} = \frac{\text{총누적발생원가}}{\text{총예정원가}} \times 100\%$$

①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 총발생비용

②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 간접비 - 연구용역기간이후의 감가상각비

- 간접비는 간접비 통장으로 이체시 간접비를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연구기자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시점에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편의상 간편한 방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text{진행률} = \frac{\text{총누적발생원가}}{\text{총예정원가}} \times 100\%$$

- ①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 총발생비용 + 간접비통장으로 이체된 간접비
(실제 집행여부와 상관 없음) + 기자재구입비(감가상각비 고려안함)
- ②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순수사업비 + 간접비)

사례 4-11...○



한국연구재단과의 연구용역계약 내용

- 연구용역기간 : 20X1년 7월 1일 ~ 20X2년 6월 30일(1년)
- 연구용역계약금액 : 11,000,000원
 - ① 순수연구비 : 10,000,000원
 - ② 연구간접비 : 1,000,000원
- 회계연도 : 3. 1. ~ 2. 28

20X2년 2월 28일까지의 연구비 사용내역

- 인건비 : 2,000,000원
- 연구제경비 : 3,000,000원
- 연구간접비 : 1,000,000원(실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연구간접비 관리통장으로 이체함)

20X2년 2월 28일 수익인식금액

1. 원칙적인 방법에 의해 진행률을 계산할 경우

$$\begin{aligned} \text{수익인식금액} &= \text{용역계약금액} \times \text{진행률}(\text{총누적발생원가} \div \text{총예정원가}) \\ &= (10,000,000\text{원} + 1,000,000\text{원}) \times (5,000,000\text{원} \div 10,000,000\text{원}) \\ &= 5,500,000\text{원}(=5,000,000\text{원} + 500,000\text{원}) \end{aligned}$$

※ 총누적발생원가 = 2,000,000원(인건비) + 3,000,000원(연구제경비) = 5,000,000원
 총예정원가 = 11,000,000원(용역계약금액) - 1,000,000원(간접비) = 10,000,000원
 선수수익금액 = 11,000,000원 - 5,500,000원 = 5,500,000원

운영계산서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5,000,000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500,000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5,000,000
당기운영차익	500,000

재무상태표	
유동부채운영계산서	
선수수익	5,500,000

2. 간편한 방법에 의해 진행률을 계산할 경우

수익인식금액 = 용역계약금액 × 진행률(총누적발생원가 ÷ 총예정원가)
 = (10,000,000원 + 1,000,000원) × (6,000,000원 ÷ 11,000,000원)
 = 6,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원)

간접비수익 = 1,000,000원(전액 인식)

직접비수익 = 6,000,000원 - 1,000,000원 = 5,000,000원

※ 총누적발생원가 = 2,000,000원(인건비) + 3,000,000원(연구제경비)
 + 1,000,000원(간접비) = 6,000,000원

총예정원가 = 11,000,000원(=순수사업비 + 간접비)

선수수익금액 = 11,000,000원 - 6,000,000원 = 5,000,000원

운영계산서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5,000,000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1,000,000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5,000,000
당기운영차익	1,000,000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선수수익	5,000,000

사례 4-12...

한국연구재단과의 연구용역계약 내용

- 연구용역기간 : 20X1년 7월 1일 ~ 20X2년 6월 30일(1년)
- 연구용역계약금액 : 11,000,000원
 - ① 순수연구비 : 10,000,000원
 - ② 연구간접비 : 1,000,000원
- 회계연도 : 3. 1 ~ 2. 28

20X2년 2월 28일까지의 연구비 사용내역

- 인건비 : 2,000,000원
- 기계기구 구입비 : 2,000,000원(취득일 : 20X1년 9월 1일,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음)
- 연구간접비 : 1,000,000원(실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연구간접비 관리통장으로 이체함)

20X2년 2월 28일 수익인식금액
1. 원칙적인 방법에 의해 진행률을 계산할 경우

$$\begin{aligned}
 \text{수익인식금액} &= \text{용역계약금액} \times \text{진행률}(\text{총누적발생원가} \div \text{총예정원가}) \\
 &= (10,000,000\text{원} + 1,000,000\text{원}) \times (2,250,000\text{원} \div 8,416,667\text{원}) \\
 &= 2,940,593\text{원}(=2,673,267\text{원} + 267,326\text{원}) \\
 \text{※ 총누적발생원가} &= 2,000,000\text{원}(\text{인건비}) + 250,000\text{원}(\text{감가상각비}) = 2,250,000\text{원} \\
 \text{총예정원가} &= 11,000,000\text{원}(\text{용역계약금액}) - 1,000,000\text{원}(\text{간접비}) \\
 &\quad - 1,583,333\text{원}(\text{연구용역 기간 이후의 감가상각비}) = 8,416,667\text{원} \\
 \text{선수수익금액} &= 11,000,000\text{원} - 2,940,593\text{원} = 8,059,407\text{원}
 \end{aligned}$$

운영계산서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2,673,267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267,326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2,000,000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250,000
당기운영차익	690,593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기계기구	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00)
유동부채	
선수수익	8,059,407

2. 간편한 방법에 의해 진행률을 계산할 경우

$$\begin{aligned}
 \text{수익인식금액} &= \text{용역계약금액} \times \text{진행률}(\text{총누적발생원가} \div \text{총예정원가}) \\
 &= (10,000,000\text{원} + 1,000,000\text{원}) \times (5,000,000\text{원} \div 11,000,000\text{원}) \\
 &= 5,000,000\text{원}(=4,000,000\text{원}+1,000,000\text{원})
 \end{aligned}$$

$$\text{간접비수익} = 1,000,000\text{원}(\text{전액 인식})$$

$$\text{직접비수익} = 5,000,000\text{원} - 1,000,000\text{원} = 4,000,000\text{원}$$

$$\begin{aligned}
 \text{※ 총누적발생원가} &= 2,000,000\text{원}(\text{인건비}) + 2,000,000\text{원}(\text{기계기구 구입비}) \\
 &\quad + 1,000,000\text{원}(\text{간접비}) = 5,000,000\text{원}
 \end{aligned}$$

$$\text{총예정원가} = 11,000,000\text{원}(=\text{순수사업비} + \text{간접비})$$

$$\text{선수수익금액} = 11,000,000\text{원} - 5,000,000\text{원} = 6,000,000\text{원}$$

운영계산서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4,000,000
간접비수익	
지원금-연구수익	1,000,000
지원금사업비	
연구비	2,000,000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250,000
당기운영차익	2,750,000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기계기구	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00)
유동부채	
선수수익	6,000,000

제3절

운영비용

1. 비용의 구분

운영계산서에서 운영비용은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구분된다. 운영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련수익의 분류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된다. 즉 산학협력수익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은 대부분 산학협력비로, 지원금수익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은 지원금사업비로 회계처리한다. 일반관리비는 전입및기부금수익이나 운영외수익 등을 재원으로하여 산학협력단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하는데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운영외비용은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이외의 기타비용을 의미한다. 학교회계전출금은 교비회계(국립대학은 기성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인데 다양한 수익을 원천으로 한다.

산학협력단의 여러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비용을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표 4-8]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비용

운영수익 계정	운영비용 계정														
	I. 산학협력비					II. 지원금사업비			III. 간접비사업비				IV. 일반관리비	V. 운영외비용	VI. 학교회계전출금
	1. 산학협력연구비	2. 교육운영비	3. 지식재산권비용	4. 학교시설사용료	5. 기타산학협력비	1. 지원금연구비	2. 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기타지원비	1. 일반관리비	1. 운영외비용	

I.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		●														
	2. 교육운영수익		●															
	3. 지식재산권 수익			●	●									●	●	●		
	4. 설비자산 사용료 수익			●	●									●	●	●		
	5. 기타 산학협력수익					●												
II.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												
	2. 교육운영수익						●											
	3. 기타 지원금수익							●										
III. 간접비수익	1. 산학협력수익			●	●				●	●	●	●			●	●		
	2. 지원금수익								●	●	●	●				●		
IV. 전입 및 기부금수익	1. 전입금수입			●	●									●	●	●		
	2. 기부금수익			●	●									●	●	●		
V. 운영외수익	1. 운영외수익			●	●									●	●	●		

2. 산학협력연구비와 지원금연구비

산학협력연구비와 지원금연구비는 각각 산학협력연구수익 및 지원금연구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2.5.1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관련)’에 따른 구분이다. 그러나 산학협력연구비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산학협력연구수익과 지원금연구수익은 연구수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이고 지출내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규칙에서는 산학협력연구비도 지원금연구비와 동일한 계정과목에 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 이전에 산학협력연구수익 또는 지원금연구수익으로 처리한 연구과제에 대해 2013회계연도에 지출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산학협력연구비 또

는 지원금연구비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 기존대로 ‘인건비’ 또는 ‘제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많은 연구과제에 대한 비목별 예산잔액을 일일이 파악하여 새로운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3회계연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즉, 2013회계연도에 체결하는 연구계약부터 새로운 연구비 계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변경 전 인건비 계정은 새로운 인건비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제경비는 위탁연구개발비 아래 제경비로 표시하여 기재할 수 있다.

(1)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총액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와 구분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의하면 학생연구원이란, 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을 의미한다.

[표 4-9]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연구비 인건비 구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직 접 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연구비 내 인건비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연구비 내 학생인건비

(2)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하면 연구장비·재료비는 지출시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회계처리 시에는 기기·장비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는 기계기구 또는 집기

비품으로,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중 건축비 및 부지 매입·조성비는 각각 건물(또는 건설중인자산)과 토지로 기재한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0] 연구장비·재료비의 계정과목 구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세부구분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기기·장비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기계기구 또는 집기비품
			기기·장비의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중 건축비	건설중인자산 또는 건물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중 부지 매입·조성비	토지
			연구시설의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연구장비·재료비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연구장비·재료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장비·재료비

(3) 연구활동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한 연구활동비는 회계처리규칙과 일치한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은 기업체 등과 계약 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서 제시한 세목 외 다양한 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활동비로 통합하여 회계처리한다.

[표 4-11] 연구활동비의 계정과목 구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 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직 접 비	연구 활동 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연구활동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 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연구활동비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 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 료, 속기로, 기술도입비 등	연구활동비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연구활동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 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활동비

(4) 연구과제추진비

연구과제추진비는 2012년 5월 개정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신설된 세목으로 4월 개정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회계처리규칙 제18조(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②는 ‘별표 1부터 별표 3(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현금흐름표)까지에서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과제추진비는 신설 취지에 맞게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이 개정되어 회계처리규칙 상 계정과목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행시점부터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회계 계정과목을 신설, 통합 또는 폐기하여 개정취지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2] 연구과제추진비의 계정과목 구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세부구분	계정과목
직 접 비	연구 과 제 추 진 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연구과제추진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비용	기계기구 또는 집기비품
			사무용품비, 연구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유지 비용	연구과제추진비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5) 연구수당과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서 제시한 연구수당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회계처리규칙과 일치한다.

[표 4-13] 직접비와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정과목 구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직 접 비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위탁연구 개발비

(6) 제경비

2013회계연도 이전에 산학협력연구수익 또는 지원금연구수익으로 처리한 연구과제에 대해 2013회계연도에 인건비외 지출이 있을 경우 ‘제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3. 산학협력교육운영비와 지원금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운영비와 지원금교육운영비는 인건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교육운영비로 구분되는데 연구비와 달리 정부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으므로 회계처리규칙에 의해 구분한다.

4.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간접비수익이 아닌 수익을 재원으로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와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처분원가를 계상한다. 특허는 출원 후 보정을 거쳐 등록되기까지 대략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등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급금으로 기재하였다가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식재산권으로 처리한다.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는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되는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와 대비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4-15’ 수익 재원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처리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산학협력보상금

산학협력보상금은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를 의미하는데 간접비수익이 아닌 수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연구수당이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과 대비된다. 그런데 산학협력단 소유의 특허 등을 기술이전하게 되어 발명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만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 및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표 4-14] 재원에 따른 지식재산권 비용 및 연구자 보상비 구분

구분	지식재산권 비용	연구자 보상비
간접비수익 외 수익	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	산학협력보상금
간접비수익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5. 학교시설사용료

학교시설사용료는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대학은 산학협력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대학의 유·무형자산 이용에 대한 대가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기타산학협력비와 기타지원비

기타산학협력비와 기타지원비는 각각 기타산학협력수익과 기타지원금수익을 재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계정에 대해서는 연구비와 같이 별도로 제시된 세목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설정가능한데 예를 들어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7. 간접비사업비

간접비사업비는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사용용도에 따라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비수익에서 살펴 본 것처럼 지원금 연구수익 중 일부만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간접비수익이 많음에도 여기서 정한 대로 간접비사업비 계정과목을 정한 이유는, 이 기준이 간접비 지출 내역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으며 이것이 적용되는 연구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출내역을 기재하여 통계가 원활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제시한 간접비 사용용도와 회계처리규칙의 계정과목은 대부분 일대일로 대응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중 비품 구입경비는 회계처리규칙 상 집기비품(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2) 연구개발준비금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았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앞서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기업체 등 국가 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하였을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연구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출원비용은 선급금으로 기재하였다가 등록이 되는 시점에 선급금 및 등록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등록이 거절될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며 연차수수료 및 기술이전을 위해 소용되는 지출은 관련비용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출원비용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출금액의 규모(중요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처리하고 간접비수익의 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15]와 같다.

[표 4-15] 수익 재원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수익 재원	지출내용	계정과목	선급금 사후 처리	
간접비 수익	출원비	선급금	등록시	무형자산
			등록 거절시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등록비	무형자산	-	

	유지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이전 비용 등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간접비 수익외 수익	출원비	선금금	등록시	무형자산
			등록 거절시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등록비	무형자산	-	
	유지비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	
	기술이전 비용 등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	

(4)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회계처리규칙 상 출자금(투자자산)으로 처리한다.

(5) 기타지원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로 위에서 살펴 본 간접비사업비 계정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또는 한 대학 내에 캠퍼스별로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먼저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신설된 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경우(〈사례 4-6〉 참조) 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서 제시한 간접비 사용용도와 회계처리규칙의 계정 과목을 비교해 보면 [표 4-16]과 같다.

[표 4-16] 간접비 계정 구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 목	세 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간 접 비	1. 인력지원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	1)인건비

	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	2)연구개발 능력성과급
2. 연구지원비		2.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1)기관공통지 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2)사업단 또 는 연구단 운 영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비품 구입경비	집기비품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3)연구실 안 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기계기구 또는 집기비 품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4)연구보안관 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5)연구윤리활 동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6)연구개발준 비금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7)대학연구활 동지원금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대학 기반 시설 및 장비 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1)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표 4-15] 참조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출자금 (투자자산)

간접비는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지출이고 대학 간 연구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므로 사용용도에 맞는 정확한 회계처리가 중요하다.

8. 일반관리비

(1) 인건비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는 간접비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때 사용한다. 만약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Ⅲ.간접비사업비 → 1.인력지원비 → 1)인건비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간접비수익과 간접비수익 외 수익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인건비로 지급된 재원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2) 감가상각비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와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따른다.

사례 4-13...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20×1년 7월 10일에 연구용 기계기구를 1,200만원에 구입하였다.	
(차변) 기계기구	12,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0
20×2년 2월 28일 결산분개	
- 내용연수 : 5년(잔존가액 : 0원)	
- 상각방법 : 정액법	
- 상각금액 : 12,000,000원 × (8개월/60개월) = 1,600,000원	
(차변) 감가상각비	1,6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600,000
운영계산서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1,600,000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기계기구	1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600,000)

(3)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며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를 따른다.

사례 4-14...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20×1년 7월 10일에 특허를 1,200만원에 취득하다.

(차변) 지식재산권	12,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0
------------	------------	---------------	------------

20×2년 2월 28일 결산분개

- 내용연수 : 10년(잔존가액 : 0원)
- 상각방법 : 정액법
- 상각금액 : 12,000,000원 × (8개월/12개월) = 800,000원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800,000	(대변) 무형자산	800,000
--------------	---------	-----------	---------

운영계산서

일반관리비	
무형자산상각비	800,000

재무상태표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11,200,000

(4) 대손상각비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대손충당금의 표시는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사례 4-15...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20×1년 4월 5일에 계약에 따라 (주)부도에 연구비 잔금 1,000만원을 청구하였다.

(차변) 미수금	10,000,000	(대변) 산학연구수익	10,000,000
----------	------------	-------------	------------

20×2년 2월 28일 결산분개

(주)부도의 자금사정 악화로 결산일 현재 연구비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차변) 대손상각비	10,000,000	(대변) 대손충당금	10,000,000
------------	------------	------------	------------

운영계산서	
일반관리비 대손상각비	10,000,000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미수금 대손충당금	10,000,000 (10,000,000)

20×2년 5월 13일 (주)부도는 결국 매출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차변) 대손충당금	10,000,000	(대변) 미수금	10,000,000
------------	------------	----------	------------

운영계산서	
영향 없음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미수금 대손충당금	0 0

20×3년 9월 28일

(주)부도가 유상증자로 자금 사정이 개선되어 다시 영업을 개시하였고 대손처리한 미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대변) 대손충당금환입	10,000,000
---------------	------------	--------------	------------

운영계산서	
운영외수익 대손충당금환입	10,000,000

(5) 일반제경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기타의 일반관리비용을 기재한다. 하지만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규칙 제18조제2항).

사례

4-16...○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20X1년 10월 6일에 산학협력업체 및 대학동문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유치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기부금수익을 재원으로 신문광고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다.

(차변) 홍보비	2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0
----------	------------	---------------	------------

운영계산서

일반관리비 홍보비*	20,000,000
---------------	------------

* 신문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이 2,000만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므로 홍보비라는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여 기재함.

9. 운영외비용

(1) 유가증권평가손실 및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을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결과 발생한 평가손실액을 기재하고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기재한다. 단,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국·공·사채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기술지주회사에서 지배권을 목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사례 4-17...

유가증권의 취득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20×1년 7월 12일에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상장된 (주)밝은전자 주식 100주(주당 1,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차변) 단기매매금융자산	1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	-------------	---------------	-------------

한국대학 산학협력단은 20×1년 8월 23일에 퇴임한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주)밝은전자 주식 100주를 기부받았다. 기부일 현재 (주)밝은전자의 종가는 100만원이다.

(차변) 장기투자금융자산	100,000,000	(대변) 기부금수익-일반기부금	100,000,000
---------------	-------------	------------------	-------------

* 기부받은 주식은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처리한다.

유가증권의 기말평가

(주)밝은전자 주식 : 20×2년 2월 28일 종가는 900,000원이다.

유가증권평가손실 = 200주 × (1,000,000원 - 900,000원) = 20,000,000원

(차변) 유가증권평가손실	20,000,000	(대변) 단기매매금융자산	10,000,000
		장기투자금융자산	10,000,000

유가증권의 처분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주)밝은전자에 대해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0주 중 5주를 주당 120만원에 처분하다.

유가증권처분이익 = 5주 × (1,200,000원 - 900,000원) = 1,500,000원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	(대변) 단기매매금융자산	4,50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1,500,000

(2) 외환차손 및 외환환산손실

외환차손은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기재하고 외환환산손실은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현재로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기재한다.

사례 4-18...



기증거래

20×1년 6월 2일에 한국대학 산학협력단은 미국 특허를 다국적기업인 ABC Corp. 판매하고 판매대금 US\$ 10,000를 청구하였다(환율 : ₩1,200/\$). 해당 특허권의 장부가액은 1,000만원이다.

(차변) 미수금	12,000,000	(대변) 지식재산권양도수익	12,000,000
(차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10,000,000	(차변) 지식재산권	10,000,000

20×1년 6월 30일에 특허 판매대금 US\$ 10,000가 입금되었다(환율 : ₩1,100/\$).

외환차손 : (1,200원 - 1,100원) × US\$ 10,000 = 1,000,000원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대변) 미수금	12,000,000
외환차손	1,000,000		

기말평가

20×1년 6월 30일에 특허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기말평가를 한다(20×2년 2월 28일의 환율은 ₩1,000/\$).

외화환산손실 : (1,100원 - 1,000원) × US\$ 10,000 = 1,000,000원

(차변) 외화환산손실	1,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	-----------	---------------	-----------

(3)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기재한다. 반면에 무형자산 처분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로 기재한다.

사례 4-19...



20×2. 9. 28.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위 <사례 4-13>에서 취득한 기계기구를 5백만원에 처분하였다.

20×2년 감가상각비 : 12,000,000원 × 7개월/60개월 = 1,400,000원

(차변) 감가상각비	1,4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400,000
------------	-----------	--------------	-----------

기계기구 장부가액 : 12,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 9,000,000원 - 5,000,000원 = 4,000,000원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대변) 기계기구	1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		

사례 4-20...

20×2. 9. 28. 한국대학 산학협력단은 〈사례 4-14〉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5백만원에 처분하였다.

20×2년 상각비 : 12,000,000원 × 7개월/120개월 = 700,000원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700,000	(대변) 무형자산	700,000
--------------	---------	-----------	---------

지식재산권 장부가액 : 12,000,000원 - 1,500,000원 = 10,500,000원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대변) 지식재산권양도수익	5,000,000
(차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10,500,000	(대변) 지식재산권	10,500,000

(4) 전기오류수정손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운영계산서의 운영외수익 또는 운영외비용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운영차익이나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사례 4-21...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20×1년 5월 10일에 연구비에서 구입한 기계기구 900만원을 재료비로 처리하였다. 이를 20×2년에 발견하여 오류 수정분개를 하려고 한다. 기계기구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원이다. 이 오류는 중대한 오류이다.

20×2 장부가 마감되지 않은 경우**20×1 수정분개**

(차변) 기계기구	9,000,000	(대변) 이익잉여금	9,000,000
이익잉여금	1,5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

20×1 감가상각비 : 9,000,000원 × 10개월/60개월 = 1,500,000원

20×2 분개

(차변) 감가상각비	1,8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	-----------	--------------	-----------

20×2 감가상각비 : 9,000,000원 × 12개월/60개월 = 1,800,000원

20×2 장부가 마감된 경우

20×1 수정분개

(차변) 기계기구	9,000,000	(대변) 이익잉여금	9,000,000
이익잉여금	1,5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

20×2 분개

(차변) 이익잉여금	1,8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	-----------	--------------	-----------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시 기재하는 비용계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5절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설명하였다.

(6) 기타운영외비용

위에서 설명한 운영외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기타운영외비용으로 기재한다.

사례 4-22...●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계약서 상 보고서 제출일 : 20×1년 4월 20일)에 대한 보고서를 5월 7일에 제출하였고 연구보고서 지출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3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차변) 기타운영외비용	3,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
--------------	-----------	---------------	-----------

사례 4-23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20×1년 3월 10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10억원을 수령하였고 연구종료일까지 이자가 1백만원 발생하였다. 20×2년 3월 20일 미사용이자 50만원을 연구재단에 반납하였다.

(차변) 기타운영외비용	5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
--------------	---------	---------------	---------

10.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은 간접비수익 등을 재원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국립대학은 기성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대학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지출주체가 상이해 잘못된 회계처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소속 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파견·겸직 근무를 할 때 대학이 우선 급여를 지급한 후 산학협력단에서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 이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회계처리이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회계원칙)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대학은 인건비 지급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사후 정산시 산학협력단은 인건비, 대학은 미수금을 상계 처리하여야 한다. 반면에 산학협력단이 대학에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대학이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대학은 인건비 수령시 예수금으로 기재하였다가 매월 인건비 지급시점에 예수금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대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연구수익을 재원으로 대학에 사후 정산하는 경우

- 인건비 지급시

〈대학〉

(차변) 미 수 금	×××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
		제 세 예 수 금 (원천징수액)	×××

- 사후 정산시

〈산학협력단〉

(차변) 산학협력연구비-인건비	×××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대학〉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변) 미 수 금	×××
---------------	-----	------------	-----

(2)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학협력연구 수익을 재원으로 선지급하고 대학이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차변) 산학협력연구비-인건비	×××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대학〉

- 인건비 수령시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변) 예 수 금	×××
---------------	-----	------------	-----

- 인건비 지급시

(차변) 예 수 금	×××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
		제 세 예 수 금	×××
		(원천징수액)	

사례 4-24...●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LINC 사업에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비 10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중 1억원을 대학에서 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사업비 입금 시

〈산학협력단〉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0	(대변) 지원금/교육운영수익 1,000,000,000
-----------------------------	-------------------------------

- 산학협력단이 대학에 인건비 지급 시

〈산학협력단〉

(차변) 지원금사업비-교육운영비-인건비	1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 인건비 대신에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을 사용해서는 안 됨.

〈대학〉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대변) 예 수 금	100,000,000
---------------	-------------	------------	-------------

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수령한 1억원 중 1천만원과 대학자체자금 1천만원을 산학협력중점 교수에게 ×월 인건비로 지급 시

〈산학협력단〉 : 분개 없음

〈대학〉

(차변) 예 수 금	1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9,000,000
금 여	10,000,000	제 세 예 수 금	1,000,000
		(원천징수액)	

※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자'인 대학에 있음

결론적으로,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므로 재무제표 상 인건비 계정은 산학협력단이 기재하며 대학은 인건비 입금 시 예수금 처리하고 지급 시 예수금을 상계한다. 또한 대학은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한다.

사례 4-25...○



한국대학은 20×1년 연구실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비 5천만원, 연구윤리교육비용 1천만원을 지출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산을 받기로 하였다. 산학협력단이 이 비용을 산학협력연구비에서 발생한 간접비수익과 지원금 연구수익에서 발생한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대학에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 보험가입비, 교육비용 지출 시
〈대학〉

(차변) 미수금	6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	------------	---------------	------------

-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산을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 지원금연구비에서 발생한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변) 연구실안전관리비	5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연구윤리활동비	10,000,000		

〈대학〉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대변) 미수금	60,000,000
---------------	------------	----------	------------

제5장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의 개요 및 작성기준
2. 현금흐름표의 작성

제5장 현금흐름표

제1절

현금흐름표의 개요 및 작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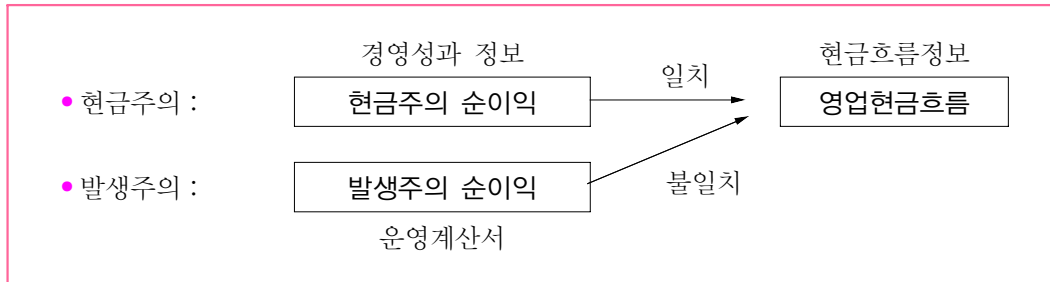
1. 현금흐름표의 개요

현금흐름표는 산학협력단 현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 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26조). 즉, 현금흐름표는 기초의 현금이 어떻게 하여 기말현금으로 증가 또는 감소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표이다.

현금흐름표에서는 현금의 정의가 중요한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현금”이라 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규칙 제3조). 기업회계의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의 범위에는 단기금융상품이 제외되나 산학협력단의 현금흐름표에서는 단기금융상품이 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현금흐름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의 당해 회계연도의 현금수입과 현금지출이 전기의 현금수입 및 현금지출내용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발생주의에 의한 운영계산서는 경영성과계산에 중점을 둔 결과, 현금흐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비교재무상태표라 하더라도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만 나타낼 뿐이며,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이 일치하여 당기순이익 만큼 현금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회계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이익측정을 위하여 발생주의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정보



2. 현금흐름의 구분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의 순 현금흐름의 합계에 기초현금을 가산하여 기말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현금흐름의 종류

산학협력단활동 전과정에 걸쳐 현금흐름은 수반된다. 산학협력단활동은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된다.

① 운영활동

운영활동이란 산업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수주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산학협력단의 본원적인 수익창출활동을 말한다.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액은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 및 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으로 구성되며,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액은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전기오류수정손익 등은 운영계산서에는 운영외손익으로 보고되지만 현금흐름표는 이를 모두 운영활동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이다. 손익항목을 운영손익, 운영외손익 등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은 운영차익을 발생원천별로 나누어 보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운영차익을 구성하는 요소는 모두 운영활동으로 분류한다.

또한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증감과도 관련이 있는데 운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산·부채계정은 다음과 같다.

○ 운영활동 관련계정

- 구매과정 : 미지급금, 선급금
- 연구(수익창출)과정 : 미수금, 대손충당금, 선수수익
- 기타손익 :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②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투자활동이란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 여유현금의 운용활동 등을 의미하며, 재무활동은 비유동부채 및 기본금의 조달과 상환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는 비품, 기계기구, 특허권 등의 유·무형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과 관련된 현금흐름과 연구기금 등 특정기금의 증감을 표시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는 임대보증금의 증감, 차입금의 증감, 출연기본금의 증감 등 부채와 기본금계정의 변동을 표시한다.

(2) 현금흐름의 구분기준

산학협력단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금흐름은 반드시 활동별로 구분하여 나타내야 한다. 현금흐름표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자금이 증감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조달되어 어디로 운용되었는가 하는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이다.

① 일반기준

활동별 현금흐름의 일반적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유동부채	
	장기 자본 구조	비유동부채
비유동자산		기본금

- 운전자본을 구성하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대부분 운영활동과 관련된다. 특이한 것은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증감을 기업회계에서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는 운영활동으로 구분한다.
- 비유동부채나 기본금을 증감시키는 거래는 대부분 재무활동이다. 예외적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운영활동 관련 계정이다.

- 비유동자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는 대부분 투자활동이다. 예를 들어 각종 기금이나 유무형고정자산의 증감은 투자활동이다.

② 주의를 요하는 항목

- 장기투자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하지만, 이러한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배당금수익 등은 운영활동이다.
-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계정에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현금주의 운영차익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무형자산처분손익이나 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은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무관한 손익이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의 구성항목 간 이동을 포함하지 아니하고(즉,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간 현금의 이동은 현금흐름표에 표시하지 않는다), 기중 증가와 감소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며 각각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흐름표상의 동일한 거래의 현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활동별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절

현금흐름표의 작성

1. 현금주의회계

(1) 직접법과 간접법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은 운영활동의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법에 의하여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현금주의방법 또는 매출과 매출원가 등에 이와 관련된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계정의 변동을 가감하여 현금주의에 의한 운

영계산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한 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회계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직접법이 운영활동 정보를 의미 있게 전달한다. 그러나 직접법은 현금주의 손익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산학협력단의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을 적용함에 따라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나 실무에서 작성의 어려움이 있다.

(2) 현금흐름표 작성시 유의사항

- ① 기초의 현금과 전기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기말의 현금과 당기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 ② 발생주의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운영계산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운영계산서 계정 금액에 관련 자산, 부채(재무상태표 계정)의 순증감액을 가감하여야 한다. 즉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수수익, 미지급금, 선수수익,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금금 등의 전년도말 잔액과 당해연도말 잔액의 차이인 순증감액을 관련 운영계산서 계정에 반영한다.

이 때 유동자산은 기말에서 기초를 차감하여 “+”면(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의 유출이고, 반대로 “-”면(자산이 감소하면) 현금의 유입으로 표시한다. 유동부채는 기말에서 기초를 차감하여 “+”면(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의 유입이고, 반대로 “-”면(부채가 감소하면) 현금의 유출로 반영한다. 현금(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금을 소모하여 유동자산을 취득했다는 뜻이 되므로 유동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유출을 의미하고, 반대로 유동자산의 감소는 유동자산을 감소시켜 현금을 조달했다는 뜻이 되므로 현금의 유입을 의미한다.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유동부채의 증가는 부채를 새롭게 조달하였으므로 현금이 증가하여 유입을 의미하고, 유동부채의 감소는 현금으로 유동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현금의 유출을 의미한다.

○ **운영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유동자산의 증가	→	현금의 유출
유동자산의 감소	→	현금의 유입
유동부채의 증가	→	현금의 유입
유동부채의 감소	→	현금의 유출

사례 5-1...○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의 20X1회계연도의 운영활동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부분재무상태표

	20X1.2.28	20X2.2.28
미수금	-	25,000

* 부분운영계산서

	20X1
산학협력수익	300,000
지원금수익	140,000

20X1회계연도 현금흐름표에 계상될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미수금 증감의 발생원천별 분석

관련손익계정	20X1.2.28	20X2.2.28	증감
산학협력수익	-	15,000	15,000 (자산증가→현금유출)
지원금수익	-	10,000	10,000 (자산증가→현금유출)

• 운영계산서 금액에 자산, 부채의 증감을 반영하여 현금유입액 산출

발생주의		관련 자산부채 계정		현금주의
산학협력수익	300,000	- 15,000	미수금(자산)의 증가	= 285,000
지원금수익	140,000	- 10,000	미수금(자산)의 증가	= 130,000

기중 분개를 추정하여 이 결과를 검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차변) 미수금	15,000	(대변) 산학협력수익	300,000
현금	285,000		
(차변) 미수금	10,000	(대변) 지원금수익	140,000
현금	130,000		

사례 5-2...●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의 20X1회계연도의 운영활동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부분재무상태표

	20X1.2.28	20X2.2.28
미지급금	27,500	13,000

* 부분운영계산서

	20X1
산학협력비	310,000
지원금사업비	190,000

20X1회계연도 현금흐름표에 계상될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미지급금 증감의 발생원천별 분석

관련손익계정	20X1.2.28	20X2.2.28	증감
산학협력비	27,500	-	- 27,500 (부채감소→현금유출)
지원금사업비	-	13,000	13,000 (부채증가→현금유입)

• 운영계산서 금액에 자산, 부채의 증감을 반영하여 현금유출액 산출

발생주의		관련 자산부채 계정		현금주의
산학협력비	310,000	+ 27,500	미지급금(부채)의 감소	= 337,500
지원금사업비	190,000	- 13,000	미지급금(부채)의 증가	= 177,000

기중 분개를 추정하여 이 결과를 검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차변) 미지급금	27,500	(대변) 현금	337,500
산학협력비	310,000		
(차변) 지원금사업비	190,000	(대변) 미지급금	13,000
		현금	177,000

- ③ 운영계산서에 존재하는 계정과목으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은 현금흐름표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즉,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유가증권평가손익, 외화환산손익, 대손충당금환입, 현물기부금 등의 계정과목은 운영계산서에 수입과 지출로 표시되나 실제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현금흐름표에는 나타날 수 없다.
- ④ 유가증권처분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자산의 처분시 현금흐름을 수반하나 투자활동에서 처분대금을 총액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운영활동에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의 처분거래가 있다고 가정하자.

사례 5-3...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기구 중 취득원가가 1,000,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600,000원인 기계기구를 500,000만원에 처분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	(대변) 기 계 기 구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위 거래에서 산학협력단의 총현금 유입액은 500,000원인데 만약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원을 운영활동에 표시한다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에는 400,000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현금흐름표에서는 운영활동에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원을 표시하지 않고 투자활동 유입액에 처분대금 총액인 500,000원을 표시한다.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례 5-4...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던 장기투자금융자산 1,000,000원을 900,000원에 처분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900,000	(대변) 장기투자금융자산	1,000,000
유가증권처분손실	100,000		

위 거래에서 현금유입액은 900,000원이므로 운영활동에 유가증권처분손실 100,000원을 유출로 표시하지 않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 900,000원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2. 현금흐름표 양식

현금흐름표는 산학협력단의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기초현금을 가산하여 기말현금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1) 양식의 요약

현금흐름표의 양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u>현금흐름표</u>		
I. 현금유입액		×××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II. 현금유출액		(×××)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III. 현금의 증감		×××
IV. 기초의 현금		×××
V. 기말의 현금		×××

현금흐름표가 제공하는 중심정보는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현금흐름표는 이와 반대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2) 현금흐름표 양식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예정인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은 현금흐름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별표 3]

현금흐름표 계정과목 명세서

과목		해설
관	항 목	
I.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운영활동이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함
	1)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	
	4) 전입 및 기부금수익 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투자활동이란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활동을 말함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재무활동이란 비유동부채와 기본금과 관련하여 재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함
	1) 부채의 차입	
	2) 기본금의 조달	
II.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운영활동이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함
	1) 산학협력비 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 현금유출액	

과목		해설
관	항 목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투자활동이란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활동을 말함
	1)투자자산지출	
	2)유형자산취득지출	
	3)무형자산취득지출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재무활동이란 비유동부채와 기본금과 관련하여 재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함
	1)부채의상환	
	2)기본금의반환	
Ⅲ.현금의증감		
Ⅳ.기초의현금		
Ⅴ.기말의현금		

운영활동의 경우 운영계산서의 ‘관’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투자, 재무활동의 경우 재무상태표의 ‘항’에 해당하는 계정과목까지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자금계산서 양식보다 훨씬 간소화되었음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정확한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의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모두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다음에 제시되는 양식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한 후 외부공포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현금흐름표 (세부)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I.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						
		(1) 연구수익						
		가. 정부연구수익						
		나. 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가. 교육운영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가. 지식재산권 실시수익						
		나. 지식재산권 양도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가. 설비자산사용료수익						
		나. 임대료수익						
		(5) 기타 산학협력수익						
		가. 기타 산학협력수익						
		2) 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						
		(1) 연구수익						
		가. 정부연구수익						
		나. 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가. 교육운영수익						
		(3) 기타 지원금수익						
		가. 기타 지원금수익						
		3) 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						
		가. 산학협력 연구수익						
		나. 교육운영수익						
		다. 기타 산학협력수익						
		(2) 지원금수익						

과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가. 연구수익						
		나. 교육운영수익						
		다. 기타지원금수익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1)전입금수익						
		가. 학교법인전입금						
		나. 학교회계전입금						
		다. 학교기업전입금						
		라. 기타전입금						
		(2)기부금수익						
		가. 일반기부금						
		나. 지정기부금						
		다. 현물기부금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1)운영외수익						
		가. 이자수익						
		나. 배당금수익						
		다. 전기오류수정이익						
		라. 기타운영외수익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투자자산수입						
		(1)장기금융상품인출						
		(2)장기투자금융자산매각대						
		(3)출자금회수						
		(4)기타투자자산수입						
		2)유형자산매각대						
		(1)토지매각대						
		(2)건물매각대						
(3)구축물매각대								
(4)기계기구매각대								
(5)집기비품매각대								
(6)차량운반구매각대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7)기타유형자산매각대						
		3)무형자산매각대						
		(1)지식재산권매각대						
		(2)개발비매각대						
		(3)기타무형자산매각대						
		4)기타비유동자산수입						
		(1)연구기금인출수입						
		(2)건축기금인출수입						
		(3)장학기금인출수입						
		(4)기타기금인출수입						
		(5)보증금수입						
		(6)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부채의차입						
		(1)임대보증금증가						
		(2)기타비유동부채증가						
		2)기본금조달						
		(1)출연기본금증가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산학협력비 현금유출액						
		(1)산학협력연구비						
		가.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비						
		라. 연구활동비						
		마. 연구수당						
		바. 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가. 인건비						
		나. 교육과정개발비						
		다. 장학금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라. 실험실습비						
		마. 기타교육운영비						
		(3) 지식재산권비용						
		가. 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						
		나. 산학협력보상금						
		(4) 학교시설사용료						
		가. 학교시설사용료						
		(5) 기타산학협력비						
		가. 기타산학협력비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 연구비						
		가.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다. 연구장비·재료비						
		라. 연구활동비						
		마. 연구수당						
		바. 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가. 인건비						
		나. 교육과정개발비						
		다. 장학금						
		라. 실험실습비						
		마. 기타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가. 기타지원금사업비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1) 인력지원비						
		가.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3)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4)기타지원비						
		가. 기타지원비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1)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나. 일반제경비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가. 전기오류수정손실						
		나. 기타운영외비용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가. 학교회계전출금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투자자산지출	(1)장기금융상품증가						
		(2)장기투자금융자산취득지출						
		(3)출자금투자지출						
		(4)기타투자자산투자지출						
		2)유형자산취득지출						
		(1)토지취득						
		(2)건물취득						
		(3)구축물취득						
		(4)기계기구취득						
		(5)집기비품취득						
		(6)차량운반구취득						

과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7)건설중인자산취득						
		(8)기타유형자산취득						
		3)무형자산취득지출						
		(1)지식재산권취득						
		(2)개발비취득						
		(3)기타무형자산취득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1)연구기금적립지출						
		(2)건축기금적립지출						
		(3)장학기금적립지출						
		(4)기타기금적립지출						
		(5)보증금지출						
		(6)기타비유동자산지출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1)임대보증금감소						
		(2)기타비유동부채감소						
		2)기본금반환						
		(1)출연기본금감소						
Ⅲ.현금의증감								
Ⅳ.기초의현금								
Ⅴ.기말의현금								

3. 현금흐름표 작성사례

재 무 상 태 표

당기 20X3년 2월 28일 현재

전기 20X2년 2월 28일 현재

1. 자 산

(단위 : 원)

과 목	20X2회계연도		20X1회계연도	
	금 액		금 액	
I. 유 동 자 산		13,903,426,192		14,713,296,723
(1) 당 좌 자 산		13,903,426,192		14,713,296,723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225,939,131		13,969,261,908	
2. 단 기 금 용 상 품	500,000,000		513,800,000	
3. 미 수 수 익	59,431,675		129,679,495	
4. 선 급 금	85,190,000		79,900,000	
5. 선 급 법 인 세	30,977,720		20,102,030	
6. 부 가 세 대 급 금	1,887,666		553,290	
II. 비 유 동 자 산		7,142,159,595		4,620,228,911
(1) 투 자 자 산		6,000,000		6,000,000
1. 장기투자금융자산	6,000,000		6,000,000	
(2) 유 형 자 산		3,906,200,674		1,544,842,382
1. 건 물	360,756,200		0	
(감가상각누계액)	6,764,179	353,992,021	0	0
2. 기 계 기 구	4,302,227,780		1,670,144,295	
(감가상각누계액)	1,126,197,514	3,176,030,266	333,964,257	1,336,180,038
3. 집 기 비 품	513,211,548		260,801,930	
(감가상각누계액)	144,337,161	368,874,387	52,139,586	208,662,344
4. 차 량 운 반 구	9,130,000		0	
(감가상각누계액)	1,826,000	7,304,000	0	0
(3) 무 형 자 산		172,777,304		151,324,912
1. 기 타 무 형 자 산	172,777,304		151,324,912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057,181,617		2,918,061,617
1. 연 구 기 금	2,231,241,690		2,592,121,690	
2. 기 타 기 금	825,939,927		325,939,927	
자 산 총 계		21,045,585,787		19,333,525,634

2. 부채 및 기본금

(단위 : 원)

과 목	20X2회계연도		20X1회계연도	
	금 액		금 액	
부 채				
I. 유 동 부 채		12,956,593,606		12,929,624,515
(1) 유 동 부 채		12,956,593,606		12,929,624,515
1. 미 지 급 금	25,000,000		232,846,170	
2. 예 수 금	359,940,079		0	
3. 제 세 예 수 금	55,089,854		49,341,790	
4. 미 지 급 비 용	2,565,400		0	
5. 부 가 세 예 수 금	8,758,833		4,567,909	
6. 선 수 수 익	12,505,239,440		12,642,868,646	
II. 비 유 동 부 채		82,350,000		51,450,000
(1) 비 유 동 부 채		82,350,000		51,450,000
1. 임 대 보 증 금	82,350,000		51,450,000	
부 채 총 계		13,038,943,606		12,981,074,515
기 본 금				
I. 출 연 기 본 금		0		0
(1) 출 연 기 본 금		0		0
1. 출 연 기 본 금	0		0	
II. 적 립 금		5,858,388,166		2,918,061,617
(1) 적 립 금		3,057,181,617		2,918,061,617
1. 연 구 적 립 금	2,231,241,690		2,592,121,690	
2. 기 타 적 립 금	825,939,927		325,939,927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801,206,549		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801,206,549		0	
III. 운 영 차 익		2,148,254,015		3,434,389,502
(1) 처분전운영차익		2,148,254,015		3,434,389,502
1. 전기이월운영차익	494,062,953		633,182,953	
2. 당 기 운 영 차 익	1,654,191,062		2,801,206,549	
기 본 금 총 계		8,006,642,181		6,352,451,119
부 채 와 기 본 금 총 계		21,045,585,787		19,333,525,634

운 영 계 산 서

당기 20X2년 3월 1일부터 20X3년 2월 28일까지

전기 20X1년 3월 1일부터 20X2년 2월 28일까지

1. 운영수익

(단위 : 원)

과 목	20X2회계연도		20X1회계연도	
	금 액		금 액	
I. 산 학 협 력 수 익		4,824,941,070		5,240,546,081
1. 연 구 수 익		4,443,533,666		4,996,103,271
1) 정 부 연 구 수 익	0		0	
2) 산 업 체 연 구 수 익	4,443,533,666		4,996,103,271	
2. 교 육 운 영 수 익		140,075,000		184,445,080
1) 교 육 운 영 수 익	140,075,000		184,445,080	
3. 지 식 재 산 권 수 익		202,174,547		37,012,455
1) 지 식 재 산 권 실 시 수 익	202,174,547		37,012,455	
2) 지 식 재 산 권 양 도 수 익	0		0	
4. 설 비 자 산 사 용 료 수 익		39,157,857		22,985,275
1) 설 비 자 산 사 용 료 수 익	39,157,857		22,985,275	
5.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0		0
1)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0		0	
II. 지 원 금 수 익		32,240,770,771		26,848,248,015
1. 연 구 수 익		27,886,453,515		24,684,245,647
1) 정 부 연 구 수 익	8,948,090,127		8,623,373,774	
2) 산 업 체 연 구 수 익	18,938,363,388		16,060,871,873	
2. 교 육 운 영 수 익		0		0
1) 교 육 운 영 수 익	0		0	
3. 기 타 지 원 금 수 익		4,354,317,256		2,164,002,368
1) 기 타 지 원 금 수 익	4,354,317,256		2,164,002,368	
III. 간 접 비 수 익		4,405,000,000		3,588,000,000
1. 산 학 협 력 수 익	0	505,000,000	0	668,000,000
1) 산 학 협 력 연 구 수 익	490,000,000		650,000,000	
2) 교 육 운 영 수 익	15,000,000		18,000,000	
3)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0		0	
2. 지 원 금 수 익		3,900,000,000		2,920,000,000

1) 연 구 수 익	3,450,000,000		2,650,000,000	
2) 교 육 운 영 수 익	0		0	
3) 기 타 지 원 금 수 익	450,000,000		270,000,000	
IV. 전입및기부금수익		42,200,000		4,000,000
1. 전 입 금 수 익		0		0
1) 학 교 법 인 전 입 금	0		0	
2) 학 교 회 계 전 입 금	0		0	
3) 학 교 기 업 전 입 금	0		0	
4) 기 타 전 입 금	0		0	
2. 기 부 금 수 익		42,200,000		4,000,000
1) 일 반 기 부 금	35,200,000		0	
2) 지 정 기 부 금	2,000,000		4,000,000	
3) 현 물 기 부 금	5,000,000		0	
V. 운 영 외 수 익		406,824,953		538,913,425
1. 운 영 외 수 익		406,824,953		538,913,425
1) 이 자 수 익	164,234,440		245,264,269	
2) 배 당 금 수 익	0		0	
3) 임 대 료 수 익	216,915,810		220,638,575	
4) 유가증권평가이익	0		0	
5) 유가증권처분이익	0		0	
6) 외 환 차 익	0		0	
7) 외 화 환 산 이 익	0		0	
8) 유형자산처분이익	443,800		0	
9) 무형자산처분이익	0		0	
10) 대 손 충 당 환 입	0		0	
11)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12) 기 타 운 영 외 수 익	25,230,903		73,010,581	
운 영 수 익 총 계		41,919,736,794		36,219,707,521

2. 운영비용

(단위 : 원)

과 목	20X2회계연도		20X1회계연도	
	금 액		금 액	
I. 산 학 협 력 비		4,719,218,813		4,926,097,637
1. 산 학 협 력 연 구 비		4,378,171,029		4,639,595,570
1) 인 건 비	2,401,820,009		2,990,081,931	
2) 학 생 인 건 비	0		0	
3) 연 구 장 비 · 재 료 비	1,273,038,567		697,381,188	
4) 연 구 활 동 비	703,312,453		952,132,451	
5) 연 구 수 당	0		0	
6) 위탁연구개발비	0		0	
2. 교 육 운 영 비		57,604,707		70,645,788
1) 인 건 비	28,860,000		45,418,240	
2) 교 육 과 정 개 발 비	6,792,900		0	
3) 장 학 금	0		0	
4) 실 험 실 습 비	0		0	
5) 기 타 교 육 운 영 비	21,951,807		25,227,548	
3. 지 식 재 산 권 비 용		190,166,367		63,995,418
1)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190,166,367		63,995,418	
2) 산 학 협 력 보 상 금	0		0	
4. 학 교 시 설 사 용 료		0		0
1) 학 교 시 설 사 용 료	0		0	
5. 기 타 산 학 협 력 비		93,276,710		151,860,861
1) 기 타 산 학 협 력 비	93,276,710		151,860,861	
II. 지 원 금 사 업 비		31,335,738,125		25,960,314,856
1. 연 구 비		28,534,060,852		22,723,110,815
1) 인 건 비	13,598,908,924		10,525,825,053	
2) 학 생 인 건 비	0		0	
3) 연 구 장 비 · 재 료 비	8,913,693,977		6,476,175,498	
4) 연 구 활 동 비	6,021,457,951		5,721,110,264	
5) 연 구 수 당	0		0	
6) 위탁연구개발비	0		0	

2. 교 육 운 영 비		2,627,651,317		454,084,896
1) 인 건 비	226,780,000		76,175,560	
2) 교 육 과 정 개 발 비	53,700,000		80,000	
3) 장 학 금	2,107,459,200		262,951,200	
4) 실 험 실 습 비	43,107,200		32,000,000	
5) 기 타 교 육 운 영 비	196,604,917		82,878,136	
3. 기 타 지 원 금 사 업 비		174,025,956		2,783,119,145
1) 기 타 지 원 금 사 업 비	174,025,956		2,783,119,145	
Ⅲ. 간 접 비 사 업 비		2,128,535,301		1,398,368,073
1. 인 력 지 원 비		1,005,279,507		497,511,024
1) 인 건 비	1,005,279,507		497,511,024	
2) 연구개발능력성과급	0		0	
2. 연 구 지 원 비		1,123,255,794		900,857,049
1) 기 관 공 통 지 원 경 비	834,739,629		644,047,984	
2)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288,516,165		256,809,065	
3) 연 구 실 안 전 관 리 비	0		0	
4) 연 구 보 안 관 리 비	0		0	
5) 연 구 윤 리 활 동 비	0		0	
6) 연 구 개 발 준 비 금	0		0	
7) 대학연구활동지원금	0		0	
3. 성 과 활 용 지 원 비		0		0
1) 과 학 문 화 활 동 비	0		0	
2)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0		0	
4. 기 타 지 원 비		0		0
1) 기 타 지 원 비	0		0	
Ⅳ. 일 반 관 리 비		1,013,899,677		728,955,731
1. 일 반 관 리 비		1,013,899,677		728,955,731
1) 인 건 비	0		0	
2) 감 가 상 각 비	893,464,811		386,103,843	
3) 무 형 자 산 상 각 비	46,087,608		12,500,728	
4) 대 손 상 각 비	0		0	
5) 일 반 제 경 비	74,347,258		330,351,160	

V. 운 영 외 비 용		75,386,816		75,271,475
1. 운 영 외 비 용		75,386,816		75,271,475
1) 유가증권처분손실	0		0	
2) 유가증권평가손실	0		0	
3) 외 환 차 손	0		0	
4) 외 화 환 산 손 실	0		0	
5) 유형자산처분손실	0		0	
6) 전기오류수정손실	0		0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0		0	
8) 기 타 운 영 외 비 용	75,386,816		75,271,475	
VI. 학 교 회 계 전 출 금		992,767,000		329,493,200
운 영 비 용 합 계		40,265,545,732		33,418,500,972
당 기 운 영 차 익		1,654,191,062		2,801,206,549
운 영 비 용 총 계		41,919,736,794		36,219,707,521

상기 재무제표에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자산의 처분거래는 다음과 같다.

(차) 감 가 상 각 비	893,464,811	(대) 감가상각누계액	893,464,811
(차) 무형자산상각비	46,087,608	(대) 무 형 자 산	46,087,608
(차) 기 계 기 구	5,000,000	(대) 현 물 기 부 금	5,000,000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2,220,000	(대) 기 계 기 구	2,220,000
감가상각누계액	443,800	유형자산처분이익	443,800

한편, 임대보증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 임 대 보 증 금	36,25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6,250,000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67,150,000	(대) 임 대 보 증 금	67,150,000

풀이

1.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현금과 기말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조에서 현금이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begin{aligned}\text{기초현금} &= \text{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text{기초 단기금융상품} \\ &= 13,969,261,908 + 513,800,000 = 14,483,061,908\end{aligned}$$

$$\begin{aligned}\text{기말현금} &= \text{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text{기말 단기금융상품} \\ &= 13,225,939,131 + 500,000,000 = 13,725,939,131\end{aligned}$$

2. 다음은 운영계산서에서 비현금수입·지출 항목을 제외한 수입 및 지출항목을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기재한다. 본 사례에서 운영계산서 항목 중 비현금수입·지출 항목은 현물기부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이므로 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기재한다. 한편 유형자산처분이익은 현금흐름을 수반하는 수입항목이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기계장치처분액 2,220,000원을 총액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운영활동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기재하지 않고 2,220,000원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에 기재한다.
3. 다음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항목의 기초가액과 기말가액의 차액(순증감액)을 계산하여 해당 계정과 관련된 손익 항목에 가감한다. 유동자산은 기말에서 기초를 차감하여 “+”면(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의 유출이고, 반대로 “-”면(자산이 감소하면) 현금의 유입이다. 유동부채는 기말에서 기초를 차감하여 “+”면(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의 유입이고, 반대로 “-”면(부채가 감소하면) 현금의 유출이다.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증 감	비 고	유입(+) /유출(-)	관련손익
유 동 자 산						
미 수 수 익	59,431,675	129,679,495	-70,247,820	①	+	이자수익
선 급 금	85,190,000	79,900,000	5,290,000	②	-	산학/연구장비재료비
선 급 법 인 세	30,977,720	20,102,030	10,875,690	③	-	이자수익
부가세대급금	1,887,666	553,290	1,334,376	④	-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유 동 부 채						
미 지 급 금	25,000,000	232,846,170	-207,846,170	⑤	-	지원금/연구장비재료비
예 수 금	359,940,079	0	359,940,079	⑥	+	기타운영외수익
제 세 예 수 금	55,089,854	49,341,790	5,748,064	⑦	+	지원금/연구인건비
미 지 급 비 용	2,565,400	0	2,565,400	⑧	+	사업단연구단운영비
부가세예수금	8,758,833	4,567,909	4,190,924	⑨	+	지식재산권실시수익
선 수 수 익	12,505,239,440	12,642,868,646	-44,161,892	⑩	-	지원금/정부연구수익
			-93,467,314	⑪	-	지원금/산업체연구수익

유동자산, 부채의 증감을 발생시킨 관련 손익 계정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위 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정을 가정하였다. 또한 위 사례의 선수수익과 같이 하나의 자산, 부채 계정이 여러 개의 손익 계정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해서는 당기말 및 전기말 유동자산, 부채 잔액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수금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법인(산학협력단)의 손익에 귀속되지 않는 부외현금의 성격이므로 특정 손익항목에 가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작성의 편의상 예수금의 증가는 기타운영외수익에, 예수금의 감소는 기타운영외비용에 반영하기로 한다.

상기 표의 비교는 각 자산, 부채의 증감이 다음의 현금흐름표에서 어떤 계정에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준다.

4. 마지막으로 비유동자산의 변동을 투자활동에 기재하고 비유동부채의 변동을 재무활동에 기재한다.

본사례에서는 기계기구의 변동이 복잡한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 기계기구	1,670,144,295원
현물기부로 인한 증가	5,000,000원 (비현금거래)
취득으로 인한 증가	2,629,303,485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 유출)
처분으로 인한 감소	(-) 2,220,000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 유입)
기말 기계기구	<u><u>4,302,227,780원</u></u>

현 금 흐 름 표 (세부)

20X2년 3월 1일부터 20X3년 2월 28일까지

(단위 : 원)

과 목(관, 항, 목)				20X2회계연도
I. 현 금 유 입 액				42,630,416,921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2,200,166,921
	(운영계산서)	(자산,부채증감)	(비고)	(합 계)
1) 산 학 협 력 수 익 현 금 유 입 액				4,829,131,994
(1) 연 구 수 익				4,443,533,666
가. 정 부 연 구 수 익	0	0		0
나. 산 업 체 연 구 수 익	4,443,533,666	0		4,443,533,666
(2) 교 육 운 영 수 익				140,075,000
가. 교 육 운 영 수 익	140,075,000	0		140,075,000
(3) 지 식 재 산 권 수 익				206,365,471
가. 지 식 재 산 권 실 시 수 익	202,174,547	4,190,924	⑨	206,365,471
나. 지 식 재 산 권 양 도 수 익	0	0		0
(4) 설 비 자 산 사 용 료 수 익				39,157,857
가. 설 비 자 산 사 용 료 수 익	39,157,857	0		39,157,857
나. 임 대 료 수 익	0	0		0
(5)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0
가.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0	0		0
2) 지 원 금 수 익 현 금 유 입 액				32,103,141,565
(1) 연 구 수 익				27,748,824,309
가. 정 부 연 구 수 익	8,948,090,127	-44,161,892	⑩	8,903,928,235
나. 산 업 체 연 구 수 익	18,938,363,388	-93,467,314	⑪	18,844,896,074
(2) 교 육 운 영 수 익				4,804,317,256
가. 교 육 운 영 수 익	0	0		4,804,317,256
(3) 기 타 지 원 금 수 익				4,354,317,256
가. 기 타 지 원 금 수 익	4,354,317,256	0		4,354,317,256
3) 간 접 비 수 익 현 금 유 입 액				4,405,000,000
(1) 산 학 협 력 수 익				505,000,000
가. 산 학 협 력 연 구 수 익	490,000,000	0		490,000,000
나. 교 육 운 영 수 익	15,000,000	0		15,000,000

다. 기타 산학협력수익	0	0		0
(2) 지원금수익				3,900,000,000
가. 연구수익	3,450,000,000	0		3,450,000,000
나. 교육운영수익	0	0		0
다. 기타 지원금수익	450,000,000	0		450,000,000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37,200,000
(1) 전입금수익				0
가. 학교법인전입금	0	0		0
나. 학교회계전입금	0	0		0
다. 학교기업전입금	0	0		0
라. 기타전입금	0	0		0
(2) 기부금수익				37,200,000
가. 일반기부금	35,200,000	0		35,200,000
나. 지정기부금	2,000,000	0		2,000,000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825,693,362
(1) 운영외수익				825,693,362
가. 이자수익	164,234,440	59,372,130	①③	223,606,570
나. 배당금수익	0	0		0
다. 임대료수익	216,915,810	0		216,915,810
라.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0
마. 기타 운영외수익	25,230,903	359,940,079	⑥	385,170,082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363,100,000
1) 투자자산수입				0
(1) 장기금융상품인출				0
(2) 장기투자금융자산매각대				0
(3) 출자금회수				0
(4) 기타투자자산수입				0
2) 유형자산매각대				2,220,000
(1) 토지매각대				0
(2) 건물매각대				0
(3) 구축물매각대				0
(4) 기계기구매각대				2,220,000
(5) 집기비품매각대				0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6) 차 량 운 반 구 매 각 대	0
(7) 기 타 유 형 자 산 매 각 대	0
3) 무 형 자 산 매 각 대	0
(1) 지 식 재 산 권 매 각 대	0
(2) 개 발 비 매 각 대	0
(3) 기 타 무 형 자 산 매 각 대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수 입	360,880,000
(1) 연 구 기 금 인 출 수 입	360,880,000
(2) 건 축 기 금 인 출 수 입	0
(3) 장 학 기 금 인 출 수 입	0
(4) 기 타 기 금 인 출 수 입	0
(5) 보 증 금 수 입	0
(6)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수 입	0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67,150,000
1) 부 채 의 차 입	67,150,000
(1) 임 대 보 증 금 의 증 가	67,150,000
(2) 기 타 고 정 부 채 의 증 가	0
2) 기 본 금 의 조 달	0
(1) 출 연 기 본 금 의 증 가	0

과 목(관, 항, 목)			20X2회계연도
Ⅱ . 현 금 유 출 액			43,387,539,698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9,532,150,395
	(운영계산서)	(자산,부채증감)	(비고)
1) 산 학 협 력 비 현금 유 출 액			4,725,843,189
(1) 산 학 협 력 연 구 비			4,383,461,029
가. 인 건 비	2,401,820,009	0	2,401,820,009
나. 학 생 인 건 비	0	0	0
다. 연 구 장 비·재 료 비	1,273,038,567	5,290,000	② 1,278,328,567
라. 연 구 활 동 비	703,312,453	0	703,312,453
마. 연 구 수 당	0	0	0
바. 위 탁 연 구 개 발 비	0	0	0
(2) 교 육 운 영 비			57,604,707
가. 인 건 비	28,860,000	0	28,860,000
나. 교 육 과 정 개 발 비	6,792,900	0	6,792,900
다. 장 학 금	0	0	0
라. 실 험 실 습 비	0	0	0
마. 기 타 교 육 운 영 비	21,951,807	0	21,951,807
(3) 지 식 재 산 권 비 용			191,500,743
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190,166,367	1,334,376	④ 191,500,743
나. 산 학 협 력 보 상 금	0	0	0
(4) 학 교 시 설 사 용 료			0
가. 학 교 시 설 사 용 료	0	0	0
(5) 기 타 산 학 협 력 비			93,276,710
가. 기 타 산 학 협 력 비	93,276,710	0	93,276,710
2) 지 원 금 사 업 비 현금 유 출 액			31,537,836,231
(1) 연 구 비			28,736,158,958
가. 인 건 비	13,598,908,924	-5,748,064	⑦ 13,593,160,860
나. 학 생 인 건 비	0	0	0
다. 연 구 장 비·재 료 비	8,913,693,977	207,846,170	⑤ 9,121,540,147
라. 연 구 활 동 비	6,021,457,951	0	6,021,457,951
마. 연 구 수 당	0	0	0
바. 위 탁 연 구 개 발 비	0	0	0
(2) 교 육 운 영 비			2,627,651,317
가. 인 건 비	226,780,000	0	226,780,000
나. 교 육 과 정 개 발 비	53,700,000	0	53,700,000
다. 장 학 금	2,107,459,200	0	2,107,459,200
라. 실 험 실 습 비	43,107,200	0	43,107,200
마. 기 타 교 육 운 영 비	196,604,917	0	196,604,917
(3) 기 타 지 원 금 사 업 비			174,025,956
가. 기 타 지 원 금 사 업 비	174,025,956	0	174,025,956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과 목(관, 항, 목)			20X2회계연도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2,125,969,901
(1) 인 력 지 원 비			1,005,279,507
가. 인 건 비	1,005,279,507	0	1,005,279,507
나. 연구 개발 능력 성과급	0	0	0
(2) 연 구 지 원 비			1,120,690,394
가. 기관 공통 지원 경비	834,739,629	0	834,739,629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288,516,165	-2,565,400 ⑧	285,950,765
다. 연구 실 안 전 관 리 비	0	0	0
라. 연 구 보 안 관 리 비	0	0	0
마. 연 구 윤 리 활 동 비	0	0	0
바. 연 구 개 발 준 비 금	0	0	0
사. 대학 연구 활동 지원금	0	0	0
(3) 성 과 활 용 지 원 비			0
가. 과 학 문 화 활 동 비	0	0	0
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0	0	0
(4) 기 타 지 원 비			0
가. 기 타 지 원 비	0	0	0
4 일반 관리비 현금 유출액			74,347,258
(1) 일 반 관 리 비			74,347,258
가. 인 건 비	0	0	0
나. 일 반 제 경 비	74,347,258	0	74,347,258
5 운영 외 비용 현금 유출액			75,386,816
(1) 운 영 외 비 용			75,386,816
가.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0
나. 기 타 운 영 외 비 용	75,386,816	0	75,386,816
6 학교 회계 전출금 현금 유출액			992,767,000
(1) 학 교 회 계 전 출 금			992,767,000
가. 학 교 회 계 전 출 금	992,767,000	0	992,767,000

과 목(관, 항, 목)	20X2회계연도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819,139,303
1) 투 자 자 산 지 출	0
(1) 장 기 금 융 상 품 증 가	0
(2) 장기투자금융자산 취득지출	0
(3) 출 자 금 투 자 지 출	0
(4) 기 타 투 자 자 산 투 자 지 출	0
2) 유 형 자 산 취 득 지 출	3,251,599,303
(1) 토 지 취 득	0
(2) 건 물 취 득	360,756,200
(3) 구 축 물 취 득	0
(4) 기 계 기 구 취 득	2,629,303,485
(5) 집 기 비 품 취 득	252,409,618
(6) 차 량 운 반 구 취 득	9,130,000
(7) 건 설 중 인 자 산 취 득	0
(8) 기 타 유 형 자 산 취 득	0
3) 무 형 자 산 취 득 지 출	67,540,000
(1) 지 식 재 산 권 취 득	0
(2) 개 발 비 취 득	0
(3) 기 타 무 형 자 산 취 득	67,540,00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지 출	500,000,000
(1) 연 구 기 금 적 립 지 출	0
(2) 건 축 기 금 적 립 지 출	0
(3) 장 학 기 금 적 립 지 출	0
(4) 기 타 기 금 적 립 지 출	500,000,000
(5) 보 증 금 지 출	0
(6)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지 출	0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6,250,000
1) 부 채 상 환	36,250,000
(1) 임 대 보 증 금 감 소	36,250,000
(2) 기 타 비 유 동 부 채 감 소	0
2) 기 본 금 반 환	0
(1) 출 연 기 본 금 감 소	0
Ⅲ. 현 금 의 증 감	(757,122,777)
Ⅳ. 기 초 의 현 금	14,483,061,908
Ⅴ. 기 말 의 현 금	13,725,939,131

비고의 번호는 유동자산, 부채의 증감이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현 금 흐 름 표 (공시용)

20X2년 3월 1일부터 20X3년 2월 28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관, 항, 목)	20X2회계연도
I. 현금유입액	42,630,416,921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2,200,166,921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4,829,131,994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2,103,141,565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405,000,000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37,200,000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825,693,362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363,100,000
1) 투자자산수입	0
2) 유형자산매각대	2,220,000
3) 무형자산매각대	0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60,880,000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67,150,000
1) 부채의차입	67,150,000
2) 기본금의조달	0
II. 현금유출액	43,387,539,698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9,532,150,395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4,725,843,189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1,537,836,231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2,125,969,901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74,347,258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75,386,816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992,767,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819,139,303
1) 투자자산지출	0
2) 유형자산취득지출	3,251,599,303
3) 무형자산취득지출	67,540,000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500,000,000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6,250,000
1) 부채의상환	36,250,000
2) 기본금의반환	0
III. 현금의증감	(757,122,777)
IV. 기초의현금	14,483,061,908
V. 기말의현금	13,725,939,131

제6장

산학협력단 결산 실무

1.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2. 운영차익처분계산서
3. 부속명세서
4. 감사
5. 결산 사례

제6장 산학협력단 결산 실무

제1절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1.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규정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결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연도 말일로 한다.

2. 학교기업회계에 관한 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6조(학교기업)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개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이다. 운영차익처분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운영차익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① 특정기금을 예치하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하려고 할 경우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은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기금을 예치하려면 적립금을 먼저 처분한 후 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특정기금을 인출하기 위해 적립금을 이입하려고 할 경우

특정기금을 목적에 맞게 찾아 쓰거나 일반자금으로 관리하려고 할 경우에도 특정기금 잔액을 특정적립금과 일치시켜야하므로 특정기금의 감소액 만큼 특정적립금을 차기이월운영차익에 가산하기 위하여 이입이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법인세 절감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차익을 처분하여 적립금계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입하여 차기이월운영차익에 가산한다.

운영차익처분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서 운영차익의 처분이란 운영차익을 감소시키고 적립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차기이월운영차익이나 적립금은 모두 기본금으로 분류되므로 운영차익을 처분하더라도 기본금의 크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차기이월운영차익이라는 사용에 제한이 없는 잉여이익을 사용에 제한이 있는 특정적립금으로 명목을 정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운영차익의 처분

(차변) 차기이월운영차익	×××	(대변) 연구적립금	×××
---------------	-----	------------	-----

적립금의 이입은 이미 처분해 놓은 적립금을 다시 사용에 제한이 없는 차기이월운영차익으로 되돌려 놓는 절차이다.

적립금의 이입

(차변) 연구적립금	×××	(대변) 차기이월운영차익	×××
------------	-----	---------------	-----

2.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양식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6호 서식]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 × 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까지 제 × 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까지
처분확정일 20××년××월××일 처분확정일 20××년××월××일

(단위 : 원)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I. 처 분 전 운 영 차 익				
1. 전 기 이 월 운 영 차 익				
2. 당 기 운 영 차 익				
II. 적 립 금 등 이 입 액				
1. 연 구 적 립 금 이 입 액				
2. 건 축 적 립 금 이 입 액				
3. 장 학 적 립 금 이 입 액				
4. 기 타 적 립 금 이 입 액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입액				
III. 합 계(I + II)				
IV. 운 영 차 익 처 분 액				
1. 연 구 적 립 금 적 립 액				
2. 건 축 적 립 금 적 립 액				
3. 장 학 적 립 금 적 립 액				
4. 기 타 적 립 금 적 립 액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				
V. 차 기 이 월 운 영 차 익(III - IV)				

3.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작성방법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작성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6-1...


전기이월운영차익	100,000,000원
당기운영차익	50,000,000원
연구적립금 처분액	30,000,0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분액	10,000,000원
건축적립금 이입액	15,000,000원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I. 처 분 전 운 영 차 익		150,000,000		
1. 전 기 이 월 운 영 차 익	100,000,000			
2. 당 기 운 영 차 익	50,000,000			
II. 적 립 금 등 이 입 액		15,000,000		
1. 연 구 적 립 금 이 입 액				
2. 건 축 적 립 금 이 입 액	15,000,000			
3. 장 학 적 립 금 이 입 액				
4. 기 타 적 립 금 이 입 액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입액				
III. 합 계(I + II)		165,000,000		
IV. 운 영 차 익 처 분 액		40,000,000		
1. 연 구 적 립 금 적 립 액	30,000,000			
2. 건 축 적 립 금 적 립 액				
3. 장 학 적 립 금 적 립 액				
4. 기 타 적 립 금 적 립 액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	10,000,000			
V. 차 기 이 월 운 영 차 익(III - IV)		125,000,000		

제3절

부속명세서

1. 부속명세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8조는 부속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부속명세서) ①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 1 서식]
2. 단기매매금융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 2 서식]
3. 매출채권명세서 [별지 제3호의 3 서식]
4. 미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 4 서식]
5. 선금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 5 서식]
6. 재고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 6 서식]
7. 장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 7 서식]
8. 장기투자금융자산 및 출자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 8 서식]
9. 유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 9 서식]
10. 무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 10 서식]
11. 특정기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 11 서식]
12. 매입채무명세서 [별지 제3호의 12 서식]
13. 미지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 13 서식]
14. 선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 14]
15. 총당부채명세서 [별지 제3호의 15 서식]
16. 기본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 16 서식]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 1 서식]
2. 지식재산권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 2 서식]
3. 지원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 3 서식]
4. 기부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 4 서식]
5. 간접비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 5 서식]
6.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4호의 6 서식]
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수익명세서(별지 제4호의 1 서식), 지원금수익명세서(별지 제4호의 3 서식) 및 간접비수익명세서(별지 제4호의 5 서식)는 교부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교부처가 산업체일 경우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교부처가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일 경우는 해당 기관이 속한 최상위기관명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교부처 별로 수익금액뿐 아니라 현금수령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계산서상의 발생주의 수익 및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주의 수입액을 교부처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감사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에 의하면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도 학교의 규모에 따라 학교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면 산학협력단도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한다.

제5절 결산 사례

1. 결산회계처리

사업연도 중 회계처리를 모두 마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결산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산마감분개(또는 결산수정분개라고도 함)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분개와 전기를 해서 장부의 기록을 정확히 한다고 해도 회계기간 중

에 기록하지 못한 재산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산마감분개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결산마감분개는 다음과 같다.

① 선수수익의 계산

진행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수익을 계산하여 수익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계상한다.

(차변) 산학협력연구수익 등	×××	(대변) 선 수 수 익	×××
-----------------	-----	--------------	-----

② 각종 경비지급에 대한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계상

당해연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해야할 항목 중 결산일까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수익비용대응을 위해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을 계상한다.

(차변) 인건비 등	×××	(대변) 미 지 급 금	×××
------------	-----	--------------	-----

③ 감가상각비 계상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차변) 감가상각비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
------------	-----	--------------	-----

④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학교 교직원들은 연금대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산학협력단 자체직원에게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차변) 퇴 직 급 여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⑤ 미수수익의 계상

예적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직전 이자지급기간으로부터 결산일까지의 미수수익을 계상한다.

(차변) 미 수 수 익	×××	(대변) 이 자 수 익	×××
--------------	-----	--------------	-----

⑥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의 처리

결산일 현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상각 처리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차변) 대손상각비	×××	(대변) 대손충당금	×××
------------	-----	------------	-----

대손상각 처리

(차변) 대손충당금	×××	(대변) 미 수 금	×××
대손상각비	×××		

⑦ 유동성 대체

장기금융상품의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금융상품으로 대체한다.

(차변) 단기금융상품	×××	(대변) 장기금융상품	×××
-------------	-----	-------------	-----

⑧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운영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3장제5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⑨ 외화환산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의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⑩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를 확인하여 평가손익을 계산하고 이를 운영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⑪ 내부거래 상계처리

외부공포용 재무제표에 나타내서는 안되는 내부거래를 서로 상계한다.

2. 기타 결산시 유의사항

이외에도 산학협력단의 경우 이자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선급법인세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100%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선급법인세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이자수익과 선급법인세의 누락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결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법인회계의 산학협력단전출금과 산학협력단회계의 학교법인전입금이 일치하는지 확인
- ②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의 전입금, 전출금이 일치하는지 확인
- ③ 당해연도 현금흐름표의 기초현금과 전년도 현금흐름표의 기말현금이 일치하는지 확인
- ④ 결산액이 최종 추경예산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사업연도 중 거래에 대한 분개에 결산마감분개까지 마치면 비로소 이를 모두 반영하여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표와 운영계산서를 산출할 수 있다.

3. 기중 거래에 대한 분개 사례⁷⁾

- 1) 20×2. 03 02 (주)맛나식품은 조리부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에 의뢰하고 10,000,000원(간접비 1,000,000원 포함)을 입금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대변) 산학협력수익 / 교육운영수익		9,000,000
간접비수익 / 교육운영수익		1,000,000

7) 본 사례에서 연구비 입금시 연구간접비는 간접비관리통장으로 바로 이체됨을 가정하며, 이에 대한 예금간 대체 분개는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 2) 20×2. 03. 03 산학협력단은 (주)맛나식품 조리부 직원들의 실험실습을 위해 재료비로 8,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차변) 교육운영비 / 실험실습비	8,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0

- 3) 20×2. 03. 04 (주)맛나식품은 4월에 열리는 세계음식박람회에서 산학협력단이 전시관을 설치, 운영해 줄 것을 위탁하고 총 계약금액 22,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원, 간접비 2,000,000원 포함) 중 선금 1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	
(대변) 산학협력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		9,000,000
간접비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		1,000,000
유동부채 / 부가가치세 예수금		1,000,000

- 4) 20×2. 03. 05 산학협력단은 (주)맛나식품의 세계음식박람회 운영을 위해 재료비, 임대료 등으로 9,000,000원(부가가치세 818,182원 포함)을 지출하였다.

(차변) 기타산학협력비 / 기타산학협력비	8,181,818	
당좌자산 / 부가가치세대금급	818,182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9,000,000

- 5) 20×2. 03. 06 산학협력단은 (주)맛나식품에 세계음식박람회 운영비 잔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간접비 1,000,000원 포함)을 청구하였다.

(차변) 당좌자산 / 미수금	11,000,000	
(대변) 산학협력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		9,000,000
간접비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		1,000,000
유동부채 / 부가가치세 예수금		1,000,000

- 6) 20×2. 04. 01 (주)맛나식품의 경영사정 악화로 연구비 잔금 11,000,000원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⁸⁾

(차변) 대손상각비	11,000,000원	
	(대변) 대손충당금	11,000,000원

- 7) 20×2. 04. 04 약대 교수 김갑을씨는 간질환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가성 없는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비 35,000,000원(간접비 3,500,000원 포함)이 입금되었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5,000,000	
	(대변) 지원금수익 / 정부연구수익	31,500,000
	간접비수익 / 지원금연구수익	3,500,000

- 8) 20×2. 04. 06 약대 교수 김갑을씨는 간질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인 David씨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고 자문료 \$10,000(1USD=1,200원)을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였다.

(차변) 지원금사업비 / 연구활동비	12,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0

- 9) 20×2. 04. 10 간질환 연구를 위한 재료비 등으로 8,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차변) 지원금사업비 / 연구장비·재료비	8,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0

- 10) 20×2. 04. 12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에서 이자 50,000원이 발생하였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	
	(대변) 운영외수익 / 이자수익	50,000

8)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은 기말 결산분개시 계상하나 여기서는 결산분개시 대손확정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기중에 설정하였다.

- 11) 20×2. 04. 15 간질환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5,000,000원을 부적정집행으로 통보받고 예금이체 하였다. 또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50,000원도 식약청으로 예금이체하였다.

(차변) 지원금수익 / 정부연구수익 ⁹⁾	5,000,000	
운영외비용 / 기타운영외비용	5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50,000

- 12) 20×2. 04. 25 산학협력단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차변) 유동부채 / 부가가치세 예수금	2,000,000	
(대변) 당좌자산 / 부가가치세대금금		818,182
현금및현금성자산		1,181,818

- 13) 20×2. 05. 01 보통예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정기예금(만기 20×3. 4. 30, 연이자율 5%)에 가입하였다.

(차변)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1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 14) 20×2. 05. 10 20×1회계연도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처분확정일(20×1 회계연도 결산운영위원회 개최일)에 따라 20×1 회계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000,000원을 설정하였다. 산학협력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고 있다.

(차변) 차기이월운영차익	6,000,000	
(대변) 적립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000,000

9) 연구비 입금일과 반납일이 모두 동일한 회계기간에 속하므로 입금시 계상한 계정과목과 동일한 정부연구수익으로 처리하였으나 반납이 20×3에 있었다면 기타운영외비용(잡손실이나 전기오류수정손실)으로 처리한다.

- 15) 20×2. 05. 15 약대 교수 김갑을씨가 개발한 간질환치료제를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하고 출원비용 330,000원(부가가치세 30,000원)을 이체하였다. 출원비용은 산학협력단 자체 예산(간접비)에서 지원하였다.

(차변) 당좌자산 / 선급금 ¹⁰⁾	300,000	
당좌자산 / 부가가치세대급금	3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30,000

- 16) 20×2. 06. 01 약대 교수 김갑을씨가 개발한 간질환치료제가 특허등록되어 특허사무소에 등록비용 990,000원(부가가치세 90,000원)을 이체하고 출원비용 지출시 계상했던 선급금 300,000원은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였다.

(차변) 무형자산 / 지식재산권	900,000	
당좌자산 / 부가가치세대급금	9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990,000
(차변) 무형자산 / 지식재산권	300,000	
	(대변) 당좌자산 / 선급금	300,000

- 17) 20×2. 06. 10 (주)서울약품에 간질환치료제에 관한 특허를 대여하고 1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 대여기간 X2.6.10~X2.12.9, 6개월)을 예금이체 받았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0	
	(대변) 산학협력수익 / 지식재산권 실시수익	10,000,000
	유동부채 /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

10)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원비용은 선급금으로 등록이 될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비사업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처리한다.

- 18) 20×2. 06. 15 간질환치료제를 개발한 김갑을씨에게 보상금 5,000,000원을 비과세¹¹⁾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예금이체 하였다.

(차변) 산학협력비 / 산학협력보상금	5,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 19) 20×2. 07. 01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실험기기를 (주)성공벤처에게 ×2.09.30까지 3개월간 대여하고 3개월 대여료 1,320,000원(부가가치세 120,000원 포함)을 예금이체 받았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320,000	
(대변) 산학협력수익 /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200,000
유동부채 / 부가가치세예수금		120,000

- 20) 20×2. 07. 05 컨소시엄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업체인 ○○통신(주)로부터 2,500,000원(간접비 250,000원 포함)과 (주)○○테크사로부터 1,500,000원(간접비 150,000원 포함)이 산학협력단계좌에 입금되었다(대가성 있음).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	
(대변) 산학협력수익 / 산업체연구수익		3,600,000
간접비수익 / 산학협력연구수익		400,000

- 21) 20×2. 07. 15 지역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업체인 (주)○○특수화학으로부터 19,800,000원(간접비 1,800,000원 포함)이 산학협력단 계좌로 입금되었다(대가성 있음).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9,800,000	
(대변) 산학협력수익 / 산업체연구수익		18,000,000
간접비수익 / 산학협력연구수익		1,800,000

1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인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2) 20×2. 07. 17 (주)불안에 연구비 5,000,000원(간접비 500,000원 포함)을 청구하였다.

(차변) 당좌자산 / 미수금	5,000,000	
(대변) 산학협력수익 / 산업체연구수익		4,500,000
간접비수익 / 산학협력연구수익		500,000

23) 20×2. 07. 25 컨소시엄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8,500,000원(간접비 850,000원 포함)이 산학협력단 계좌에 입금되었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8,500,000	
(대변) 지원금수익 / 정부연구수익		7,650,000
간접비수익 / 지원금연구수익		850,000

24) 20×2. 07. 25 산학협력단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차변) 유동부채 / 부가가치세 예수금	1,000,000	
(대변) 당좌자산 / 부가가치세대금		12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880,000

25) 20×2. 08. 03 지역기술혁신사업 지원금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95,600,000원(간접비 9,560,000원 포함)이 산학협력단 계좌로 입금되었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95,600,000	
(대변) 지원금수익 / 정부연구수익		86,040,000
간접비수익 / 지원금연구수익		9,560,000

26) 20×2. 09. 07 A은행계좌에 예금이자 5,557,500원 입금되었다(이자총발생액 6,500,000원, 법인세 공제 942,500원).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557,500	
선급법인세	942,500	
(대변) 운영외수익 / 예금이자수익		6,500,000

- 27) 20×2. 09. 17 지역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특수화학 재원으로 연구원 인건비 2,000,000원을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였다.

(차변) 산학협력연구비 / 인건비	2,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912,000
유동부채 / 제세예수금		88,000

- 28) 20×2. 09. 27 ○○특수화학 재원으로 연구원 연구수당 1,000,000원을 연구원 계좌로 이체하였다.

(차변) 산학협력연구비 / 연구수당	1,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 29) 20×2. 10. 01 컨소시엄사업과 관련하여 ○○통신(주) 재원으로 인쇄비 300,000원 및 세미나개최비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산학협력연구비 / 연구활동비	5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

- 30) 20×2. 10. 25 산학협력단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차변) 유동부채 / 부가가치세예수금	12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

- 31) 20×2. 11. 11 컨소시엄사업과 관련하여 (주)○○테크 재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 회의수당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산학협력연구비 / 연구활동비	15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

- 32) 20×2. 11. 21 컨소시엄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지원금으로 연구원 인건비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지원금사업비 / 연구인건비	3,5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500,000

- 33) 20×2. 12. 14 지역기술혁신사업 지식경제부 지원금으로 센터 행정보조원 2명에 대한 급여 9,000,000원 지급하였다(연말정산 함).

(차변) 지원금사업비 / 연구인건비	9,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9,000,000

- 34) 20×2. 12. 24 컨소시엄사업관련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재원으로 재료구입비 1,200,000원 및 전문가활용비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지원금사업비 / 연구장비·재료비	1,200,000	
지원금사업비 / 연구활동비	4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600,000

- 35) 20×3. 01. 28 지역기술혁신사업 지식경제부 지원금으로 기술지도비 5,000,000원과 운영위원 수당 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지원금사업비 / 연구활동비	11,4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1,400,000

- 36) 20×3. 02. 16 산학협력단 예산(간접비 재원)으로 소모품 200,000원을 구입하였다.

(차변) 간접비사업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2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

37) 20×3. 02. 20 컨소시엄사업 관련 설비 290,000원(○○테크 재원)과 지역기술 혁신사업 관련 장비 35,000,000원(지식경제부 재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차변) 유형고정자산 / 기계기구	35,29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5,290,000

4. 결산 분개 사례

(1) 유형자산 감가상각

20×3. 02. 20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였다.

- 구입금액 : 35,290,000원 - 내용년수 : 5년
- 상각방법 : 정액법 - 잔존가액 : 0원
- 상각금액 : $35,290,000 \text{원} \div 5 \text{년} \times (1 \text{개월} \div 12 \text{개월}) = 588,166 \text{원}$

(차변) 일반관리비 / 감가상각비	588,166	
(대변) 유형자산 / 기계기구감가상각누계액		588,166

(2) 무형자산 상각

20×2. 06. 01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상각을 하였다.

- 구입금액 : 1,200,000원 - 내용년수 : 10년
- 상각방법 : 내용연수 동안 정액상각
- 상각금액 : $1,200,000 \text{원} \div 10 \text{년} \times (9 \text{개월} \div 12 \text{개월}) = 90,000 \text{원}$

(차변) 일반관리비 / 무형자산상각비	90,000	
(대변) 무형자산 / 지식재산권		90,000

(3) 과제별 및 지원기관별로 수입 및 지출을 계산하여 선수수익으로 대체한다.¹²⁾

① 맛나식품 : 위탁교육계약

- 수입 = 10,000,000원(거래1)
- 지출 = 8,000,000원(거래2) + 1,000,000원(거래1, 간접비) = 9,000,000원
- 진행률 = 9,000,000원 / 10,000,000원 = 90%
- 수익인식액 = 10,000,000원 × 90% = 9,000,000원
- 선수수익금액 = 10,000,000원 - 9,000,000원 = 1,000,000원

(차변) 산학협력수익 / 교육운영수익	1,000,000	
	(대변) 유동부채 / 선수수익	1,000,000

② 맛나식품 : 기타산학협력계약

- 수입 = 10,000,000원(거래3)
- 지출 = 8,181,818원(거래4) + 1,000,000원(거래3, 간접비) = 9,181,818원¹³⁾
- 진행률 = 9,181,818원 / 10,000,000원 = 91.8%
- 수익인식액 = 10,000,000원 × 91.8% = 9,181,818원
- 선수수익금액 = 10,000,000원 - 9,181,818원 = 818,182원

(차변) 산학협력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	818,182	
	(대변) 유동부채 / 선수수익	818,182

20×2. 03. 06에 청구한 연구비 잔금은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선수수익으로 대체한다.

(차변) 산학협력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	9,000,000	
간접비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	1,000,000	
	(대변) 유동부채 / 선수수익	10,000,000

12) 본 사례에서는 연구간접비는 간접비관리통장으로 이체시, 유형자산(기계기구)은 취득시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선수수익을 계산하는 간편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간접비수익은 현금주의와 유사하게 이체시 전액 수익으로 인식되며(기말 선수수익 대체금액 없음), 선수수익은 전액 연구수익(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에서 차감된다. 선수수익 인식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4장제2절 9. 운영수익의 인식기준을 참조한다.

13)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과제의 경우 비용발생시 현금지출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나 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과제 비용계상 및 진행률 계산시에는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입 = 30,000,000원(= 35,000,000원 - 5,000,000원)(거래7, 11)
- 지출 = 20,000,000원(거래8, 9) + 3,500,000원(거래7, 간접비) = 23,500,000원
- 진행률 = 23,500,000원 / 30,000,000원 = 78.3%
- 수익인식액 = 30,000,000원 × 78.3% = 23,500,000원
- 선수수익금액 = 30,000,000원 - 23,500,000원 = 6,500,000원

(차변) 지원금수익 / 정부연구수익	6,500,000	
(대변) 유동부채 / 선수수익		6,500,000

④ (주)불안

20×2. 07. 17에 청구한 연구비가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선수수익으로 대체해야 한다.

(차변) 산학협력연구수익 / 산업체연구수익	4,500,000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500,000	
(대변) 유동부채 / 선수수익		5,000,000

⑤ ○○통신(주)

- 수입 = 2,500,000원(거래20)
- 지출 = 500,000원(거래29) + 250,000원(거래20, 간접비) = 750,000원
- 진행률 = 750,000원 / 2,500,000원 = 30%
- 수익인식액 = 2,500,000원 × 30% = 750,000원
- 선수수익 = 2,500,000원 - 750,000원 = 1,750,000원

(차변)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연구수익	1,750,000	
(대변) 유동부채 / 선수수익		1,750,000

⑥ (주)○○테크

- 수입 = 1,500,000원(거래20)
- 지출 = 150,000원(거래31) + 290,000원(거래37, 기계기구 취득액)
+ 150,000원(거래20, 간접비) = 590,000원
- 진행률 = 590,000원 / 1,500,000원 = 39.3%

- 수익인식액 = 1,500,000원 × 39.3% = 590,000원
- 선수수익 = 1,500,000원 - 590,000원 = 910,000원

(차변)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연구수익	910,000
(대변) 유동부채 / 선수수익	910,000

※ 상기 진행률은 연구간접비는 간접비관리통장으로 이체시, 유형자산(기계기구)은 취득 시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간편법으로, 정확한 진행률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접비 및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야 하나,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간편법을 사용한다.

- 총누적발생원가 = 150,000원(연구활동비) + 4,833(감가상각비) = 154,833원
- 총예정원가 = 1,500,000원 - 150,000(간접비) - 265,835원(연구용역기간이후의 감가상각비, 과제기간 20X2.7.1~20X3.6.30) = 1,084,165원
- 진행률 = 154,833원 / 1,084,165원 = 14.3%
- 수익인식액 = (1,350,000원 + 150,000원) × 14.3%
= 214,500원(193,050원(산학협력연구수익) + 21,450원(간접비수익))
- 선수수익 = 1,500,000원 - 214,500원 = 1,285,500원

⑦ ○○특수화학

- 수입 = 19,800,000원(거래21)
- 지출 = 3,000,000원(거래27, 28) + 1,800,000원(거래21) = 4,800,000원
- 진행률 = 4,800,000원 / 19,800,000원 = 24.2%
- 수익인식액 = 19,800,000원 × 24.2% = 4,800,000원
- 선수수익 = 19,800,000원 - 4,800,000원 = 15,000,000원

(차변)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연구수익	15,000,000
(대변) 유동부채 / 선수수익	15,000,000

⑧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수입 = 8,500,000원(거래23)
- 지출 = 5,100,000원(거래32, 34) + 850,000원(거래23, 간접비) = 5,950,000원
- 진행률 = 5,950,000원 / 8,500,000원 = 70%

- 수익인식액 = 8,500,000원 × 70% = 5,950,000원
- 선수수익 = 8,500,000원 - 5,950,000원 = 2,550,000원

(차변) 지원금수익 / 정부연구수익	2,550,000	
(대변) 유동부채 / 선수수익		2,550,000

⑨ 지식경제부

- 수입 = 95,600,000원(거래25)
- 지출 = 20,400,000원(거래33, 35) + 35,000,000원(거래37, 기계기구 취득액)
+ 9,560,000원(거래25) = 64,960,000원
- 진행률 = 64,960,000원 / 95,600,000원 = 67.9%
- 수익인식액 = 95,600,000원 × 67.9% = 64,960,000원
- 선수수익 = 95,600,000원 - 64,960,000원 = 30,640,000원

(차변) 지원금수익 / 정부연구수익	30,640,000	
(대변) 유동부채 / 선수수익		30,640,000

※ 상기 진행률은 연구간접비는 간접비관리통장으로 이체시, 유형자산(기계기구)은 취득 시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간편법으로, 정확한 진행률 및 선수수익은 아래와 같이 간접비 및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총누적발생원가 = 20,400,000원(인건비, 연구활동비) + 583,333(감가상각비) = 20,983,333원
- 총예정원가 = 95,600,000원 - 9,560,000(간접비) - 31,500,002원(연구용역기간이후의 감가상각비, 과제기간 20X2.8.1~20X3.7.31) = 54,539,998원
- 진행률 = 20,983,333원 / 54,539,998원 = 38.5%
- 수익인식액 = (86,040,000원 + 9,560,000원) × 38.5%
= 36,806,000원(33,125,400원(정부연구수익) + 3,680,600원(간접비수익))
- 선수수익 = 95,600,000원 - 36,806,000원 = 58,794,000원

(4) 대손충당금 설정

20×2. 07. 17에 (주)불안에 대하여 연구비 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입금을 미루고 있어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차변) 일반관리비 / 대손상각비	5,000,000	
	(대변) 대손충당금	5,000,000

(5) 대손 확정

20×2. 12. 28 (주)맛나식품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신고를 하다. 따라서 20×2. 04. 01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연구비 잔금 11,000,000원에 대해 대손을 확정하였다.

(차변) 대손충당금	11,000,000	
	(대변) 당좌자산 / 미수금	11,000,000

(6) 미수수익 설정

20×2. 05. 01에 가입한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였다.

- 정기예금 금액 : 10,000,000원, 2. 연이자율 : 5%
- 미수수익대상기간 : 20×2. 05. 01~20×3. 02. 28(304일)
- 미수수익 계산 : $10,000,000\text{원} \times 5\% \times 304\text{일}/365\text{일} \approx 416,438\text{원}$

(차변) 당좌자산 / 미수수익	416,438	
	(대변) 운영외수익 / 이자수익	416,438

(7) 유동성 대체

20×3. 02. 28 기준으로 20×2. 05. 01에 가입한 정기예금의 만기일(20×3. 10. 31)이 1년 이내이므로 장기금융상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유동성대체하였다.

(차변) 당좌자산 / 단기금융상품	10,000,000	
	(대변)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10,000,000

5.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상태표
20×3년 2월 28일 현재

(자 산)

(단위 : 원)

관	항	목	당 기	전 기	증 감
유 동 자 산			101,082,620	13,000,000	88,082,620
	당	좌 자 산	101,082,620	13,000,000	88,082,620
		현금및현금성자산	89,723,682	13,000,000	76,723,682
		단 기 금 용 상 품	10,000,000	-	10,000,000
		미 수 금	5,000,000	-	5,000,000
		(대 손 충 당 금)	(5,000,000)	-	(5,000,000)
		미 수 수 익	416,438	-	416,438
		선 급 법 인 세	942,500	-	942,500
비 유 동 자 산			35,811,834	-	35,811,834
	유	형 자 산	34,701,834	-	34,701,834
		기 계 기 구	35,290,000	-	35,290,000
		(기계기구감가상각누계액)	(588,166)	-	(588,166)
	무	형 자 산	1,110,000	-	1,110,000
		지 식 재 산 권	1,110,000	-	1,110,000
자 산 총 계			136,894,454	13,000,000	123,894,454

(부채 및 기본금)

관	항	목	당 기	전 기	증 감
유 동 부 채			74,256,182	-	74,256,182
	유	동 부 채	74,256,182	-	74,256,182
		제 세 예 수 금	88,000	-	88,000
		선 수 수 익	74,168,182	-	74,168,182
적 립 금			6,000,000	-	6,000,000
		고 유 목 적 사 업 준 비 금	6,000,000	-	6,000,000
		고 유 목 적 사 업 준 비 금	6,000,000	-	6,000,000
운 영 차 익			45,928,864	13,000,000	32,928,864
		처 분 전 운 영 차 익	56,638,272	13,000,000	43,638,272
		전 기 이 월 운 영 차 익	7,000,000	-	7,000,000
		당 기 운 영 차 익	49,638,272	13,000,000	36,638,272
부 채 및 기 본 금 총 계			136,894,454	13,000,000	123,894,454

운 영 계 산 서

20x2년 3월 1일부터 20x3년 2월 28일까지

(운영수익)

(단위 : 원)

관	항	목	당 기
산 학 협 력 수 익			31,321,818
	연	구 수 익	3,940,000
		산 업 체 연 구 수 익	3,940,000
	교 육	운 영 수 익	8,000,000
		교 육 운 영 수 익	8,000,000
	지 식	재 산 권 수 익	10,000,000
		지 식 재 산 권 실 시 수 익	10,000,000
	설 비	자 산 사 용 료 수 익	1,200,000
		설 비 자 산 사 용 료 수 익	1,200,000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8,181,818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8,181,818
지 원 금 수 익			80,500,000
	연	구 수 익	80,500,000
		정 부 연 구 수 익	80,500,000
간 접 비 수 익			18,110,000
		산 학 협 력 수 익	4,200,000
		산 학 협 력 연 구 수 익	2,200,000
		교 육 운 영 수 익	1,000,000
		기 타 산 학 협 력 수 익	1,000,000
	지	원 금 수 익	13,910,000
		연 구 수 익	13,910,000
운 영 외 수 익			6,966,438
	운	영 외 수 익	6,966,438
		이 자 수 익	6,966,438
운 영 수 익 총 계			136,898,256

(운영비용)

관	항	목	당 기
산 학 협 력 비			24,831,818
		산 학 협 력 연 구 비	3,650,000
		인 건 비	2,000,000
		연 구 활 동 비	650,000
		연 구 수 당	1,000,000
		교 육 운 영 비	8,000,000
		실 험 실 습 비	8,000,000
		지 식 재 산 권 비 용	5,000,000
		산 학 협 력 보 상 금	5,000,000
		기 타 산 학 협 력 비	8,181,818
		기 타 산 학 협 력 비	8,181,818
지 원 금 사 업 비			45,500,000
		연 구 비	45,500,000
		인 건 비	12,500,000
		연 구 장 비 · 재 료 비	9,200,000
		연 구 활 동 비	23,800,000
간 접 비 사 업 비			200,000
		연 구 지 원 비	200,000
		기 관 공 통 지 원 경 비	200,000
일 반 관 리 비			16,678,166
		일 반 관 리 비	16,678,166
		감 가 상 각 비	588,166
		무 형 자 산 상 각 비	90,000
		대 손 상 각 비	16,000,000
운 영 외 비 용			50,000
		운 영 외 비 용	50,000
		기 타 운 영 외 비 용	50,000
운 영 비 용 합 계			87,259,984
당 기 운 영 차 익			49,638,272
운 영 비 용 총 계			136,898,256

제7장

산학협력단 예산 실무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제7장 산학협력단 예산 실무

대학은 등록금이 주 수입원이므로 수입규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편성된 지출예산 역시 계획에 의한 적절한 분배가 가능하다. 반면에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교육운영비 등이 주 수입원이고 이는 정부정책이나 경제상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규모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수입을 기반으로 편성된 지출예산도 신뢰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산학협력단은 2013회계연도부터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1] 대학과 산학협력단 예산의 차이점

구분	대학	산학협력단
수입	• 등록금이 주수입원 : 예측이 가능함 • 기부금 예산 : 신뢰성이 떨어짐	• 연구비가 주수입원 : 정확한 예측이 힘들어 예산의 신뢰성이 떨어짐
지출	• 수입 예측에 의한 적절한 배분 • 외부기관 통제 없음	• 수입예산 만큼 지출예산도 불확실함 • 지원기관에 제출한 예산과 산학협력단 예산의 이중통제를 받음

제1절

예산의 편성

1. 예산의 편성일정과 제출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장 예산”에 규정된 예산편성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7-2] 산학협력단 예산편성일정과 제출기일

구 분	기 관	기 한	비 고
예산편성지침 시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회계연도개시 70일 전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산편성요령 결정	산학협력단장	회계연도개시 2개월 전	
예산안 제출	산학협력단장	회계연도개시 40일 전	
예산안 심의·확정	학교의 장	회계연도개시 30일 전	
예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장	회계연도개시 5일 전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
추경·정정예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장	예산 확정 후 15일 이내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

2.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란 모든 거래를 예산에 나타내야 하며 상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수입과 지출을 상쇄하여 그 차액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규칙 제5조 (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준예산

준예산은 산학협력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기일 이내에 예산을 편성·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처리규정이다. 즉, 예산편성이 지연되는 때에는 우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규칙 제7조 (준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학협력단회계의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계약에 의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4. 변동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편성 후 지출 과정에서 특정 비용 항목에 대한 예산 잔액이 지출 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작아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예산전용, 변동예산 편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해 지출할 수 있다.

(1) 예산전용

특정 비용계정(목)의 예산 잔액이 부족할 경우 동일 '항'에 속하는 다른 '목', 또는 동일 '관'에 속하는 다른 '항'의 '목'에 해당하는 비용계정의 잔액을 끌어 올 경우를 말한다. 만약 다른 '관'에 속하는 비용계정의 잔액을 끌어 올 경우에는 변동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동예산

위에서 설명한 예산전용에 의해 부족예산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즉, 다른 '관'의 예산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추경은 회계연도 말에 1회 실시하며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산학협력단은 정상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의 수입이 주된 수입이어서, 수입·지출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회계연도부터는 추경 전이라도 변동예산 편성을 통해 회계연도 중에 원활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칙에서 규정하였다. 이러한 변동예산은 횡수의 제한 없이 편성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 말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에는 변동예산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예산편성요령)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3)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관’간의 예산을 변경하는 절차로, 실무적으로는 회계연도 말 본예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1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기중 예산 전용과 변동예산편성액, 추경 시 조정할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연구비가 입금되고 지출될 비용계정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해당 계정의 연간예산 잔액이 부족하고 동일 ‘관’내에서 충당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text{추경금액} = \text{본예산금액} \pm \text{기중예산전용금액} \pm \text{변동예산액} \pm \text{추경 시 조정할 금액}$$

- 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내에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 예산의 내용

산학협력단이 편성하는 현금예산서 및 추가경정현금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규칙 제9조를 따른다.

- 규칙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현금예산으로 한다.
-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현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금예산서(추가경정현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현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현금예산서 작성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 시에는 예·결산 자문기구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정관에서 정한 예·결산자문기구 회의록 사본으로 한다.

6. 예산 편성 사례

(1) 2013회계연도 현금예산서 작성 순서

① 2012회계연도 현금예산서 작성

개정된 예산서는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직전 회계연도 예산서는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2012회계연도 추정자금계산서나 2011회계연도 자금계산서를 개정된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하여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 가) 2012회계연도 추정자금계산서(또는 2011회계연도 자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수익, 비용 금액을 변경된 계정으로 재분류한다.
- 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관련 수익 또는 비용의 증감에 미친 영향을 표시한다.
- 다) 현금예산서를 기준으로 변경된 수익, 비용 금액을 입력하고(①) 자산·부채의 변동이 관련 수익 또는 비용의 증감에 미친 금액을 표시하여(②) 최종 금액(③=①±②)을 구한다.

사례 7-1...○



1. 한국대학산학협력단은 2012회계연도 추정자금계산서를 개정된 현금예산서에 맞게 수익, 비용 계정을 재분류하였다.

과 목 (관, 항, 목)		2012회계연도 추정자금계산서	개정된 현금예산서에 맞게 분류	
			계정과목	금액
I. 운영활동으로인한자금흐름		2,668,016,526		
1. 운영활동으로인한자금유입액		41,914,292,994		
1) 산학협력연구수익자금유입액		5,546,856,880		
(1) 산학협력연구수익		4,933,533,666	• 정부연구수익	1,200,000,000
			• 산업체연구수익	3,233,533,666
			• 연구간접비수익(약10%)	500,000,000
(2) 교육운영수익		155,075,000	• 교육운영수익	140,075,000
			• 교육간접비수익(약10%)	15,000,000
(3) 지적재산운영·이전수익		202,174,547	• 지식재산권실시수익	100,000,000
			• 지식재산권양도수익	102,174,547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256,073,667		
가. 설비자산사용료수익		39,157,857		
나. 임대료수익		216,915,810		
2) 지원금수익자금유입액		36,140,770,771		
(1) 지원금수익자금유입액		36,140,770,771		
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금		8,948,090,127	• 정부연구수익	24,800,000,000
나. 기타국고지원금		22,388,363,388	• 정부연구간접비수익(약20%)	6,200,000,000
다. 지자체지원금		4,804,317,256	• 산업체연구수익	80,000,000
			• 산업체연구간접비수익(약20%)	20,000,000
			• 교육운영수익	3,760,000,000
			• 교육운영간접비수익(약20%)	940,000,000
			• 기타지원금수익	340,770,771
3) 전입및기부금수익자금유입액		37,200,000		
(1) 기부금수익		37,200,000		
가. 일반기부금		35,200,000		
나. 지정기부금		2,000,000		
4) 운영외수익자금유입액		189,465,343		
가. 이자수익		164,234,440		
나. 기타운영외수익		25,230,903		
2. 운영활동으로인한자금유출액		39,325,993,313		
1) 산학협력비자금유출액		5,385,293,146		
(1) 산학협력연구비		4,378,171,029		
가. 인건비		2,401,820,009	• 인건비	1,200,000,000
			• 학생인건비	1,201,820,009
나. 연구제 경비		1,976,351,020	• 연구장비·재료비	300,000,000
			• 연구활동비	500,000,000
			• 연구수당	800,000,000

			• 위탁연구개발비	376,351,020
(2)	교육운영비	57,604,707		
가.	인건비	28,860,000		
나.	교육과정개발비	6,792,900		
다.	기타교육운영비	21,951,807		
(3)	지식재산권운영·이전비	856,240,700		
가.	지식재산권운영·이전비	190,166,367	•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50,000,000
			•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40,166,367
나.	산학협력보상금	666,074,333		
(4)	기타산학협력비	93,276,710		
2)	지원금사업비자금유출액	32,341,017,632		
(1)	연구비	29,539,340,359		
가.	인건비	14,604,188,431	• 인건비	8,000,000,000
			• 학생인건비	6,604,188,431
나.	연구제경비	14,935,151,928	• 연구장비·재료비	9,000,000,000
			• 연구활동비	3,000,000,000
			• 연구수당	1,500,000,000
			• 위탁연구개발비	1,435,151,928
(2)	교육운영비	2,627,651,317		
가.	인건비	226,780,000		
나.	교육과정개발비	53,700,000		
다.	장학금	2,107,459,200		
라.	실험실습비	43,107,200		
마.	기타교육운영비	196,604,917		
(3)	기타지원금사업비	174,025,956		
3)	일반관리비 자금 유출액	1,524,295,719		
(1)	일반관리비	1,524,295,719		
가.	교직원보수	288,516,165	• 인력지원비 中 인건비	250,000,000
			• 일반관리비 中 인건비	38,516,165
나.	퇴직급여	5,336,940	• 인력지원비 中 인건비	3,000,000
			• 일반관리비 中 인건비	2,336,940
다.	복리후생비	46,068,364	• 기관공통지원경비	46,068,364
라.	연구진흥비	100,000,000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00,000,000
마.	여비교통비	11,592,270	• 기관공통지원경비	11,592,270
바.	교육훈련비	15,805,400	• 연구실 안전관리비	8,000,000
			• 연구보안관리비	5,000,000
			• 기관공통지원경비	2,805,400
사.	소모품비	18,201,697	• 기관공통지원경비	15,000,000
			• 일반제경비	3,201,697
아.	업무추진비	30,564,304	• 기관공통지원경비	25,000,000
			• 일반제경비	5,564,304
자.	회의비	20,340,472	• 기관공통지원경비	20,340,472
차.	지급수수료	2,563,900	• 대학연구활동지원금	2,000,000
			• 기관공통지원경비	563,900
카.	세금과공과	6,292,412	• 기관공통지원경비	6,292,412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타.	출판인쇄비	5,154,082	• 연구윤리활동비	3,000,000
			• 기관공통지원경비	2,154,082
파.	홍보비	6,745,455	• 과학문화활동비	5,000,000
			• 기관공통지원경비	1,745,455
하.	학교회계전출금	892,767,000	• 학교회계전출금	892,767,000
가	기타관리운영경비	74,347,258	• 일반제경비	74,347,258
4)	운영외비용자금 유출액	75,386,816,		
라.	기타운영외비용	75,386,816		
3.	운영활동인한자산·부채의변동	79,716,845		
1)	유 동 자 산 의 변 동	52,747,754		
(1)	미수수익유입액	70,247,820	• 이자수익가산	70,247,820
(2)	선급금유입(유출)액	(5,290,000)	• 관련취득자산(지식재산권 취득)가산	5,290,000
(3)	선급법인세유입(유출)액	(10,875,690)	• 이자수익 차감	10,875,690
(4)	부가세대급금유입(유출)액	(1,334,376)	• 관련비용(지식재산실사·양도)가산	1,334,376
2)	유 동 부 채 의 변 동	26,969,091		
(1)	미지급금유출액	(207,846,170)	• 관련 취득자산(기계기구 취득)가산	207,846,170
(2)	예수금유입(유출)액	359,940,079	• 관련수익(기타운영외수익)가산	359,940,079
(3)	제세예수금유입(유출)액	5,748,064	• 관련비용(산학연구인건비)차감	2,200,000
			• 관련비용(지원금연구인건비)차감	3,548,064
(4)	부가세예수금유입(유출)액	4,190,924	• 관련수익(지식재산양도수익)가산	4,190,924
(5)	미지급비용유출액	2,565,400	• 관련비용(산학연구장비·재료비)차감	2,000,000
			• 관련비용(지원금 교육용 양도)차감	565,400
(6)	선수수익유입(유출)액	(137,629,206)	• 관련수익(산학 산업체 연구수익)차감	50,000,000
			• 관련수익 (지원금 정부 연구수익)차감	87,629,206
Ⅱ.	투자활동으로인한자금흐름	(3,456,039,303)		
1.	투자활동으로인한자금유입액	363,100,000		
1)	유형자산매각대	2,220,000		
(1)	기계기구매각대	2,220,000		
2)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60,880,000		
(1)	연구기금인출수입	360,880,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자금유출액	3,819,139,303		
1)	유형자산취득지출	3,251,599,303		
(1)	건물취득	360,756,200		
(2)	기계기구취득	2,629,303,485		
(3)	집기비품취득	252,409,618		
(4)	차량운반구취득	9,130,000		
2)	무형자산취득지출	67,540,000		
(1)	지식재산권취득	67,540,000		
3)	기타비유동자산지출	500,000,000		
(1)	기타기금적립지출	50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인한자금흐름	30,900,000		
1.	재무활동으로인한자금유입액	67,150,000		

1) 부채의차입	67,150,000		
(1) 임대보증금의증가액	67,150,000		
2. 재무활동으로인한자금유출액	36,250,000		
1) 부채의상환	36,250,000		
(1) 임대보증금의감소액	36,250,000		
Ⅳ. 자금의증감 (Ⅰ+Ⅱ+Ⅲ)	(757,122,777)		
Ⅴ. 기초의자금	14,483,061,908		
Ⅵ. 기말의자금	13,725,939,131		

2. 위 자금계산서에서 재분류한 수익, 비용 금액을 현금예산서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관련 수익 또는 비용의 증감에 미친 영향을 표시한 후 가감하여 현금예산서 금액을 구한다.

과목		2012회계연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변동		2012회계연도	
관	항	목	추정자금계산서	가산	차감	현금예산서
I.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 연구수익				
		가. 정부연구수익	1,200,000,000			1,200,000,000
		나. 산업체연구수익	3,433,533,666		50,000,000	3,183,533,666
		(2) 교육운영수익				
		가. 교육운영수익	140,075,000			140,075,000
		(3) 지식재산권수익				
		가. 지식재산권실시수익	100,000,000			100,000,000
		나. 지식재산권양도수익	102,174,547	4,190,924		106,365,471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가. 설비자산사용료수익	39,157,857			39,157,857
		나. 임대료수익	216,915,810			216,915,810
		(5) 기타산학협력수익				
		가. 기타산학협력수익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1) 연구수익				
		가. 정부연구수익	24,800,000,000		87,629,206	24,712,370,794
		나. 산업체연구수익	80,000,000			80,000,000
		(2) 교육운영수익				
		가. 교육운영수익	3,760,000,000			3,760,000,000
		(3) 기타지원금수익				
		가. 기타지원금수익	340,770,771			340,770,771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				
		가. 산학협력연구수익	500,000,000			500,000,000
		나. 교육운영수익	15,000,000			15,000,000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과목		2012회계연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변동		2012회계연도
관	항	추정자금계산서	가산	차감	현금예산서
	다.기타산학협력수익				
	(2)지원금수익				
	가.연구수익	6,220,000,000			6,220,000,000
	나.교육운영수익	940,000,000			940,000,000
	다.기타지원금수익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1)전입금수익				
	가.학교법인전입금				
	나.학교회계전입금				
	다.학교기업전입금				
	라.기타전입금				
	(2)기부금수익				
	가.일반기부금	35,200,000			35,200,000
	나.지정기부금	2,000,000			2,000,000
	다.현물기부금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1)운영외수익				
	가.이자수익	164,234,440	70,247,820	10,875,690	223,606,570
	나.매당금수익				
	다.전기오류수정이익				
	라.기타운영외수익	25,230,903	359,940,079		385,170,982,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투자자산수입				
	(1)장기금융상품인출				
	(2)장기투자금융자산매각대				
	(3)출자금회수				
	(4)기타투자자산수입				
	2)유형자산매각대				
	(1)토지매각대				
	(2)건물매각대				
	(3)구축물매각대				
	(4)기계기구매각대	2,220,000			2,220,000
	(5)집기비품매각대				
	(6)차량운반구매각대				
	(7)기타유형자산매각대				
	3)무형자산매각대				
	(1)지식재산권매각대				
	(2)개발비매각대				
	(3)기타무형자산매각대				
	4)기타비유동자산수입				
	(1)연구기금인출수입	360,880,000			360,880,000
	(2)건축기금인출수입				

과목		2012회계연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변동		2012회계연도	
관	항	목	추정자금계산서	가산	차감	현금예산서
		(3)장학기금인출수입				
		(4)기타기금인출수입				
		(5)보증금수입				
		(6)기타비유동자산수입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부채차입				
		(1)임대보증금증가	67,150,000			67,150,000
		(2)기타비유동부채증가				
		2)기본금조달				
		(1)출연기본금증가				
Ⅱ. 현금유출액			43,181,382,616			43,387,539,698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1)산학협력연구비				
		가. 인건비	1,200,000,000		2,200,000	1,197,800,000
		나. 학생인건비	1,201,820,009			1,201,820,009
		다. 연구장비·재료비	300,000,000		2,000,000	298,000,000
		라. 연구활동비	500,000,000			500,000,000
		마. 연구수당	800,000,000			800,000,000
		바. 위탁연구개발비	376,351,020			376,351,020
		(2)교육운영비				
		가. 인건비	28,860,000			28,860,000
		나. 교육과정개발비	6,792,900			6,792,900
		다. 장학금				
		라. 실험실습비				
		마. 기타교육운영비	21,951,807			21,951,807
		(3)지식재산권비용				
		가.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50,000,000	1,334,376		51,334,376
		나. 산학협력보상금	666,074,333			666,074,333
		(4)학교시설사용료				
		가. 학교시설사용료				
		(5)기타산학협력비				
		가. 기타산학협력비	93,276,710			93,276,710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연구비				
		가. 인건비	8,000,000,000		3,548,064	7,996,451,936
		나. 학생인건비	6,604,188,431			6,604,188,431
		다. 연구장비·재료비	9,000,000,000			9,000,000,000
		라. 연구활동비	3,000,000,000			3,000,000,000
		마. 연구수당	1,500,000,000			1,500,000,000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과목		2012회계연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변동		2012회계연도
관	항	추정자금계산서	가산	차감	현금예산서
	바. 위탁연구개발비	1,435,151,928			1,435,151,928
	(2) 교육운영비				
	가. 인건비	226,780,000		565,400	226,214,600
	나. 교육과정개발비	53,700,000			53,700,000
	다. 장학금	2,107,459,200			2,107,459,200
	라. 실험실습비	43,107,200			43,107,200
	마. 기타교육운영비	196,604,917			196,604,917
	(3) 기타지원금사업비				
	가. 기타지원금사업비	174,025,956			174,025,956
	3) 간접비사업비 현금유출액				
	(1) 인력지원비				
	가. 인건비	253,000,000			253,000,000
	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100,000,000			100,000,000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 지원 경비	131,562,355			131,562,355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8,000,000			8,000,000
	라. 연구보안관리비	5,000,000			5,000,000
	마. 연구윤리활동비	3,000,000			3,000,000
	바. 연구개발준비금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2,000,000			2,000,000
	(3) 성과활용 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5,000,000			5,000,000
	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40,166,367			140,166,367
	(4) 기타지원비				
	가. 기타지원비				
	4) 일반관리비 현금유출액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40,853,105			40,853,105
	나. 일반제 경비	83,113,259			83,113,259
	5) 운영외비용 현금유출액				
	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나. 기타 운영외비용	75,386,816			75,386,816
	6) 학교회계 전출금 현금유출액				
	가. 학교회계 전출금	892,767,000			892,767,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 투자자산지출				
	(1) 장기금융상품증가				
	(2) 장기투자금융자산취득지출				
	(3) 출자금투자지출				
	(4) 기타투자자산투자지출				

과목		2012회계연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변동		2012회계연도
관	항	추정자금계산서	가산	차감	현금예산서
	2)유형자산취득지출				
	(1)토지취득				
	(2)건물취득	360,756,200			360,756,200
	(3)구축물취득				0
	(4)기계기구취득	2,629,303,485	207,846,170		2,837,149,655
	(5)집기비품취득	252,409,618			252,409,618
	(6)차량운반구취득	9,130,000			9,130,000
	(7)건설중인자산취득				
	(8)기타유형자산취득				
	3)무형자산취득지출				
	(1)지식재산권취득	67,540,000	5,290,000		72,830,000
	(2)개발비취득				
	(3)기타무형자산취득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1)연구기금적립지출				
	(2)건축기금적립지출				
	(3)장학기금적립지출				
	(4)기타기금적립지출	500,000,000			500,000,000
	(5)보증금지출				
	(6)기타비유동자산지출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상환				
	(1)임대보증금감소	36,250,000			36,250,000
	(2)기타비유동부채감소				
	2)기본금반환				
	(1)출연기본금감소				
Ⅲ.현금의증감					(757,122,777)
Ⅳ.기초의현금					14,483,061,908
Ⅴ.기말의현금					13,725,939,131

② 2013회계연도 사업 금액 반영

가. 2012회계연도 현금예산서를 기준으로 2013회계연도에 예산을 일정비율로 가감한다.

나. 2012연도에는 발생하였으나 2013연도에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나 그 반대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금액을 가감한다.

(2) 회계연도 중 예산통제 계정의 범위 설정

현금예산서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기준으로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활동은 수익 및 비용계정, 투자활동은 자산계정, 재무활동은 부채 및 자본금 계정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와 운영예산서에서 관, 항, 목은 회계 계정과목으로 구성된 반면 현금예산서의 관, 항, 목 회계 계정과목이 아니라 계정과목에 대한 합계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금예산서 양식을 그대로 기중 예산 통제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계정과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3] 계정과목에 따른 예산 통제 구분

구분	기중예산통제 여부	설명
수익	×	예산통제하지 않음
비용	○	예산통제함. 초과시 변동예산 또는 추정 편성함
자산	△	유동자산 일부(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금융자산, 선급금,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 자산취득에 대해서만 예산 통제함. 자산 구입(또는투자) 규모 통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부채	×	예산통제하지 않음
자본	×	예산통제하지 않음

(3) 2014회계연도 이후 현금예산서 작성 방법

2013회계연도 현금예산서나 추정현금흐름표를 기준으로 2014회계연도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폐지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금액을 반영하여 2014회계연도 현금예산서를 작성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국가 지원금의 집행

제14조(국가 지원금의 집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보조금의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①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산학협력 재무성과지표

1. 운영건전성
2. 연구·산학협력 수익성
3. 연구·산학협력 성과성
4. 공용장비 활용성
5. 교육운영 기여도

제8장 산학협력 재무성과지표

산학협력단은 2004년 설립된 이후 대학 내에서 독립법인에 걸맞게 위상을 찾아 가고 있다. 초기 산학협력단의 중심 업무가 연구비 및 사업비 관리였다면 지금은 기술 이전, 학교기업 관리, 창업보육센터 관리 등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회계 정보는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결과 및 대학 재정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정보로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산학협력단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정지표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산학협력 관련 정책 수립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재무제표 정보를 활용한 산학협력 재무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산학협력단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1절

운영건전성

운영건전성 지표는 산학협력단 운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당기운영차익비율, 인건비구성비율, 간접비수익율, 기금적립률로 구성된다.

1. 당기운영차익비율

(1) 정의 : 당기운영차익이 전체 운영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산출식 : $\text{당기운영차익} / \text{운영수익총계} \times 100$

(3) 해석

당기운영차익비율은 운영수지분석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당기에서 차기로 이월하는 금액 또는 자산적지출이 많다는 의미이다. 산학협력단의 당기운영차익은 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연구비 및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전액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잔액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현금지출액 중 자산적지출은 당기에 비용으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당기운영차익으로 보고된다. 산학협력단에서 차기로 이월할 수 있는 재원은 간접비수익과 지식재산권수익 등이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으면 산학협력단의 운영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 인건비구성비율

(1) 정의 : 운영비용 합계에서 산학협력단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2) 산출식 : $\frac{\text{산학협력단 인건비}(\text{간접비사업비의 인력지원비 내 인건비} + \text{일반관리비 인건비})}{\text{운영비용합계}} \times 100$

(3) 해석

인건비구성비율은 운영비용 합계에서 산학협력단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다면 경직적 성격의 인건비가 산학협력단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당해 산학협력단 자금운영의 재량은 적어지나, 연구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인력을 많이 고용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낮다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인력을 적게 고용한다는 의미이다. 어느 수준의 인건비구성비율이 적절한지는 각 산학협력단마다 다를 수 있다.

3. 간접비수익율

(1) 정의 : 연구 및 산학협력사업을 통한 간접비수익 비율

(2) 산출식 : $\frac{\text{간접비수익}}{\text{운영수익총계}} \times 100$

(3) 해석

간접비수익율은 연구 및 산학협력사업을 통한 간접비수익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다면 전체 운영수익에서 간접비 수익이 차지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산학협력단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 재원이 간접비이기 때문에 간접비수익율이 높으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및 산학협력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4. 기금적립률

(1) 정의 : 산학협력단의 자산 중 미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해 놓은 비율

(2) 산출식 : $\text{기타비유동자산의 기금(연구기금+건축기금+장학기금+기타기금)} / \text{자산총계} \times 100$

(3) 해석

기금적립률은 산학협력단의 자산 중 미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해놓은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다면 미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많다는 의미이다.

제2절

연구·산학협력 수익성

연구·산학협력 수익성 지표는 산학협력단의 연구 및 산학협력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연구수익비율, 정부연구비수익비율, 산업체연구비수익비율로 구성된다.

1. 연구수익비율

(1) 정의 :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총계에서 연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2) 산출식 : $(\text{산학협력연구수익} + \text{지원금연구수익}) / \text{운영수익총계} \times 100$

(3) 해석

연구수익비율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총계에서 연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대학의 연구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와 그밖의 활동간의 비중을 알 수 있다.

2. 정부연구비수익비율

(1) 정의 : 산학협력단의 연구수익중에서 정부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

- (2) 산출식 : $\frac{\text{정부연구비수익}(\text{산학협력연구수익 중 정부지급금} + \text{지원금연구수익})}{(\text{산학협력연구수익} + \text{지원금연구수익})} \times 100$

(3) 해석

정부연구비수익비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수익중에서 정부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다면 연구비 수익 중 정부연구비가 높다는 것으로 연구비의 정부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산업체연구비수익비율

- (1) 정의 : 산학협력단의 연구수익중에서 산업체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

- (2) 산출식 : $\frac{\text{산업체연구비수익}(\text{산학협력연구수익 중 산업체지급금})}{(\text{산학협력연구수익} + \text{지원금연구수익})} \times 100$

(3) 해석

산업체연구비수익비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수익 중에서 산업체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다면 연구비 수익 중 산업체측 연구비가 높다는 것으로 대학의 연구가 기업 친화적임을 의미한다.

제3절

연구·산학협력 성과성

연구·산학협력 성과성 지표는 산학협력단의 연구 및 산학협력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식재산권수익율, 지식재산권생산성비율, 창업투자비율로 구성된다.

1. 지식재산권수익율

- (1) 정의 : 산학협력단의 연구수익에 대비한 지식재산권수익 비율

- (2) 산출식 : $\frac{\text{지식재산권수익}}{(\text{산학협력연구수익} + \text{지원금연구수익})} \times 100$

(3) 해석

지식재산권수익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수익에 대비한 지식재산권수익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다면 연구수익에 대비하여 대학의 지식재산창출로 인한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연구비회수율(기술이전수입료/연구비×100)과 유사하나 지식재산권수익이 기술이전수익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비회수율보다는 폭 넓은 개념이다.

2. 지식재산권생산성비율

(1) 정의 :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

(2) 산출식 : $\text{지식재산권수익} / \text{무형자산 지식재산권} \times 100$

(3) 해석

지식재산권생산성비율은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다면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의 생산성은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질적 가치가 높거나,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높아질 수 있다.

3. 창업투자비율

(1) 정의 : 산학협력단이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 학교기업 및 기술지주회사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

(2) 산출식 : $\text{투자자산 중 출자금} / \text{자산총계} \times 100$

(3) 해석

창업투자비율은 산학협력단이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 학교기업 및 기술지주회사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다면 산학협력단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절

공용장비 활용성

공용장비 활용성 지표는 산학협력단의 공용장비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설비자산수익율, 설비자산생산성비율로 구성된다.

1. 설비자산수익율

(1) 정의 : 산학협력단 내 설비 및 자산을 산업체 등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비율

(2) 산출식 : $\text{설비자산사용료수익} / \text{운영수익총계} \times 100$

(3) 해석

설비자산사용료수익율은 산학협력단 내 설비 및 자산을 산업체 등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다면 산학협력단 내 보유 기자재 및 자산에 대한 산업체 등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설비자산생산성비율

(1) 정의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유형자산을 활용하여 설비자산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평가하는 비율

(2) 산출식 : $\text{설비자산사용료수익} / \text{유형자산} \times 100$

(3) 해석

설비자산생산성비율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유형자산을 활용하여 설비자산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평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다면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계기구, 실험실습장비, 건물을 산업체 등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가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절

교육운영 기여도

교육운영 기여도 지표는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의 교육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교육운영비비율과 학교회계전출금비율로 구성된다.

1. 교육운영비비율

- (1) 정의 : 운영비용 중 교육운영비에 사용하는 비율
- (2) 산출식 : $(\text{산학협력비의 교육운영비} + \text{지원금사업비의 교육운영비}) / \text{운영비용합계} \times 100$

(3) 해석

교육운영비비율은 운영비용 중 교육운영비에 사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산학협력단 지출에서 교육운영에 사용하는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회계전출금비율

- (1) 정의 : 산학협력단에서 대학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비율
- (2) 산출식 : $\text{학교회계전출금} / \text{운영비용합계} \times 100$

(3) 해석

학교회계전출금비율은 산학협력단에서 대학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2012.3.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2012.4.2.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변경(안)」, 2012.4.
- 권선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선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2011-014-산학협력, 2011.11.3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2.1.25.
- 김기열·변영선, 비영리법인회계와 세무실무, 삼일회계법인인포마인, 2010.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2.1.
- 예규-법인, 법인46012-1542, 도서 및 회화의 구입비, 부동산 취득비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으로 적용가능 여부, 1998.6.12.
- 예규-부가, 부가가치세과-23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3.11.
- 조성인, OO대 산학협력단 세무조사 사례, 2010.10.
- 한국사학진흥재단,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2010.

부 록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07호, 2011.7.25, 일부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1.25, 전부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6호, 2012.1.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학과 교육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9.27, 2008.1.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	제2조(정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	---	--

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③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	
---	---	--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	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	--	--

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연도별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계획 2. 현장실습 등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 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산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내용 및 평가 2. 산업체의 현장실습 실시 능력의 향상 방안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7.25>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 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의 개발·공급 4.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5. 학생의 후생복지 6. 그 밖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교원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기관과 산업현장에서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부전공 과목의 표시를 위한 부전공 연수 4. 연수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산업체등에서의 연수·연구 등 실적의 경력 인정 방안 5. 그 밖에 산업교원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 알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 알선기관과 산업교육기관의 협조 방안 2. 전문 분야별 기술의 향상 방안 3. 그 밖에 취업 알선 등에 필요한 사항	
--	--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산학연협력의 실태 2.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과 산업체·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산학연협력에 대한 만족도 3. 산학연협력 담당 교직원 및 관련 시설·설비의 현황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5조 삭제 <1997.3.27>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는 50명 이하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사무직원은 그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	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를 갖추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한다.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 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 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	

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선발은 실기시험,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명	
--	---	--

	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校舍) 기준면적 등 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需給)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	
--	---	--

	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	--	--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 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	---	--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	제10조(산업자문 등) 법 제9조에 따라 산업체등의 장이 산업자문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시설·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1.7.25]	제14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등의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	
제3장 삭제 〈2010.3.17〉		
제14조 삭제 〈2010.3.17〉		
제15조 삭제 〈1997.3.27〉		
제16조 삭제 〈1997.3.27〉		

제17조 삭제 <1997.3.27>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12.21>		
제18조(실험·실습시설 설치 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 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 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 비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 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 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 등의 보조금은 산업교 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 치 등에 드는 경비의 3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실습시설의 운영 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 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 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 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금은 현직 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 비와 교육비 전액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 삭제 <1997.3.27>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 도서발행에 필요한 총 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그 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나 보전 (補填)에 관한 사항 2. 그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④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 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 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 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제목 개정 2011.7.25]		
	제24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 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 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 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 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 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 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	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단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칙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	---	--

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2.21, 2011.5.19, 2011.7.25>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 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2.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인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	
--	---	--

	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 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 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 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 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 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 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 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 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8조(산학협력단의 결산)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50일 이 내에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 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다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20조 각 호의 업무	
	제3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7.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본조신설 2003.5.27] [제목개정 2011.5.19]		

	제3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그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업을 두는 경우 : 산업 교육기관 회계(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산학 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 을 두는 경우 : 산학협 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 치·운영계획을 수립하였 으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사항을 학칙에 포함시 켜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 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 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 을 하여야 한다.	
	제3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 정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 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 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 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제8조에 따 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 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미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1. 주식회사일 것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조성 업무 10.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11.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
--	---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	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8.2.4]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11.7.25〉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1.7.25]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실험실공장 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 의무 외 사유) 법 제36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을 준용한다. ②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11.7.25>]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		

용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6로 이동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①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6은 제36조의7로 이동 <2011.7.25>]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①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보수 업무 2. 연구개발 기획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	제47조(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	

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11.7.25〉]제목개정 2011.7.25]	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 배당의 사용제한을 위 반한 경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 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8은 제36조의9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9(청문)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 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 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9는 제36조의10으 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 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9에서 이동 (2011.7.25)]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	제48조(협력연구소)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 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9조(인력의 공동활용)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과학기술기초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②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1. 학연교수의 임용 목적 2.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 3.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업무 기여 비중 4.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5. 초청기관에서의 연구 공간과 시설·장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초청기관에서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학연교수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학연교수 임용 중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③ 학연교수에 대한 급여와 법정부담금은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이 협의하여 학연교수의 업무 기여 비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학연교수의 정년과 연금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⑤ 학연교수는 초청기관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	
--	---	--

	관은 학연교수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 또는 정관,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복무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37조의3(파견)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 보 등 [전문개정 2007.12.21][제목 개정 2011.7.25]		
	제3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 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 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 의 예산 편성·집행에 필요 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 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 협력단이나 그 밖에 산학 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 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		

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 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 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 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제목 개정 2011.7.25]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 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 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 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 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을 말한다.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0조(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과 학생이 학교 기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07.12.21]		

	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 한 보조 등)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 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 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 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1조(기술계열 학원 학습자 에 대한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기술계열 학 원의 학습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보조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학습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다.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교 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 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 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 행에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제45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6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5]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5호, 2012.4.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흐름표상의 “기초현금” 및 “기말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자산의 구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와 당해 자산의 취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3.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4. “감가상각”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상각”이라 함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한다.

제2장 예산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결산자문기구에 자문한 후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0조에 따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계약에 의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내에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현금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금예산서(추가경정현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현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정관에서 정한 예·결산자문기구 회의록 사본으로 한다.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예산의 전용)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국가 지원금의 집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보조금의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제15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계정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중요한 회계방침과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회계연도와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규칙 제38조에 따른다.

제17조(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산학협력단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2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3의 현금흐름표 계정과목명세표로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절 재무상태표

제19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적립금 및 운영차익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적립금의 적립)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1. 연구적립금
2. 건축적립금
3. 장학적립금
4. 기타적립금

제22조(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된 기금은 투자자산의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의 조언을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계산서

제23조(운영계산서) ①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 및 기부금수익, 산

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학교 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익(또는 당기운영차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① 산학협력단 회계의 운영수익 인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2.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3.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4.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5. 지원금 수익은 연구·개발·교육 등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6. 기부금의 수익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인식한다.

제4절 현금흐름표

제26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산학협력단 현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현금흐름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및 작성방법) ①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현금활동의 순 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의 구성항목 간 이동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증 증가와 감소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며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③ 현금흐름표상의 동일한 거래의 현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

우에는 각 활동별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2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제29조(유가증권의 평가) 산학협력단 회계의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은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의 운영외손익으로 한다. 단,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국·공·사채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기술지주회사에서 지배권을 목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고자산의 평가) 산학협력단의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제31조(대손상각 등)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대손충당금의 표시는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2조(감가상각 등) ①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②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③ 제1항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제2항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33조(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④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제35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운영차익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③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운영계산서의 운영외수익 또는 운영외비용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운영차익이나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제4장 결산 및 보고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연도 말일로 한다.

제37조(감사)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부속명세서) 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1서식]
2. 단기매매금융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매출채권명세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미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4서식]
5. 선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5서식]
6. 재고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6서식]
7. 장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7서식]

8. 장기투자금융자산 및 출자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8서식]
9. 유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9서식]
10. 무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10서식]
11. 특정기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1서식]
12. 매입채무명세서 [별지 제3호의12서식]
13. 미지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3서식]
14. 선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4서식]
15. 충당부채명세서 [별지 제3호의15서식]
16. 기본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6서식]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1서식]
2. 지식재산권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2서식]
3. 지원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3서식]
4. 기부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4서식]
5. 간접비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5서식]
6.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4호의6서식]
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9조(결산부속서류)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회의록 사본
2. 감사보고서
3.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5장 보칙

제40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5호, 2012.4.2〉

이 규칙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 회계연도에는 제16조 제2항의 직전 회계연도와의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명세표

1. 자산

과목		해설
관	항목	
자 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요구불예금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2) 단기금융상품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
	3) 단기매매금융자산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4) 매출채권	학교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수취채권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5) 미수금	산학연협력계약과 운영외 거래(자산매각 등)로부터 발생한 수취채권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6) 미수수익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수취하지 않은 운영외수익
	7) 선급금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
	8) 선급비용	지급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의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
	9) 선급법인세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선급한 법인세
	10) 부가세대급금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
	11) 기타당좌자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기타당좌자산

과 목		해 설
관	항 목	
	2.재고자산	
	1)재고자산	학교기업 등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Ⅱ.비유동자산	
	1.투자자산	
	1)장기금융상품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상인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
	2)장기투자금융자산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장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공·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기부 받은 주식인 경우 이 계정에 집계)
	3)출자금	학교기업 등 비상장된 수익사업체에 대한 출자액
	4)기타투자자산	기타의 투자자산
	2.유형자산	
	1)토지	대지, 임야, 전답 등
	2)건물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
	3)구축물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기계기구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5)집기비품	책상, 사무용 비품 및 인테리어 설비 등
	6)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7)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인 건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비, 설계비 등의 금액(완공 후 해당 유형자산 과목으로 대체)
	8)기타유형자산	기타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별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과 목		해 설
관	항 목	
	3.무형자산	
	1)지식재산권	산학협력단이 실시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2)개발비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3)기타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1)연구기금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연구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건축기금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건축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장학기금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장학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4)기타기금	연구·건축·장학기금 이외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치한 기금으로서 기본금의 기타적립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5)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
	6)기타비유동자산	1) ~ 5)를 제외한 기타의 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2. 부채와 기본금

과목		해설
관	항 목	
부채		
Ⅰ. 유동부채		
1. 유동부채		
	1)매입채무	학교기업의 일반적 운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의 지급채무
	2)미지급금	산학연협력계약과 운영외 거래(자산취득 등)로부터 발생한 지급채무
	3)선수금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
	4)예수금	일시적 제예수액
	5)제세예수금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일시적 제세예수금
	6)부가세예수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
	7)미지급비용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8)선수수익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
	9)기타유동부채	기타의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1. 비유동부채		채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는 부채
	1)임대보증금	장비 및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2)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연도말 현재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연금운용자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표시함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
	4)기타비유동부채	기타의 비유동부채

과목			해설
관	항	목	
		부채총계	
		기 본 금	
		I.출연기본금	
		1.출연기본금	
		1)출연기본금	산학협력단의 기본금으로 출연된 금액
		II.적립금	
		1.적립금	
		1)연구적립금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연구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2)건축적립금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건축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3)장학적립금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장학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4)기타적립금	연구·건축·장학기금 이외의 특정목적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투자자산의 기타기금과 일치하여야 함.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계상한 준비금
		III.운영차익	
		1.처분전운영차익	
		1)전기이월운영차익	전기로부터 이월된 운영차익으로서 전기말 현재의 차기이월운영차익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당기운영차익	운영계산서상 당기운영차익
		기본금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별표 2]

운영예산서 계정과목명세서

1. 운영수익

과 목		해 설
관	항 목	
I.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 대가성 판단기준 : 결과물의 소유권을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정부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1) 지식재산권실시수익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2) 지식재산권양도수익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 연구 및 실험 실습시설·장비 등의 사용료
	2) 임대료수익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
	5. 기타산학협력수익	
	1)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II.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1) 정부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과 목		해 설
관	항 목	
	1)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1)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Ⅲ.간접비수익	
	1.산학협력수익	
	1)산학협력 연구수익	산학협력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기타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과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을 제외한 산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2.지원금수익	
	1)연구수익	지원금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교육운영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기타 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Ⅳ.전입및기부금수익	
	1.전입금수익	
	1)학교법인전입금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2)학교회계전입금	학교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단, 설립자금1회에 한함)
	3)학교기업전입금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4)기타전입금	기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금액
	2.기부금수익	
	1)일반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2)지정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3)현물기부금	현물로 받은 기부금
	Ⅴ.운영외수익	
	1.운영외수익	

과 목		해 설
관	항 목	
	1)이자수익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2)배당금수익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 중 투자주식,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익
	3)유가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4)유가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5)외환차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6)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7)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8)대손충당환입	매출채권,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계상액으로 기 계상한 충당금의 환입액
	9)전기오류수정이익	과년도 과다집행 분이 회수 조치되는 등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환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환입하는 경우의 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	기타의 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의 수익인식에 있어 진행기준을 적용할 때 연구간접비는 간접비관리통장으로 이체하는 시점, 연구기자재취득비는 연구기자재를 취득하는 시점에 각각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음

2. 운영비용

과 목		해 설
관	항 목	
I.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1) 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 연구활동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 연구수당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6) 위탁연구개발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1) 인건비	산학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 교육과정개발비	산학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 장학금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 실험실습비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사·양도비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2) 산학협력보상금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

과 목		해 설
관	항 목	
	4. 학교시설사용료	
	1) 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 기타산학협력비	
	1) 기타산학협력비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II. 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1. 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 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 연구수당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6) 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 교육과정개발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 프로그램개발비 등
	3) 장학금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 실험실습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과 목		해 설
관	항 목	
Ⅲ. 간접비사업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1. 인력지원비		
	1) 인건비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2)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
2.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4)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 등)
	5)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6)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7)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경비 (단, 지식재산권으로 자산화된 금액은 제외함)
4. 기타지원비		
	1) 기타지원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Ⅳ.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1) 인건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과 목		해 설
관	항 목	
	2)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4)대손상각비	수취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추정 계상액
	5)일반제경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기타의 일반관리비용
V.운영외비용		
	1.운영외비용	
	1)유가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2)유가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을 평가한 결과 발생한 평가손실액
	3)외환차손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4)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5)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6)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7)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시 계상하는 비용계정
	8)기타운영외비용	기타 운영외비용
VI. 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국립대학은 기성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운영수익총계—운영비용합계
운영비용총계		

[별표 3]

현금흐름표 계정과목명세서

과목		해설
관	항 목	
I.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운영활동이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함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투자활동이란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활동을 말함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재무활동이란 비유동부채와 기본금과 관련하여 재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함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II.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운영활동이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함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과목		해설
관	항 목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투자활동이란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활동을 말함
	1)투자자산지출	
	2)유형자산취득지출	
	3)무형자산취득지출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재무활동이란 비유동부채와 기본금과 관련하여 재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말함
	1)부채의상환	
	2)기본금의반환	
	Ⅲ.현금의증감	
	Ⅳ.기초의현금	
	Ⅴ.기말의현금	

※ 기재상의 주의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으로 정의된다.

[별지 제1호서식]

현금예산서

당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전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과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증감	산출근거
관	항목				
Ⅰ.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 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 산학협력비 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 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 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 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 현금유출액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투자자산지출				
		2)유형자산취득지출				
		3)무형자산취득지출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2)기본금의반환				
Ⅲ.현금의증감						
Ⅳ.기초의현금						
Ⅴ.기말의현금						

※ 기재상의 주의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으로 정의된다.

[별지 제2호서식]

추가경정현금예산서

(. . . 부터 . . . 까지)

과		목	추경 예산액	본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I.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				
		4) 전입및 기부금수익 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II.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 산학협력비 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 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 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 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 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 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 투자자산지출				
		2) 유형자산취득지출				
		3) 무형자산취득지출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과 목			추경 예산액	본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2)기본금의반환				
Ⅲ.현금의증감						
Ⅳ.기초의현금						
Ⅴ.기말의현금						

※ 기재상의 주의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으로 정의된다.

[별지 제3호서식]

재무상태표

당기 20××년 ××월 ××일 현재

전기 20××년 ××월 ××일 현재

1. 자산

과목		제 ×× (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금융상품						
	3) 단기매매금융자산						
	4)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5) 미수금						
	(대손충당금)						
	6) 미수수익						
	7) 선급금						
	8) 선급비용						
	9) 선급법인세						
	10) 부가세대급금						
	11) 기타당좌자산						
2. 재고자산							
	1)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과 목			제 ×× (당)기			제××(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2)장기투자금융자산						
		3)출자금						
		4)기타투자자산						
		2.유형자산						
		1)토지						
		2)건물						
		3)구축물						
		4)기계기구						
		5)집기비품						
		6)차량운반구						
		7)건설중인자산						
		8)기타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3.무형자산						
		1)지식재산권						
		2)개발비						
		3)기타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1)연구기금						
		2)건축기금						
		3)장학기금						
		4)기타기금						
		5)보증금						
		6)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2. 부채와 기본금

과목		제 × × (당)기			제 × × (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부 채							
I. 유동부채							
	1. 유동부채						
	1) 매입채무						
	2) 미지급금						
	3) 선수금						
	4) 예수금						
	5) 제세예수금						
	6) 부가세예수금						
	7) 미지급비용						
	8) 선수수익						
	9) 기타유동부채						
II. 비유동부채							
	1. 비유동부채						
	1) 임대보증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 기타비유동부채						
부채총계							
기 본 금							
I. 출연기본금							
	1. 출연기본금						
	1) 출연기본금						
II. 적립금							
	1. 적립금						
	1) 연구적립금						
	2) 건축적립금						

과목		제 ×× (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3)장학적립금						
	4)기타적립금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Ⅲ.운영차익							
1.처분전운영차익							
	1)전기이월운영차익						
	2)당기운영차익						
기본금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별지 제3호의1서식]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명세서

(단위 : 원)

계정	예금명	용도	예치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					
단기 금융상품						
	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보통예금, 별단예금 등 요구불예금 및 만기가 3 개월 이내인 정기예금, 적금 등 단기금융상품을 기재한다.
2. 단기금융상품(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한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은 계좌별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3. 용도는 일시예치, 투자목적 등과 같이 예치의 목적을 간략히 기술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단기매매금융자산명세서

(단위 : 원)

	종목	1주의금액	주수	취득원가	재무상태표가액	평가손익	비고
주식							
	계						
채무증권							
	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주식의 종목은 xx회사 주식 등으로 기재하고, 채무증권의 종목은 사채의 경우는 보증사채, 무보증사채로 국·공채인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지하철공채 등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3서식]

매출채권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계			
받을어음				
	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거래처별로 xx매출 등 거래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4서식]

미수금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거래처별로 미수금 발생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5서식]

선급금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거래처별로 선급금 발생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6서식]

재고자산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출고액	장부잔액	평가손실	기말잔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장부잔액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기재한다.
2. 기말잔액은 장부잔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잔액을 기재한다.
3.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7서식]

장기금융상품명세서

(단위 : 원)

예금명	용도	예치기관	예치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장기금융상품의 예금명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8서식]

장기투자금융자산 및 출자금명세서

(단위 : 원)

주식	종목	1주의금액	주수	취득원가	재무상태표가액	평가손익	비고
	계						
출자금	종목		액면가액	취득원가	재무상태표가액	평가손익	비고
	계						
채무증권							
	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주식의 종목은 xx회사 주식 등으로 기재하고, 채권의 종목은 사채의 경우는 보증사채, 무보증사채로 국·공채인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지하철공채 등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9서식]

유형자산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미상각잔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유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기초잔액·당기증가액·당기감소액 및 기말잔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기재한다.
3. 자본적지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액을 당기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4.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미상각잔액란에 기재한다.
5.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0서식]

무형자산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취득원가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자본적지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액을 당기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3.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서식]

특정기금명세서

(단위 : 원)

계정	용도	예치기관	예치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특정기금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계정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매입채무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외상매입금				
	계			
지급어음				
	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채무의 발생원인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3서식]

미지급금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채무의 발생원인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4서식]

선수금명세서

(단위 : 원)

거래처명	내역	금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내역은 선수금 발생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2.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5서식]

충당부채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기초잔액	당기감소액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비고
퇴직급여충당부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동일 충당부채의 당기증가액과 당기감소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기재한다.
2.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16서식]

기본금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기초잔액	당기감소액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비고
1. 출연기본금					
출연기본금					
2. 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처분전운영차익					
전기이월운영차익					
당기운영차익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운영계산서

당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전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1. 운영수익

과 목		제 ××(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I.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1) 정부연구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1) 지식재산권실시수익						
	2) 지식재산권양도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 설비자산사용료수익						
	2) 임대료수익						
	5. 기타산학협력수익						
	1) 기타산학협력수익						
II.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1) 정부연구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과 목		제 ××(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3.기타지원금수익						
	1)기타지원금수익						
	Ⅲ.간접비수익						
	1.산학협력수익						
	1)산학협력 연구수익						
	2)교육운영수익						
	3)기타 산학협력수익						
	2.지원금수익						
	1)연구수익						
	2)교육운영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Ⅳ.전입및기부금수익						
	1.전입금수익						
	1)학교법인전입금						
	2)학교회계전입금						
	3)학교기업전입금						
	4)기타전입금						
	2.기부금수익						
	1)일반기부금						
	2)지정기부금						
	3)현물기부금						
	Ⅴ.운영외수익						
	1.운영외수익						
	1)이자수익						
	2)배당금수익						

과 목		제 ××(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3)유가증권평가이익					
		4)유가증권처분이익					
		5)외환차익					
		6)외화환산이익					
		7)유형자산처분이익					
		8)대손충당환입					
		9)전기오류수정이익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2. 운영비용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I.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1)인건비						
	2)학생인건비						
	3)연구장비·재료비						
	4)연구활동비						
	5)연구수당						
	6)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1)인건비						
	2)교육과정개발비						
	3)장학금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4)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3.지식재산권비용						
		1)지식재산권실사·양도비					
		2)산학협력보상금					
	4.학교시설사용료						
		1)학교시설사용료					
	5.기타산학협력비						
		1)기타산학협력비					
Ⅱ.지원금사업비							
	1.연구비						
		1)인건비					
		2)학생인건비					
		3)연구장비·재료비					
		4)연구활동비					
		5)연구수당					
		6)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1)인건비					
		2)교육과정개발비					
		3)장학금					
		4)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3.기타지원금사업비						
		1)기타지원금사업비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관	항	목	항	관	목	항	관
Ⅲ. 간접비사업비							
	1. 인력지원비						
	1) 인건비						
	2) 연구개발능력성과급						
	2.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관리비						
	5) 연구윤리활동비						
	6) 연구개발준비금						
	7)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4. 기타지원비						
	1) 기타지원비						
Ⅳ.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1) 인건비						
	2) 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4) 대손상각비						
	5) 일반제경비						
Ⅴ. 운영외비용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1.운영외비용						
		1)유가증권처분손실						
		2)유가증권평가손실						
		3)외환차손						
		4)외화환산손실						
		5)유형자산처분손실						
		6)전기오류수정손실						
		7)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8)기타운영외비용						
		Ⅵ.학교회계전출금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운영비용총계						

[별지 제4호의1서식]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등으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고한다.
 - 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 그 밖은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 국가기관, 지자체는 상위기관의 부처명과 자치단체명을 보고한다.

지원기관			교부처
상위기관	차상위기관	하위기관	
(주)xx산업	-	-	대기업
(주)○○산업	-	-	중소기업
교육과학기술부	-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	-	용산구청
용산구청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용산구청

- 내역은 지원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지식재산권 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거래처	내역	금액	비고
지식재산권실시수익				
소계				
지식재산권양도수익				
소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내역은 지식재산권 수익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3.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지원금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 현금수령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등으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고한다.
 - 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 그 밖은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 국가기관, 지자체는 상위기관의 부처명과 자치단체명을 보고한다.

지원기관			교부처
상위기관	차상위기관	하위기관	
(주)××산업	-	-	대기업
(주)○○산업	-	-	중소기업
교육과학기술부	-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	-	용산구청
용산구청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용산구청

- 내역은 지원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4서식]

기부금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기부처 또는 기부자	내역	금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자명을 기재한다.
3. 내역은 기부금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5서식]

간접비수익명세서

(단위 :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비고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등으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고한다.
 - 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 그 밖은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 국가기관, 지자체는 상위기관의 부처명과 자치단체명을 보고한다.
3. 내역은 지원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6서식]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과목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비고
			기초금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금액		
유 형 자 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소계							
무 형 자 산	지식재산권							
	개발비							

	소계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2.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현금흐름표

당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전기 20××년 ××월××일부터 20××년 ××월××일까지

과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I.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 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II.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 산학협력비 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 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 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 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 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 전출금 현금유출액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투자자산지출						
		2)유형자산취득지출						
		3)무형자산취득지출						
		4)기타비유동자산지출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2)기본금의반환						
Ⅲ.현금의증감								
Ⅳ.기초의현금								
Ⅴ.기말의현금								

※ 기재상의 주의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으로 정의된다.

[별지 제6호서식]

※ (본 규칙 제16조에 의거 재무제표로 채택한 경우에 적용)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 × 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까지 20××년××월××일 까지
처분확정일 20××년××월××일 처분확정일 20××년××월××일

(단위 : 원)

과목			제×× (당) 기			제×× (전) 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I. 처분전운영차익								
	1) 전기이월운영차익							
	2) 당기운영차익							
II. 적립금등이입액								
	1) 연구적립금이입액							
	2) 건축적립금이입액							
	3) 장학적립금이입액							
	4) 기타적립금이입액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입액							
III. 합계(I + II)								
IV. 운영차익처분액								
	1) 연구적립금적립액							
	2) 건축적립금적립액							
	3) 장학적립금적립액							
	4) 기타적립금적립액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							
V. 차기이월운영차익(III-IV)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5.14, 일부개정]

[별표 2] 〈개정 2012.5.1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장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재 료 비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연 구 활 동 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로,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 구 과 제 추 진 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 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 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저자 약력

권선국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1981)
-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졸업(경영학석사, 1984)
- 미국 University of Oklahoma 졸업(경영학박사, 1989)
-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관리회계사(CMA)
- 전, 미국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회계학과 조교수
- 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현,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정창모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198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1987)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2008)
-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 현,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 현, 국세청 과세적부심 및 심사청구 심의위원
- 현, 학교법인 이화학당 감사

박양신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1997)
- 전, (주)대우, (주)인투스테크놀로지 근무
- 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담당

김한나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2006)
-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팀
- 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회계팀